

2025 KASCPA Conference

제23회 미주한인공인회계사 총연합회 학술대회

October 19 – 22, 2025
Incheon, South Korea

Paradise City Hotel

**Incheon,
South Korea**

100년 인생, 소중한 자산과 가치를 지켜드립니다

하나 리빙트러스트는,
유언이 아닌 신탁계약의 형태로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을 신탁하여
생전에는 종합 자산관리를
사후에는 원활한 상속배분을 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입니다.



하나 리빙트러스트 서비스

- 부동산 관리
- 노후&질병대비
- 증여&상속
- 성년후견
- 기업승계
- 자산관리



Club1 PB센터 02-729-8407 · Club1 한남PB센터 02-798-8713 · Club1 도곡PB센터 02-529-9121

※계약하시기 전에 운용방법의 지정, 해지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신탁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신탁 계약)은 자산가치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일부 또는 전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계약보수 : 신탁재산가액의 0.5%~1%, 집행보수 : 신탁재산가액의 0.75%~1.5%, 금전 관리보수(연보수) : 신탁원본평균잔액의 0.3%~1%, 부동산 및 기타 관리보수 : 개별 계약에 따릅니다. ※신탁보수는 개별계약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민법에서 보장하는 법정상속인의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며, 유류분 청구 및 반환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을 통한 상속 및 증여 시 관련 법에 따라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 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상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고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111)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홍보물은 2026년 07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5-02288호(2025-06-02~2026-06-01)/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광고-1040호(2025.08.13~2026.07.31)/CC브랜즈250813-224]

**Best
Attorneys
RUN**



**We will work with our clients
to obtain the best results.**

Attorney-client relationships are based on trust.

Trust stems from the hard work and skills of the attorney.

Barun's skilled experts are willing and able work hard and showcase their skills.

Barun's legal services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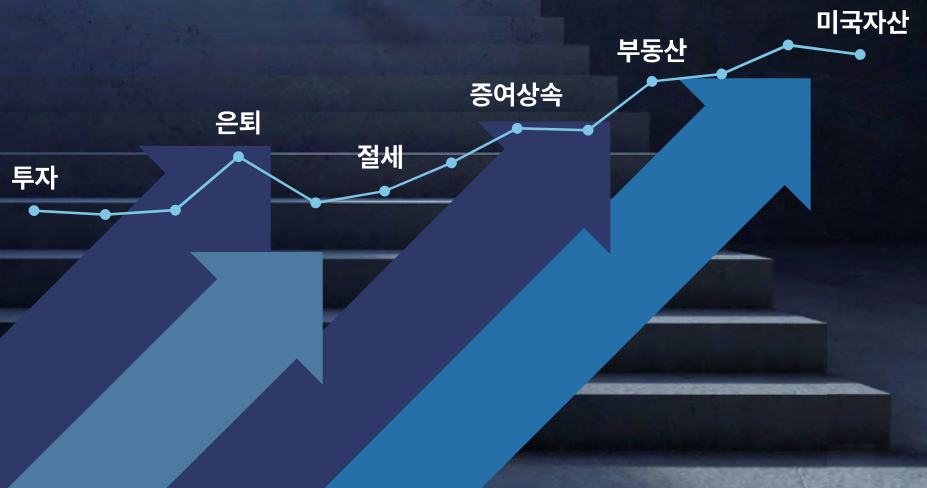
KPW

KOREA
PRIVATE
WEALTH

코 리 아 프 라 이 빗 웰 스

최고의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당신의 삶을 위한 최적의 재무 솔루션을 제시 합니다

고객 중심의 가치,
대한민국 파이낸셜 플래닝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전문가 그룹



코리아프라이빗웰스(주)는 오직 고객중심의 가치를 생각하는 독립재무설계 전문가 그룹 입니다.

다년간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미국의CFP표준에 입각한 선진 재무 로드맵을 기반으로
투자, 은퇴, 절세, 증여상속, 부동산, 미국자산 등 재무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숙련된 전문 역량과 한·미 자산관리 경험으로 KASCPA 그룹의 든든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KPW

Table of CONTENTS



PART I

1

Message from the President	8
Congratulatory Remarks	9
Our Mission	12
Officers	13

PART II

2

2025 Conference Schedule

KASCPA Seminar Information	14
----------------------------	----

Day 1

Financial Management Consulting for Business
 Korea-U.S. Estate Planning
 Accounting, Technology and Their Value
 Assets of Parents in Korea and Children Living in the US: How to Bridge by Trusts
 CPA Talk 4Seasons Golf Tour

Day 2

Navigating a Successful CPA Practice Sales, Restructuring or Expansion
 Advanced Estate Tax Planning Strategies
 Wealth Management and Succession Planning for Korean Americans
 IRS Audit: Insider and Outsider Perspective
 CPA Talk National Life/Worthington Financial Partners
 CPA Talk Korea Financial Planning
 CPA Talk Hanmi Bank



Meet the Experts	16
Participation Guidelines	17

Articles from Professionals

One Big Beautiful Bill Act, H.R.1 of 119 th Congress Steven Y.C. Kang CPA, California	18
“Accumulation” and “Amortization” Soon B. Hong CPA, MBA, Michigan	24
미국 진출한 한국기업, 트럼프 감세법 OBBBA 꼭 알아야 할 5가지! Byung Chan Ahn CPA, California	28
멈출 수 없는 한국의 회계개혁 - 독립성과 감사품질의 선순환을 위하여 조 연 주 KICPA 상근연구부회장	32
한국 주택과 비거주자의 세금 이야기 심 충 진 건국대학교 교수	36
미국 주재원을 위한 필수 기본 세법 Q & A Young Kwon Park CPA, MBA, Georgia	40
Understanding the Peer Review Process : A Pillar of Quality and Accountability in Public Accounting Sung Bum Cho CPA, California	44
BUY SELL AGREEMENT Linda Han Senior Partner National Life Group	50
트러스트의 세금 보고,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Yujin Park ESQ & Hayan Park ESQ Han & Park Law Group	54
미국 상속세 절세 기법과 그 활용 Estate Freezing, Estate Shrinking, Cross-Border Planning Daniel Yoon ESQ	58
재혼해서 미국 시민권 딴 아버지, 한국 사는 딸 상속은 어떻게? 김 상 훈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트리니티	66
미국 거주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 상속절차 가이드 조 응 규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바른	70
거리와 시간의 벽을 넘어 -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 내 재산 상속 관리 하 승 희 리빙트러스트 전문 PB 하나은행	72
미국의 가족들과 한-미 자산관리 사례 오 경 령 KPW 프리미어클럽 센터장	76
E-Commerce Sales Tax Law Insights & Audit Defense Jenny You CPA, California	80





Retirement Income Solutions : Understanding Annuities	82
Kyung Eun Kim CFP MassMutual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Involvement As A Third-Party Witness In Business Litigation Through Subpoenas	88
Joyce J. Choi ESQ	
Private Investors in Professional Entities and Your Exit	90
Byoung Jo Kang ESQ B.J. Kang Law, PC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	96
Hanjin Park AltosBiz 대표	
생성형 AI 시대! 저작권 이슈와 쟁점	98
정 영 훈 파트너 변호사/변리사 법무법인(유한) 바른	
ACCOUNTANT 에서 AICCOUNTANT 로 : AI와의 공존을 말하다!	100
Martin C. Park CPA, California	
변화의 기차 안에 탄 회계사에게	106
Byung Chan Ahn CPA, California	
Kanye and George	108
William Lee CPA, California	
한국인은 너무 친절하다!?	114
김 장 식 CPA, California	
한국인들은 왜 골프에 열광할까요?	116
James Shin 4 Seasons Golf Tour 대표	

Disclaimer : The authors and KASCPA are not engaged in rendering legal, accounting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and assume no liability in connection with its use. We urge you to do additional research and ensure that you are fully informed before using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journal.

PART IV

4

Flash Back Last 3 Conferences	122
Flash Back 2014	126
29대 회장단이 컨퍼런스 준비하면서	128

PART V

5

Directors	130
History	131

Message from the President



KASCPA 29주년

글로벌 시대의 회계사 리더십과 미래 비전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올해 우리는 KASCPA 창립 29주년을 맞이합니다. 지난 29년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변화와 도전 속에서 우리 한인 공인회계사들이 쌓아 올린 전문성과 리더십의 역사입니다.

회계사 산업은 급변하는 세계경제 속에서 그 역할과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 국제 규제 변화, ESG 경영, 글로벌 세무·회계 기준의 통합 등 변화의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오늘, 우리는 단순한 숫자의 전문가를 넘어, 기업과 사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이끄는 전략적 파트너이자 경제 리더로서의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한인 공인회계사들은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돕는 핵심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세무·회계·재무 전략은 물론, 복잡한 법규와 시장 환경 속에서 한국 기업이 안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우리의 전문성과 국제 감각이 집약된 결과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미국 동포사회의 신뢰받는 경제 리더로서, 가정과 비즈니스, 지역사회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 2025 Annual Conference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도 함께합니다. 이는 양 협회의 전문 네트워크가 국경을 넘어 확장되고, 한·미 회계사가 협력하여 글로벌 무대에서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회원 개개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물론 올해의 행사 주제인 “Fun, Fun, Fun”은 우리가 함께 배우고, 교류하며, 즐기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지난 29년간 이어온 전통과 성취를 바탕으로, 미래 30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의 에너지를 함께 만들자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은 한국과 미국을 잇는 회계사 공동체의 역사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귀중한 유산입니다. 앞으로도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글로벌 경제의 흐름 속에서 한인 회계사의 위상과 영향력을 높여 나갑시다. KASCPA는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전미주 한인공인회계사 총연합회장 **안 병 찬**

Congratulatory Remarks



2025 전미국 한인공인회계사협회(KASCPA) 연례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인 공인회계사들이 미국 전역에서 전문성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활약하며, 한인 커뮤니티와 글로벌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모습은 늘 깊은 인상을 줍니다. 특히, KASCPA가 지난 30년간 전문지식의 공유와 네트워크 강화, 그리고 후배 양성을 위해 헌신해온 노력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 인천에서 열리는 컨퍼런스는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른입니다.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회계와 세무의 역할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으며, 미국과 한국 양국의 협력 역시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양국의 회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이 자리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한미 간의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헌신이야말로 KASCPA를 오늘 의 자리까지 이끈 원동력이라 믿습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더 많은 지혜와 비전을 공유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2025 KASCPA Annual Conference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드리며, 모든 참가자 여러분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5년 10월 19일

오명

국가원로회의 상임의장 전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오명**

Congratulatory Remarks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운열 회장입니다.

2025년 전미주 한인공인회계사 총연합회(KASCPA) 연례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뜻깊은 행사에 인사말을 전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954년 설립 이후 70년간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회계 투명성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 구축에 기여해왔습니다. 저는 회장 취임 후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우리 회가 국가 경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여 나가는데 앞장 서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관세 긴장, 회계·세무 규제 강화 등 복합적 변화 속에서 이러한 사명감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직면한 주요 과제는 첫째, 회계제도 개혁 완성입니다. 한국은 2019년부터 상장기업이 일정 주기마다 의무적으로 감사인을 교체하는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여 감사 독립성 강화를 추진해왔습니다. 현재는 제도 정착과 함께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합리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면서, 동시에 회계투명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들을 지속 발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입니다. 2018년 회계개혁 이후 영리부문의 회계투명성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비영리부문은 주무부처별로 법률과 기준이 달라 체계적인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회계 정책 수립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회계기본법을 제정하여 모든 조직에 공통 적용할 회계기준과 감사, 공시와 감독의 기본원칙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속가능성 공시의 의무화에 대비한 ESG 인증 전문가 역량 강화입니다. 유럽은 2025년부터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들도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도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맞춰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ESG 정보에 대한 제3자 검증 및 인증 업무의 중요성이 부상하고 있어, 관련 전문가 양성과 기준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넷째, 세무사 업계와의 업역 정립 문제입니다. 한국에서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가 별도의 자격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세무사 업계에서 회계 관련 인증업무 영역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업무는 공인회계사법에 명시된 공인회계사의 고유 업무이며, 인증업무 역시 국제적 수준의 전문성과 적격성을 갖춘 전문가가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미래 변화에 대한 대응도 중요합니다. AI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단순 업무는 자동화되겠지만, 공인회계사는 AI를 활용하는 전략가, 윤리적 리더, 그리고 투명한 사회를 설계하는 전문가로 진화할 것입니다. 이는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입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KASCPA 회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네트워킹에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한인 공인회계사 여러분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사회적 사명을 다해 나가시길 바라며, 한국공인회계사회도 본국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최운열**



Dear Friends:

It is my honor to welcome everyone to the 2025 Korean American Society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KASCPA) Annual Conference. I would like to thank President Byung Chan Ahn for his leadership and KASCPA members for their service and dedicated efforts making this organization a success.

Since its founding in 1996, KASCPA has been a champion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The role of CPAs and financial professionals is critical to supporting our businesses and families.

Your commitment to providing networking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opportunities, offering consultation and referral services, and helping clients succeed is an invaluable asset to our community.

I am honored to represent you in the United States Congress, and I look forward to working alongside you to be a voice for our community. Congratulations once again and best wishes for continued success.

Sincerely,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ue ink, appearing to read 'Y Kim'.

Member of Congress, 40th District **Young Kim**



미주한인공인회계사 총연합회

Korean American Society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Our Mission

본 협회의 주 임무는 회계 직업에서 요구되는 교육, 정보 및 회원과 연관 전문인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회계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다양성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데 있습니다

A background graphic showing a person in a dark suit holding a smartphone. Overlaid on the image is a glowing blue globe with a network of lines and circular icons representing various technologies and communication. The icons include a Wi-Fi symbol, a laptop, a globe, a satellite dish, a smartphone, a person with a gear inside their head, and a signal tower.

2025
KASCPA CONFERENCE

Offic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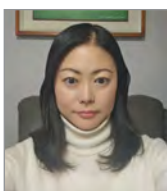
Byung Chan Ahn
President



Steven Y.C. Kang
First Vice President



Sung Bum Cho
Secretary General



Suah Lee
Treasurer



Minnie Lee
Executive Vice President
of Communications and
Sponsorship



Christie Chu
Executive Vice
President of Event
Management



Martin C. Park
Vice President of
Publications and
Content



Sang Hyun Kim
Vice President of
Seminars and Speaker
Relations



William Lee
Vice President of
Banquet



James S. Kim
Vice President of
Golf Events



Jinnie Kang
Vice President of Tours



Soyeon Choi
Vice President of Social
Network Service



Sarah Cho
Vice President of Social
Network Service



KASCPA CONFERENCE

2025 Conference Schedule

October 19 – 22, 2025
Incheo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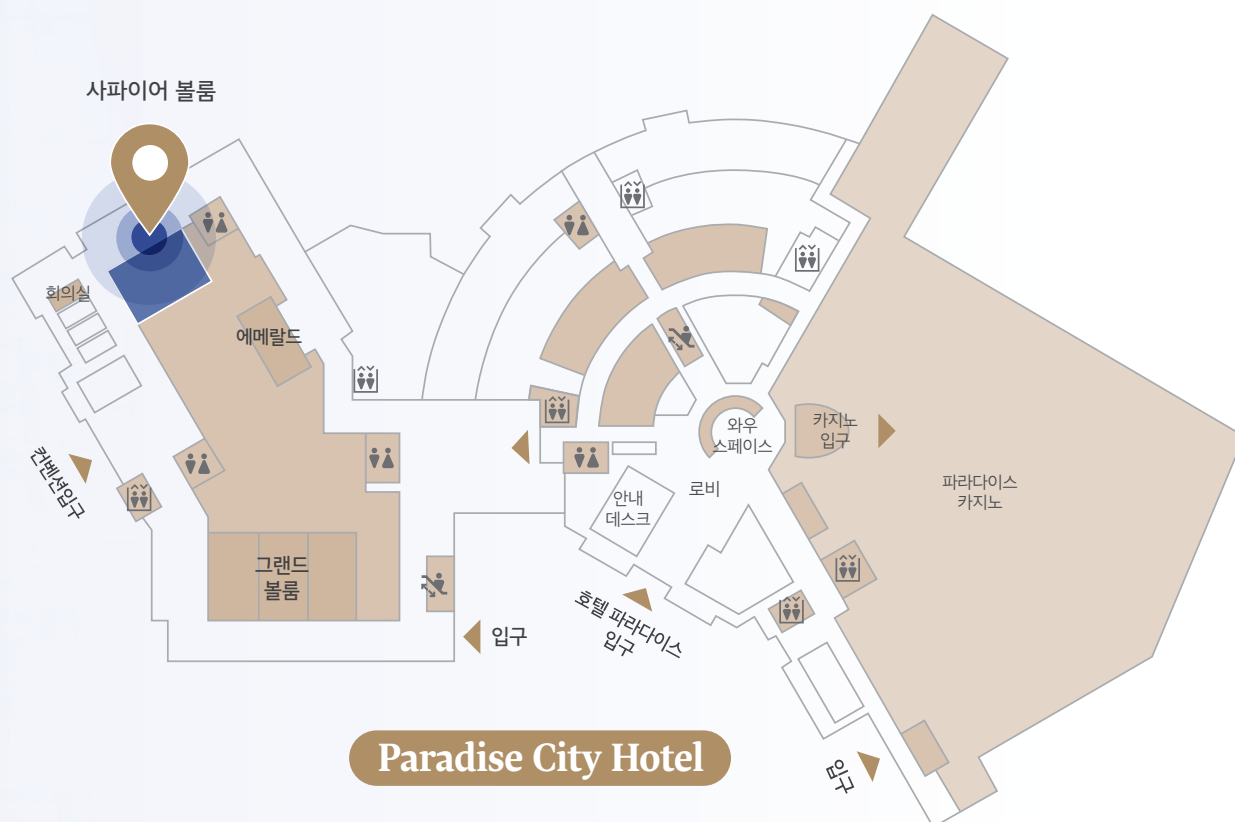
KASCPA Seminar Information

Sunday, October 19

3:00 pm - 4:00 pm	KASCPA Registration
4:00 pm - 5:00 pm	Reception
5:00 pm - 8:00 pm	Opening Ceremony & Welcome Dinner @ Banquet Venue
8:00 pm - 8:30 pm	KASCPA Annual Meeting
8:30 pm - 9:00 pm	Title Sponsor Mixer

Monday, October 20

6:30 am - 7:30 am	Breakfast	
7:30 am - 8:10 am	Lecture	Financial Management Consulting for Business
8:15 am - 8:45 am	Lecture	CPA Talk Hana Bank
8:45 am - 9:35 am	Panel Discussion	Korea-U.S. Estate Planning
9:40 am - 9:50 am	KASCPA Talk	CPA Talk 4Seasons Golf Tour
9:50 am - 11:05 am	Lecture	Accounting, Techonology and Their Value
12:00 pm - 5:00 pm	Tour or Golf	
6:00 pm - 9:00 pm	Dinner	



Tuesday, October 21

6:30 am - 7:30 am	Breakfast	
7:30 am - 8:10 am	Lecture	Navigating a Successful CPA Practice Sales, Restructuring or Expansion
8:10 am - 8:20 am	KASCPA Talk	CPA Talk Worthington Financial Partners
8:20 am - 8:50 am	Lecture	Advanced Estate Tax Planning Strategies
9:00 am - 9:10 am	KASCPA Talk	CPA Talk Korea Private Wealth
9:10 am - 10:00 am	Lecture	Wealth Management and Succession Planning for Korean Americans
10:10 am - 10:20 am	KASCPA Talk	CPA Talk Hanmi Bank
10:20 am - 11:00 am	Lecture	IRS Audit: Insider and Outsider Perspective
12:00 pm - 5:00 pm	Tour or Golf	
6:00 pm - 10:00 pm	Closing Ceremony & Farewell Dinner	

Wednesday, October 22

6:30 am - 10:30 am	Breakfast	
10:30 am - 11:00 am	Checkout	

PART
II

Meet the Experts



Jisung Song

Prof.



Byoung Jo Kang

Esq.



Woongkyu Cho

Attorney at Law, ROK



Harold Jung

Esq.



Kyungeun Kim

CFP



Bojan Tuco

Director



Daniel Yoon

Esq.



Yujin Park

Esq.



Sanghoon Kim

Attorney at Law, ROK



Hayan Park

Esq.



KASCPA Annual Conference Participation Guidelines

We look forward to welcoming you to our events!

To ensure that all participants enjoy a safe, professional, and positive experience, please take note of the following guidelines

1 Who Can Attend

- ☒ Our events are open to members and registered representatives of sponsor companies.
- ☒ The number of attendees from each sponsor company is set according to the sponsorship agreement or by the KASCPA.
- ☒ If additional guests are desired, please request approval in advance through your company's sponsor contact and the KASCPA's leadership team.

2 Requesting an Exception

- ☒ Please submit exception requests at least 30 days before the event.
- ☒ Include your reason for attending, your affiliation, and your role.
- ☒ We'll review all requests promptly and confirm in writing whether the request is approved.

3 Enjoy the Event Respectfully

- ☒ We ask all guests to help create a friendly and respectful atmosphere.
- ☒ Please avoid disruptive behavior or negative remarks toward others or other companies.
- ☒ If you have concerns about the event, share them with us privately afterward through our official channels.

4 If Problems Arise

- ☒ In rare cases, disruptive behavior may result in being asked to leave the event.
- ☒ Serious violations could affect future attendance eligibility.

By following these guidelines, you help us maintain the high standards and warm spirit of our community. We're excited to make this event an enjoyable and meaningful experience for everyone.

Korean American Society of CPAs

One Big Beautiful Bill Act, H.R.1 of 119th Congress



Steven Y.C. Kang
CPA, California

steve@ksgallp.com

KASCPA 수석 부회장

On July 4, 2025, the much-discussed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H.R.1 of the 119th Congress, was signed into law by President Trump.

<https://www.congress.gov/bill/119th-congress/house-bill/1/text>. I have attended webinars and read summaries of OBBBA over the past month, and I have found that the best source is still the text of OBBBA itself, contained in H.R.1.

The tax provisions are contained in Title VII – Finance, Subtitle A-Tax, Sections 70001 to 70607, of the OBBBA. Many of the commentaries and summaries add to the confusion. You could save time by first looking at the text of OBBBA and then reviewing commentaries and summaries after you understand the lay of the land.

In addition to the text of OBBBA, reviewing the May 9, 2025 Joint Committee Description of the Budget Reconciliation Legislative Recommendations Related to Tax, <https://www.jct.gov/publications/2025/jcx-18-25/>, would aid in understanding the prior law, the proposed law, and the intent of the law. The Joint Committee on Taxation (JCT) is a nonpartisan committee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 established in 1926 under the Revenue Act. It provides technical analysis, in layman's terms, to both the 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 and the Senate Finance Committee on tax legislation. Until the IRS issues regulations or guidance on the passed law, the Joint Committee on Taxation is a substantial authority to avoid penalty. This will help you look at the full context of the law, understanding the intent of the law, allowing you to see the forest rather than being lost in the trees.

ChatGPT or other AI search engines will provide you with additional details, but without referencing the original text, you may be misled, and you could easily offer erroneous tax advice

The changes that a tax preparer should be familiar with for the 2026 tax season are noted in bold:

Chapter 1 - Providing Permanent Tax Relief for Middle-Class Families and Workers, contains provisions dealing with:

Sec. 70105 Qualified business income deduction, (Passthrough Deduction)

Made permanent, the qualified business income deduction may not exceed 20 percent of taxable income (reduced by net capital gain). Both the W-2 and capital investment and specified service trade or business limits are subject to the threshold amounts and phase-in ranges. The new law expands the W-2 and capital investment and specified service trade or business deduction limit phase-in range by increasing the \$50,000 (non-joint returns) and \$100,000 (joint returns) amounts to \$75,000 and \$150,000, respectively, to \$75,000 and \$150,000, for tax years starting after December 31, 2025.

Sec. 70106 Estate and gift tax exemp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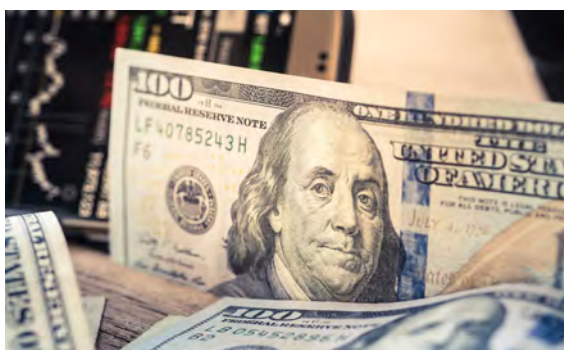
Made permanent, exclusion increased to \$15 million, indexed for inflation starting 2026

Sec. 70108 Deduction for qualified residence interest,

Made permanent, mortgage limit stays at \$750,000 for MFJ and \$375,000 for MFS, may deduct mortgage insurance premiums, starting 2026

Sec. 70120 Limitation on individual deductions for certain state and local taxes, etc.

The SALT deduction limit for individuals who itemize deductions is temporarily increased for tax years 2025 through 2029. The limit is \$40,000 (\$20,000 if married filing separately) for 2025 and increased by one percent over the previous year's amount in 2026 to 2029. The dollar limit for 2025 through 2019 is reduced by 30 percent of the excess (if any) of the taxpayer's modified AGI over a threshold amount, but not below \$10,000 (\$5,000 if filing separately). The threshold amounts are \$500,000 (\$250,000 if married filing separately) for 2025, and increase one percent over the previous year's amounts in 2027 through 2029. The SALT deduction reverts to \$10,000 (\$5,000 if filing separately) beginning in 2030.



Chapter 2 - Delivering on Presidential Priorities to Provide New Middle Class Tax Relief:

Sec. 70201 No tax on tips

An individual can claim an income tax deduction up to \$25,000 per tax year on reported tip wages or on Form 1099-NEC for tax years 2025 to 2028. The deduction is reduced by \$100 for each \$1,000 by which the taxpayer's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MAGI) exceeds \$150,000 (\$300,000 for married individuals filing a joint return. The IRS is expected to revise the tax form to add a line below the itemized deduction for this item.

Sec. 70202 No tax on over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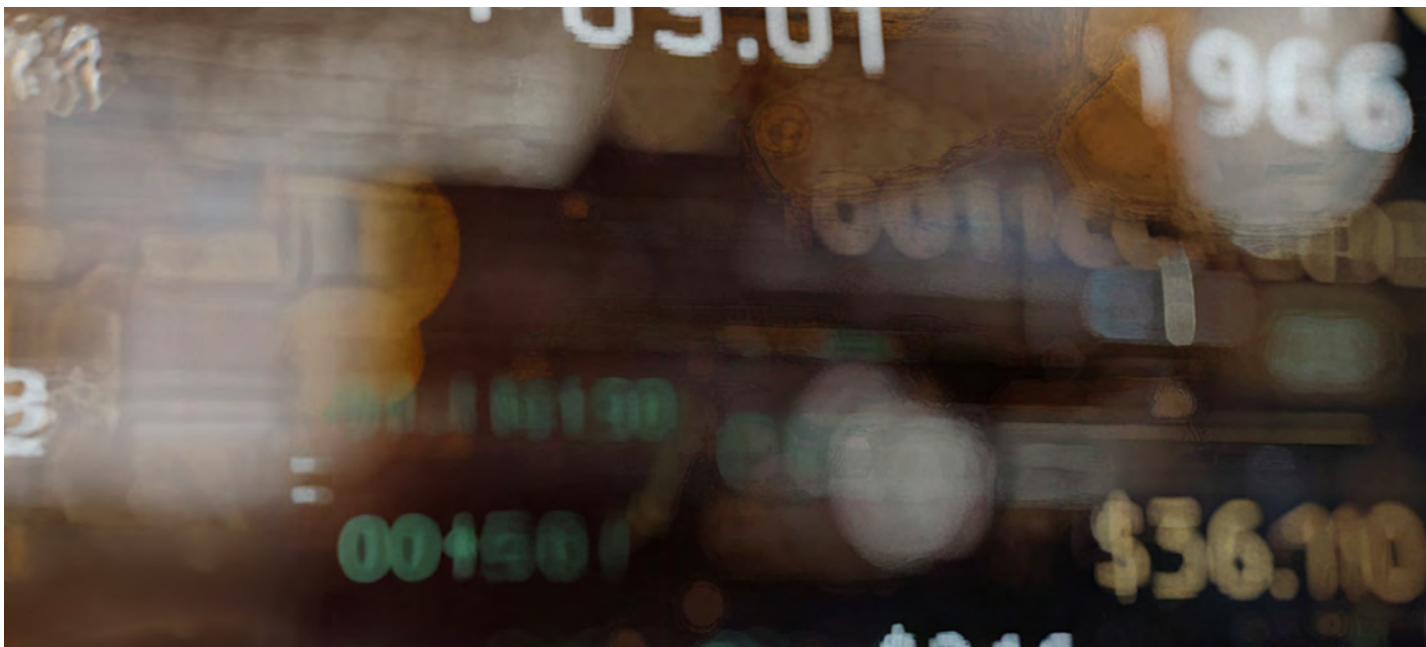
An individual can claim an income tax deduction for qualified overtime pay received in tax years 2025 to 2018. The deduction is limited to \$12,500 per tax year (\$25,000 per tax year for joint filers) and starts to phase out when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is over \$150,000 (\$300,000 for joint filers). The IRS is expected to revise the tax form to add a line below the itemized deduction for this item.

Sec. 70203 No tax on car loan interest

For 2025 to 2028, an individual may claim a deduction of up to \$10,000 for interest paid or accrued on a post-2024 loan for the purchase of a qualified passenger vehicle for personal use. The deduction begins to phase out when the taxpayer's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exceeds \$100,000 (\$200,000 in the case of a joint return).

Sec. 70204 Trump accounts and contribution pilot program

Similar to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 \$1,000 can be contributed to a Trump account for children born after December 31, 2024 and before January 1, 2029, who are U.S. citizens at birth.



Chapter 3 - Establishing Certainty and Competitiveness for American Job Creators
Subchapter A - Permanent U.S. Business Tax Reform and Boosting Domestic Investment

Sec. 70301 Full expensing for certain business property

The bonus depreciation is increased to 100 percent for qualified property acquired and placed in service after January 19, 2025 and for specified plants planted or grafted after January 19, 2025. The phase-down rates and expiration dates are eliminated.

Sec. 70303 Modification of limitation on business interest

For tax years beginning after 2024, adjusted taxable income (ATI) for purposes of the Code Sec. 163(j) business interest limitation corresponds to 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EBITDA), rather than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es (EBIT). The business interest deduction is limited to the sum of 1) business income, 2) 30 percent of the taxpayer's ATI and floor-plan financing interest for purchases of motor vehicles for sale or lease to retail customers.

Sec. 70306 Increased dollar limitations on expensing of certain depreciable business assets

The Code Sec. 179 dollar limit is increased to \$2.5 million, and the investment limitation is increased to \$4 million for tax years beginning after 2024. These increases will be inflation-adjusted for tax years beginning after 2025.

Sec. 70308 Enhancement of advanced manufacturing investment credit

The Code Sec. 48D advanced manufacturing investment credit is increased to 35 percent of an eligible taxpayer's qualified investment in an advanced manufacturing facility to manufacture semiconductors or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for the tax years starting after December 31, 2025.



Chapter 4 - Investing in American Families, Communities, and Small Business

Subchapter A - Permanent Investments in Families and Children

Subchapter B - Permanent Investments in Students and Reforms to Tax-Exempt Institutions

Subchapter C - Permanent Investments in Community Development

Sec. 70421 Permanent renewal and enhancement of opportunity zones

The Qualified Opportunity Zone program is permanently extended and enhanced, allowing for rolling, 10-year designations beginning on January 1, 2027. A new rolling gain deferral rule and a permanent 10-percent basis step-up benefit are provided. A new category of a fund, the Qualified Rural Opportunity Fund, with generous tax benefits, are provided.

Sec. 70425 0.5 percent floor on deduction of contributions made by individuals, applicable starting 2026

Sec. 70426 1 - percent floor on the deduction of charitable contributions made by corporations, applicable starting 2026

Subchapter D - Permanent Investments in Small Business and Rural America

Sec. 70431 Expansion of qualified small business stock gain exclusion

The qualified small business stock (QSBS) gain exclusion rules are modified to provide for a tiered gain exclusion for QSBS acquired after July 4, 2025. The exclusion is 50 percent for stock held for three years, 75 percent for stock held for four years, and 100 percent of stock held for five or more years. Also the per-issuer dollar limitation is increased to greater of \$15 million (adjusted for inflation after 2026) for stock acquired after July 4, 2025 or 10 times the taxpayer's basis in the stock. The aggregate gross asset ceiling is increased to \$75 million (adjusted for inflation after 2026) for stock issued after July 4, 2025.



Chapter 5 - Ending Green New Deal Spending, Promoting America-First Energy, and Other Provisions-termination of most of the renewable energy tax credits as of September 30, 2025 or December 31, 2025.

Chapter 6 - Enhancing Deduction and Income Tax Credit Guardrails, and Other Reforms

Sec. 70601 Modification and extension of limitation on excess business losses of noncorporate taxpayers

IRC Sec. 461(l) is made permanent. For the 2025 tax year, the limits are \$313,000 for the single filers and \$626,000 for married couples filing jointly, indexed for inflation annually.

Sec. 70605 Enforcement provisions with respect to COVID-related employee retention credits

New enforcement provisions have been enacted related to the COVID-era employee retention credit (ERC) against the employer's portion of Medicare tax for qualified wages paid after June 30, 2021 and before October 1, 2021. ERC promoters who meet certain gross receipts requirements but failed to meet certain due diligence requirements in providing assistance related to an ERC are subject to assessable \$1,000 penalty per failure. The Statute of Limitation on the ERC is extended to six years after the latest of the date the underlying tax return was filed or treated as filed, or the date of the ERC or related refund claim was made. The 20-percent penalty on erroneous refund or credit claims has been extended to employment tax claims for refund or credit.

Additional resources on OBBA are available to the public at:

AICPA

<https://www.aicpa-cima.com/resources/download/key-tax-provisions-compared-current-law-vs-one-big-beautiful-bill-act>

FAQ: The One Big Beautiful Bill Act Tax Changes, July 23, 2025

<https://taxfoundation.org/research/all/federal/one-big-beautiful-bill-act-tax-changes/>

Will Trump Accounts Actually Help Families Save? July 23, 2025

<https://taxfoundation.org/podcast/all/trump-savings-accounts-explained/>

The One Big Beautiful Bill is Law – Now What?

<https://taxfoundation.org/podcast/all/the-one-big-beautiful-bill-details/>

Subscription-based tax research software

CCH (Wolters Kluwer), RIACheckpoint, BNA, Tax Notes, etc.

“Accumulation” and “Amortization”

Soon B. Hong
CPA, MBA, Michigan

soonbhong115@gmail.com

“Accumulation”과 “Amortization”은 회계, 금융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영문 어휘이다. 그런데 한국의 회계, 금융 분야에서는 이에 상응한 마땅한 어휘나 용어가 없기 때문에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여 설명 하였다.

“Accumulation”과 “Amortization”이란 어휘가 많이 쓰이는 주제로 저축적립금 계획 (Savings Accumulation)과 융자금상환 계획 (Loan Amortization), 그리고 Premium Amortization과 Discount Accumulation으로 한정하여 설명해 본다.

1 Amortization and Accumulation (I)

1 Savings Accumulation

Savings Accumulation이란 어휘를 많이 사용하는 주제로 저축 적립금 계획 (Savings Plan)이 있다. 적립금 계획에서는 저축(원금)과이자수익을 기초로 만들어진 자산증식의 한 절차인데, 이런 자산증식 절차를 Accumulation이라 한다.

저축적립금 계획은 **미래가치**(목표액: $\$100,000 \div$ 이자율 5%의 이자지표: $5.525631 = \$18,097.48$)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Savings Accumulation의 한 예로 다음 계산절차를 소개해 본다.

저축 적립금 형성표 (단위 : \$)				
년 도	연불입액	이자 수입	원금과 이자	누적적립금
1 년	18,097.48	0.00	18,097.48	18,097.48
2 년	18,097.48	904.87	19,002.35	37,099.83
3 년	18,097.48	1,854.99	19,952.47	57,052.30
4 년	18,097.48	2,852.62	20,950.10	78,002.40
5 년	18,097.48	3,900.12	21,997.60	100,000.00
	90,487.24	9,512.75	100,000.00	

2 Loan Amortization

Loan Amortization의 대표적 주제로 용자금 상환계획 (Loan Payment Plan)이 있다.

용자금 상환계획은 위에서 설명한 저축적립금 계획과는 반대 개념으로 현금유출을 바탕으로 부채가 감소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본 용자금 상환계획의 Amortization은 **현재가치** (목표액: \$100,000 ÷ 이자율 5% 의 이자지표: $4.329477 = \$23,097.48$)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Loan Amortization의 한 절차로 용자금 상환계획을 택하여 설명하여 보는데, 이는 대출 기관과의 약속에 따라 정해진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지불하면서 부채액이 제로(0)가 되는 전통적 용자금 상환계획이다.

용자금 상환표 (단위: \$)				
년 도	연 지불액	지불 이자	원금 감소	원금 잔액
				100,000.00
1 년	23,097.48	(5,000.00)	18,097.48	81,902.52
2 년	23,097.48	(4,095.13)	19,002.35	62,900.17
3 년	23,097.48	(3,145.01)	19,952.47	42,947.70
4 년	23,097.48	(2,147.38)	20,950.10	21,997.60
5 년	23,097.48	(1,099.88)	21,997.60	-0-
	115,487.40	(15,487.40)	100,000.00	

2 Amortization and Accumulation (II)

Accumulation and Amortization의 또 다른 모양으로 Premium Amortization과 Discount Accumulation이 있다.

주: 본 제목의 채권발행은 미시간 대학 교수 William A Paton (회계학의 창시자)의 논문을 인용한 것이다. Paton교수는 그의 저서 “Essentials of Accounting”에서 Premium Bond (할증발행) 와 Discount Bond (할인발행)가 생기는 배경과 과정을 자세히 분석하고 설명하였다.

1 Premium Amortization

먼저 Premium (할증액) 이 생기는 배경을 분석해 본다. 채권을 발행한 다음, 시장에 나가 판매하게 될때, 채권의 계약이자율 (Coupon)이 시장이자율 보다 높으면, 채권은 Premium을 붙여 팔리게된다. 이 절차와 방법을 다음 공식으로 설명하여 본다.

- ▶ 계약 이자율 : 연 3 % (지불 이자)
- ▶ 시장 이자율 : 연 2 % (비용 이자)

(A) 채권가격이 형성되는 절차 : 전통적 방식 (단위: \$):

$$\begin{aligned} & \frac{I}{(1+r)} + \frac{I}{(1+r)^2} + \frac{I}{(1+r)^3} + \frac{F}{(1+r)^3} \\ & \frac{30}{(1+.02)} + \frac{30}{(1+.02)^2} + \frac{30}{(1+.02)^3} + \frac{1,000}{(1+.02)^3} \\ & 29.41 + 28.84 + 28.27 + 942.32 = 1,028.84 \end{aligned}$$

(B) 채권가격이 형성되는 약식 (Short Cut) 절차

- 계약 이자 : 3% (지불 이자)
 - 시장 이자 : 2% (비용 이자)
 - 이자율 차이 : 1% x \$ 1,000 = \$ 10.00 x 2.88388 (*)
 - 할증액 (Premium) → \$ 28.84
 - 채권액면액 (Face value) : + 1,000.00
 - 채권가격 (Bond price) : (할증 채권 가격) = \$ 1,028.84
- (*) 시장 이자율이 2% 일때에 \$ 1.00의 누적 현재가치 지표는 2.88388 이다.
본문 마지막 페이지의 누적 현재가치 지표를 참조하기 바란다.

(C) Premium Amortization의 절차 (단위: \$)

다음 절차에 따라 Premium이 어떻게 Amortize(감소)하면 서 발행가격 (Issue price)이 액면가 (Face value)와 일치하는 가를 보여 주고있다.

만기 연도	연 계약 지불액	시장 이자	Amortization 절차	채권 만기액
	(3%)	(2%)		1,028.84
1 년	30.00	(20.57)	(9.43)	1,019.41
2 년	30.00	(20.39)	(9.61)	1,009.80
3 년	30.00	(20.20)	(9.80)	1,000.00

2 Discount Accumulation

Discount (할인) 가 생기는 배경을 분석해 본다. 채권을 발행한 다음, 시장에 나가 판매하게 될때, 채권의 계약이자율 (Coupon)이 시장이 자율 보다 낮으면, 채권은 Discount로 처리하여 팔리게 된다. 이 절차와 방법을 다음 공식으로 설명하여 본다.

- ▶ 계약 이자율 : 연 3 % (지불 이자)
- ▶ 시장 이자율 : 연 4 % (비용 이자)

(A) 채권가격이 형성되는 절차 : 전통적 방식 (단위: \$):

$$\begin{aligned}
 & \frac{I}{(1+r)} + \frac{I}{(1+r)^2} + \frac{I}{(1+r)^3} + \frac{F}{(1+r)^3} \\
 & \frac{30}{(1+.04)} + \frac{30}{(1+.04)^2} + \frac{30}{(1+.04)^3} + \frac{1,000}{(1+.04)^3} \\
 & 28.84 + 27.74 + 26.67 + 889.00 = 972.25
 \end{aligned}$$

(B) 채권가격이 형성되는 약식 (Short Cut) 절차

- 계약 이자 : 3%
- 시장 이자 : 4%
- 이자율 차이 : (1%) x \$ 1,000 = (\$ 10) x 2.77509 (**)
- 할증액 (Premium) → \$ 27.75
- 채권액면액 (Face value) : + 1,000.00
- 채권가격 (Bond price) : (할증 채권 가격) = \$ 972.25

(**) 시장 이자율이 4% 일때에 \$ 1.00의 누적 현재 가치 지표는 2.77509이다.
다음 누적 현재가치 지표를 참조하기 바란다.

(C) Premium Amortization의 절차 (단위: \$)

다음, Discount가 어떻게 Accumulate(증가)하면서 발행가격 (Issue price)이 액면액 (Face value)과 일치하는 가를 보여 주고 있다.

만기 연도	연 계약 지불액	시장 이자	Amortization 절차	채권 지불액
	(3%)	(4%)		972.25
1 년	30.00	(38.89)	8.89	981.14
2 년	30.00	(39.24)	9.25	990.39
3 년	30.00	(39.61)	9.61	1,000.00

참고 : 이자 지표 화폐 \$1.00의 누적 현재가치 지표 (Present value of \$1.00 Annuity)

기간	이 자 율			
	1%	2%	3%	4%
1 년	0.99010	0.98039	0.97087	0.96154
2 년	1.97040	1.94156	1.91347	1.88609
3 년	2.94099	2.88388	2.82861	2.77509

미국 진출한 한국기업, 트럼프 감세법 OBBBA 꼭 알아야 할 5가지!



Byung Chan Ahn
CPA, California

abc@abccpas.com
KASCPA 회장

트럼프의 초대형 법안,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이 시행됨에 따라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진출하려는 기업, 혹은 이미 미국에 자회사나 지사를 두고 있는 기업들이 꼭 알아야 할 감세법 5가지를 추려보았다.

첫째, Section 199A Pass Through 공제혜택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진출한 기업이 받을 수 있을까?

Section 199A는 미국 세법상 LLC, S-Corp, 파트너십과 같은 Pass Through 사업체의 소득 중 20%를 소득세 계산에서 공제해주는 혜택으로 큰 감세혜택이다. 이 Section 199A는

1.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 또는 미국에서 세금 보고하는 개인과 같이 "미국 납세자"여야 한다.
2. 한국 법인이나 한국 개인은 미국 납세자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Pass Through Entity의 배당과 지분에 따른 소득이 있어도 199A 공제를 받을 수 없다.
3. LLC는 Pass Through이지만, Owner가 외국법인이면 IRS는 이 LLC를 외국 법인이 미국에서 사업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법인의 고정사업장 (Permanent Establishment) 이슈가 발생하고, 소득에 대해서 미국 법인세와 Branch Profit Tax를 적용 받게 된다.

그렇다면, 한국기업과 개인이 이 Section 199A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두가지의 해결책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미국 납세자를 회사 구조에 포함시키는 전략이다. 미국 납세자를 지분 파트너로 포함해서 회사를 Joint Venture 형태로 만드는 것이다. 즉, LLC 또는 Partnership으로 한국기업의 지분 80% 그리고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에게 20% 지분을 할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거주자 지분 20%에 대해서 Section 199A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심해야 할 것은 미국거주자의 명의만 빌리는 형태는 IRS 로 부터 Challenge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한다.

둘째, 미국 개인이 LLC의 100% owner가 되고, 한국 기업은 B2B 계약자로 참여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미국거주자가 LLC의 100% 소유권을 가지고, 한국기업은 제품 공급, 기술 라이선스, 브랜드 사용 계약으로 참여하는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LLC는 미국 내 개인 소유가 되어서 Section 199A 공제 혜택이 가능해지고, 한국 기업은 이전가격 문제만 없다면, 로열티와 매출 수익 확보를 통해서 미국 세법상 과세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Section 179 공제 와 Bonus Depreciation

OBBBA에서는 Section 179의 한도액을 증가시켰다. 2025년 기준으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구입한 첫해에 최대 공제 한도액이 \$2,500,000 로 증가했고, 자산 구입 총액이 \$4,000,000를 넘으면 공제 가능 금액이 단계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100% 보너스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Bonus Depreciation 은 기존에는 2022년에서 2023년까지 100% 즉시 감가상각이 가능했지만, 2024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줄어들어서 2027년에는 모두 폐지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OBBBA 법안 통과로 인해서 다시 구입한 즉시 100%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해지게 되었고, 이 규정은 영구화 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미국의 이런 감가상각에 대한 세금혜택을 주는 제도가 거의 없고, 매우 제한적인 반면 미국에서는 사업용 장비, 기계, 가구 와 같이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세금혜택이 매우 좋기 때문에 이 규정을 잘 활용해서 절세를 꾀하는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참고해야 할 것은 Section 179 과 Bonus Depreciation 은 중복해서 적용할 수는 있지만, 순서와 한도를 잘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자산의 사용 시점 기준으로 공제가 인정되고, 자산을 설치만 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는 점 유념해야 겠다.

결론적으로 한국기업이 미국에 법인을 설립해서 기계, 가구, 차량 등 사업용 자산을 구입하면, 구입한 첫해에 전액을 비용 처리해서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절세 방법이다.

셋째, R & D에 대한 지출 전액을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는 R&D 비용을 5년 이상에 걸쳐 나눠서 비용 처리해야 했지만, IRS §174 및 §41 관련 규정에 따라 Qualified R&D 지출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 비용을 바로 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단, 주의할 점은 반드시 미국 내에서 수행된 연구활동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미국 내 직원 또는 미국 내 고용된 연구인력이 직접 수행했어야 하고, 급여, 재료비, 임대료 등의 비용이 미국 내에서 지출된 비용이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한국 본사에서 한국 인력이 수행한 R&D 비용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미국 세법에 의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R&D 지출은 꼭 기술집약적 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 요식업, 패션, 화장품, 건축 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도 가능하다. R & D 세금 혜택이 가능한 예를 들어 보면, 요식업의 경우에는 새로운 조리법 개발, 글루텐프리, 비건, 신기술 조리 기법을 도입하기 위한 실험이라든지, 새로운 메뉴 연구에 들어가는 지출들은 R & D 세금혜택이 가능하다. 그리고 의류와 Fashion 업의 경우에는 신소재 즉 기능성 원단, 독자적 재단 기술, 의복의 착용감 개선 연구 등과 같은 것도 가능하다. 화장품업 같은 경우에는 천연성분 Formular를 개발한다든지, 피부테스트 기반 제품을 개량한다든지 하는데 들어간 비용 역시 가능하다.

한국기업이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이점을 위해서 미국내 R&D Center를 설립을 고려할만 하다. 이 경우 첫 해에 R&D 투자 비용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 부담이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현지 고용 확대와 기술 이전 없이도 빠른 시장 진출이 가능해지고, 미국 정부의 R&D 보조금이나 Start-up Incentive Program 과 연계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법인세율 21% 그대로 유지

미국은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 개정세법(TCJA)을 통해 법인세율을 기존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했다. 이것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며, 미국 내 법인 설립에 강력한 인센티브가 되었다. OBBBA 법안에서도 이 21% 법인세율이 추가 인상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법인세 인하 자체는 아니지만, 낮은 세율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특히 미국에 제조업, 물류, 서비스 법인을 설립하려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안정적인 세무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다섯번째, GILTI(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와 FDII(Foreign-Derived Intangible Income) 공제율이 영구적으로 확정되었다.

GILTI는 원래 2017년 TCJA 세법에서 글로벌 법인세 회피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반면, FDII는 미국 내에서 창출된 무형자산(IP, 브랜드, 기술 등)이 해외 고객에게 사용되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제도인 것이다.

이번 OBBBA 법안의 핵심 조항은 GILTI 공제는 해외 자회사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GILTI 계산 시, 40%는 공제. 즉, 나머지 60%에만 세금 부과되는 것이고, FDII 공제는 미국에서 창출된 무형자산 기반 해외수익의 33.34%를 세금 계산 시 공제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 비율은 원래 TCJA에서 GILTI 50%, FDII 37.5% 였지만, OBBBA법안을 통해서 각각 40%와 33.34%로 다소 축소된 공제비율이 영구확정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공제율 확정이 왜 중요할까? GILTI와 FDII는 미국 다국적 기업의 국제 세무전략에 큰 영향을 주는 항목이다. 공제율이 불안정하거나 해마다 바뀌게 되면 세무계획 수립이 매우 어렵다. 이번에 공제율이 영구적으로 명시되면서, 기업의 세무 예측 가능성이 증가되었고, 해외 소득 구조를 설계할 때 명확한 기준이 확보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금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감소되었다.

트럼프의 OBBBA법안은 단순한 미국 감세법이 아니라, 한국 기업에게도 전략적 기회가 될 수 있는 법안이다. 미국에 생산거점, 물류센터, 유통망을 확대하려는 기업이라면 지금이 중장기 진출 전략을 다시 짜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한미은행에서
뱅킹은 **더** 편리하게
예금은 **더** 안전하게

40년 이상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 해온 한미은행이
미 전역의 지점 네트워크와 온라인, 모바일로
더 편리하고 안전한 뱅킹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Bank on Your Dreams
Hanmi Bank

멈출 수 없는 한국의 회계개혁

- 독립성과 감사품질의 선순환을 위하여



조연주
경영학박사, CPA

swcpa@kicpa.kr

KICPA 상근연구부회장 / 연구·교육부문 총괄 / 지속가능성인증연구센터장

20여년전 미국에서는 엔론과 월드콤 등 회계스캔дал이 발생하였고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로 인한 경영진의 전횡, 회계처리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성 부족, 감사인의 독립성 미흡을 주요 원인으로 보았다. 삭스법을 제정하여 감사위원회 설치와 외부감사인 선임권한 부여,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의무화 등 당시로서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강력한 회계개혁 조치를 취하였다. 삭스법 시행이후 미국은 일련의 회계개혁제도를 중단없이 끝까지 시행해왔다. 그 결과 지금은 세계 최고수준의 회계투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2017년 한국은 5조원의 혈세가 투입된 대우조선해양 회계스캔дал의 여파로 주기적지정제, 표준감사시간,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제도의 도입 등이 포함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을 전부 개정하였다.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를 근절하기 위해 과거부터 논의되어 온 회계개혁 과제들이 총망라되어 있어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판 '삭스법'(SOX, Sarbanes-Oxley Act)이라고 부른다.

한국 정부는 “감사품질을 높이고 신뢰를 회복한다”는 목표 아래 제도 전반을 손질했다. 개혁의 중심에는 주기적 지정제, 표준감사시간, 상장회사 감사인등록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과징금 등 제재 체계가 있다.

주기적 지정제

표준감사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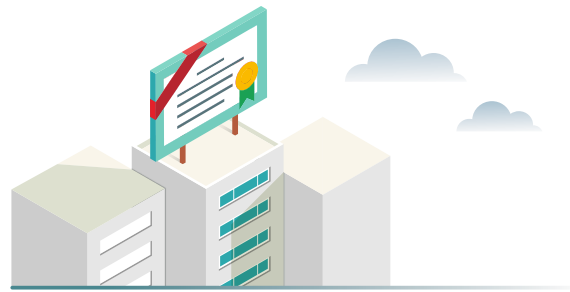
상장회사 감사인등록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과징금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회사가 6년동안 자유롭게 감사인을 선임하고 그 후 3년 간은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기 위해 지정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장기적인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유착을 끊고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2017년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과 함께 설계되었다. 제도 시행 이후 기업들은 감사비용과 전환비용 증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규제라는 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밝혀왔다. 이에 정책 당국은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되 성과와 리스크에 따라 차등을 주는 방식으로 보완했다. 그 결과가 2024년 말 발표된 '지배구조 우수 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다.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하다고 평가된 상장사는 한 번에 한해 지정 기간 3년을 유예받아 자율선임 기간이 9년으로 늘어나고 이후 3년 지정이 적용된다. 평가는 5개 분야 17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민간전문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제도는 2025~2027년 한시 운영 후 2027년에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유예는 개혁의 후퇴가 아니라, 잘 갖춘 기업에는 유연성을 부여해 더 높은 수준의 지배구조 투자를 유도하려는 인센티브형 정교화에 가깝다.

표준감사시간은 업종과 규모, 위험을 반영해 적정 감사 품질을 담보할 최소 투입시간을 제시하는 제도다. 이는 감사보수의 바닥선을 정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품질의 하한선을 명확히 해 덤핑형 감사로 회귀하지 않도록 막는 안전 장치에 가깝다. 2024년 말에는 2025 ~ 2027년에 적용할 표준감사시간이 확정되었고,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고려한 적용 유예·부분 적용이 연장되었다. 통합감사, 데이터 분석, 원격감사 등 감사 효율성을 높인 기업이나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표준 감사시간을 합리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되었다. 핵심은 품질 기준을 지키면서 효율을 높일 방법을 제도에 내장하는 데 있다.



상장회사 감사인등록제는 상장사 감사를 수행할 회계법인이 품질관리체계, 인력과 설비, 보고서 심리 체계를 갖추고 사전 등록을 마쳐야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든 필터다. 2019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감사가 상장사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중소형 회계법인도 요건을 충족해 등록을 확대함으로써 감사인 선택권을 넓히는 효과를 가져왔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는 자산 규모에 따라 검토에서 감사로 단계적으로 상향되었고, 연결 단위 감사도 도입되었다. 다만 자산 1,000억 원 미만의 소형 상장사는 외부감사를 면제하고 검토를 유지하도록 하여 부담을 조정했다. 제도의 방향은 명확하다.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이되, 규모와 위험에 따라 합리적인 예외와 완충장치를 배치하는 것이다.

제재 체계는 과징금과 감리를 중심으로 정비되었다. 신 외감법 시행 이후 과징금 부과 대상과 규모가 확대되었다.

기업의 반대와 유예 제도의 도입은 한국형 개혁이 '강경 일변도'가 아니라 '리스크 기반 차등'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주기적 지정제, 표준감사 시간,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과징금 체계라는 다섯 축은 독립성과 품질을 기준선으로 삼고, 내부통제가 성숙하고 재무보고 리스크가 낮은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로 재조정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지배구조와 통제를 강화할 동기를 갖게 되고, 감사인은 품질을 희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효율을 끌어올릴 여지를 갖게 된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평가의 'Auditing and accounting practices' 지표는 제도의 성패를 직접 측정하기보다는 시장의 인식을 포착하는 보조지표 성격이 강하다. 한국의 순위는 2017년 63위에서 2019년 61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다가, 개혁 시행 이후 2020년 46위, 2021년 37위로 크게 개선되었다. 이후 대형 횡령 사건 등이 겹치면서 2022년 53위로 하락했지만 2023년 47위, 2024년 41위로 다시 회복했다. 이 흐름은 제도의 유지와 운영 품질, 그리고 현장의 실무 개선이 인식에 빠르게 반영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개혁의 강약만으로 순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의 예측가능성과 내부통제의 실효성이 시장 신뢰를 좌우한다.

미국은 엔론사태 이후 중단없는 회계개혁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강한 자본시장을 만들었다. 우리나라도 대우조선해양 회계스캔달 이후 '국민이 주신 마지막 기회'이고 '더 이상의 회계개혁은 없다'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회계개혁을 시작했다. 지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회계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는 거다.

왜 지금 회계개혁을 멈출 수 없는지에 대한 답은 분명하다.

첫째, 주기적 지정제는 한국의 취약한 지배구조 환경에서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제하는 안전장치로 작동한다. 유예 제도와 같은 성과-리스크 기반 차등은 더 다듬되, 제도의 축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둘째, 표준감사시간은 최저가 경쟁으로 품질이 훼손되는 것을 막는 하한선이다. 통합감사와 데이터 분석, 원격감사 등 디지털 기법을 계획 단계부터 설계해 품질과 효율의 균형을 높여야 한다.

셋째, 감사인등록제와 일관된 제재는 시장 진입과 행태를 규율하는 신뢰 필터다. 등록 요건과 공개 수준을 더욱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재무보고의 근육을 키우는 제도다. 소형사에 대한 부담 완화와 함께 사후 모니터링, 표본 점검, 교육과 도구 지원을 정례화해 빈틈을 줄여야 한다.

다섯째, 과징금과 감리는 예측가능하고 일관되게 집행되어야 한다. 고의·중대 위반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경미 위반에는 교정 중심의 처방을 적용하되 기준과 절차를 공개해 규범 확실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상장회사 감사인의 품질관리 시스템을 평가하는 품질관리감리는 감사품질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요소에 감리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영리부문의 회계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사립학교감사와 공익법인감사에서도 4+2의 주기적 지정감사가 시행되는 등 비영리 공공부문으로 회계개혁이 확장되고 있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비영리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회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회계투명성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영리부문의 회계투명성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하여 국가투명성, 사회투명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회계개혁은 독립성과 품질이라는 두 바퀴로 굴러왔다. 이제 인센티브와 데이터,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운영의 정밀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때다. 멈추지 않고 정교화하는 것만이 기업가치와 국가신인도를 함께 높이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MassMutual

Northern Virginia

사업은 잘되지만, 이대로 괜찮을까요?

은퇴 준비, 절세, 직원 복지, 비즈니스 승계...
중요한 줄 알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온 일들.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은퇴 플랜, 보험, 투자, 비즈니스 재정 플랜까지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한인 사업주를 위한
종합 재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재정설계 & 생명보험회사

MassMutual

Northern Virginia
stands with you.

MassMutual은 172년 이상 축적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선도적인 자산 관리 및 생명보험회사입니다.

학자금 저축 플랜
은퇴 플랜
소셜연금 혜택 플랜
유산/증여 플랜

생명 보험
상해 소득 보험
장기 간호 보험
소득 연금 / 이연 연금

 **703.218.6700**

3975 Fair Ridge Drive,
Fairfax, VA 22033

Local firms are sales offices of Massachusetts Mutual Life Insurance Company (MassMutual), Springfield, MA 01111-0001 and are not subsidiaries of MassMutual or its affiliated companies. Securities and investment advisory services offered through qualified registered representatives of MML Investors Services, LLC. Member SIPC. Supervisory Office: 3975 Fair Ridge Drive, Suite 315N, Fairfax, VA 22033; Phone: 703-218-6700. CRN202806-8845942

한국 주택과 비거주자의 세금 이야기



심 충 진
교수, 회계학박사

chjshim@konkuk.ac.kr
건국대학교

I. 들어가기

한국에서 부동산은 개인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늘 관심을 갖고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 가격은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올라 개인은 부동산을 통해 부자가 되려는 마음이 있고 기회만 된다면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금융 제한뿐만 아니라 세제를 통해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다. 한국 부동산의 특징 중의 하나는 가격 베이스에 의한 부동산 과세보다는 부동산 보유 수에 따라 과세를 강화하려는 측면이 강하다.

한국 세법은 부동산의 보유와 양도 단계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다. 비거주자란

원칙적으로 한국에 거주지 또는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한국) 원천소득과 국내(한국) 소재 자산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비거주자가 한국 내 주택을 취득, 보유, 양도시 어떠한 세금을 부담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I. 주택 취득과 세금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부담한다. 이때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 등을 말한다. 비거주자의 취득세는 거주자의 취득세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내 주택 취득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종과세 대상 여부, 감면 규정, 취득세의 부가세(surtax)인 농어촌 특별세 대상 여부와 지방교육세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유상 취득시 세금

지방 등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세대 2주택까지는 취득원가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3%, 9억원 초과는 3%의 취득세(본세)를 적용한다. 서울 등 조정대상 지역에 해당할 경우 1세대 1주택은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며, 1세대 2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8%, 3주택 이상 취득시는 12%, 법인은 지역에 상관없이 12%의 높은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 급등이나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하며 국토교통부에서 해당 지역을 공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취득세의 종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수도권 이외 지역에 한 해 1억 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수도권은 공시가격 1억원 유지)하여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취득세에 종과세율(8%, 12%)을 적용되지 않고 1%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취득세 종과세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소규모 주택을 취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2. 상속과 증여로 취득시 세금

상속 주택은 2.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과세표준의 10%, 주택 전용면적 85m²이상일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 과세표준의 0.2%를 적용한다. 증여 주택의 경우 일반납세자는 3.5%(비영리사업자는 2.8%)를 부담하며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의 세율은 상속 주택 취득과 같다. 상속과 증여로 주택 취득시 누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약간 고율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재외국민의 경우는 국내 무주택자의 특례 세율 0.8%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히, 상속 및 증여로 취득시 취득가액은 상속 및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평가는 감정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공시가격 등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납세자가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도 신고하지 않고 공시가격으로 신고할 경우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이 시가보다 낮기 때문에 국세청 세무조사시 과소신고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III. 주택 보유와 세금

부동산 보유세로는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재산세가 있다.

1. 종합부동산세 부담

비거주자의 국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매년 6월 1일 기준 국내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계금액에서 9억원을 차감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산출한다.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아 합계금액에서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없고 9억원만 공제받는다. 2주택 이하의 경우 0.5%(과세표준 3억원 이하)에서 2.7%(과세표준 94억원 초과시)까지 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최고 5.0%까지 세율을 적용한다. 아파트 공시가격의 현실화률 69%를 반영해 보면 아파트 시세 17억원 이하이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고가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염려해 두어야 한다.

2. 재산세 부담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산출한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며, 일반적으로 시가 대비 아파트는 평균 69%,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가 적용되며 매년 변동될 수 있다.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특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고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세율은 0.1%(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에서 0.4%(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초과시)까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 시가 12억 5천만원일 경우 공시가격은 약 8억 6,100만원 정도된다. 이 때 재산세의 부가세(surtax)인 도시지역분(재산세 과세표준의 0.14%), 지방교육세(본세의 20%), 지역자원시설세(건축물 시가 표준액×60%×초과누진세율)을 포함하면 재산세 총액은

약 226만원 정도로 시가 대비 실효세율은 약 0.18%로 낮다. 각 아파트별 시가표준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재산세 부담액은 달리 나타날 수 있다.

3. 국내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비거주자는 한국 내 주택만 주택 수에 포함되며 미국 등 국외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내 발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조세부담이 있다. 비거주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미등록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일 경우 무신고시 가산세는 부과된다

국내 1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인 경우만) 소유자에 대한 월세 임대소득은 비과세되며, 국내 2주택 이상 보유시 발생하는 월세는 과세대상이 된다. 보증금(전세금)은 원칙적으로 3주택(주거전용면적 40m²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 이상 보유시 보증금 3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며, 2026년부터는 2주택 모두 고가주택일 경우 전세보증금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된다. 다만,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고가주택)은 1주택이라도 월세에 대해 과세된다.

아파트, 오피스텔 등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14%, 지방세 1.4% 별도)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며,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초과하면 반드시 종합과세로서 소득발생의 다음 연도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IV. 부동산 양도와 세금

비거주자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준용하여 과세한다. 다만, 비과세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등에 있어 다소의 차이가 있다(소득세법 제121조).

1. 1세대 1주택 특례 원칙적으로 배제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의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거주자와 달리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양도차익에 6%(보유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부터 최대 30%(보유기간 15년 이상)까지 보유기간에 따라 연 2%p씩 증가된다. 다만,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 출국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해외 이주 전 국내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출국 전 주택의 양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세율

비거주자도 다주택자 종과세율을 적용받으며 장기 임대주택 등 종과배제 규정도 적용받는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국내 거주자와 동일한 누진세율(6%~45%)이 적용되며, 다주택자의 경우 종과세율은 2026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비거주 외국인은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의 10%(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20%와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매각 전 반드시 사전신고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V. 마무리

비거주자로서 국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국내 주택을 유상 또는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할 경우 부담해야 될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다. 한국에서 부동산은 뜨거운 감자와 같으므로 매년 경제와 부동산 상황에 따라 부동산 조세정책이 변동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세금 부과시 대 원칙은 있지만 주택의 보유 수, 위치, 규모, 가격 등에 의해 세법상 불이익과 혜택이 병존하므로 국내 주택 취득시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 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부담해야 될 세금을 취득, 보유와 양도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Knowledge You Can Trust



THOMSON REUTERS

UltraTax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UltraTax is The Highest Rated Professional Tax Software 2009-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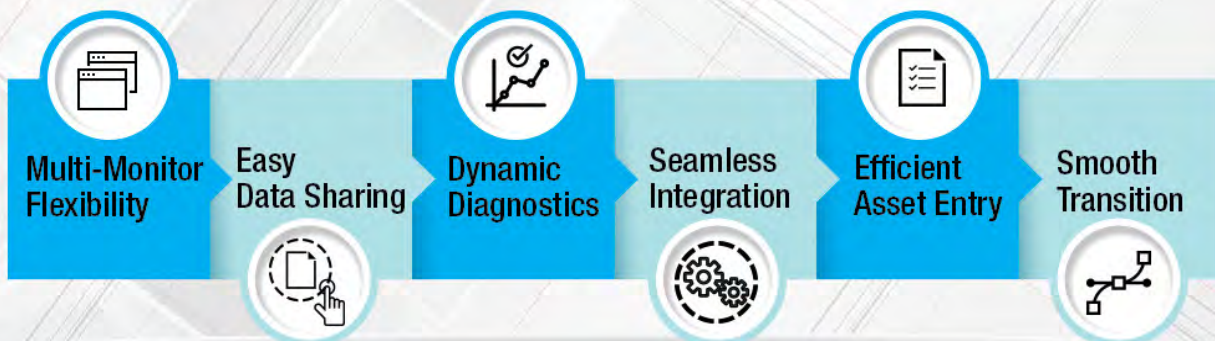
(according to the tax software survey conducted by the Journal of Accountancy and Tax Advisors)

* Used by over 93% of all practicing Korean CPAs and EAs in greater NY area

* Used by over 180 practicing Korean CPAs in California

* Used by 7 out of 10 largest Korean CPA firms in the US

e-Consultants Inc. 를 통하여 UltraTax Program을 구입하실 경우 상당한 **가격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재원을 위한 필수 기본 세법 Q&A



Young Kwon Park
CPA, MBA, Georgia

youngkparkcpa@gmail.com

미국에서 근무하는 주재원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 및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세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체계적인 안내가 필수적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꼭 숙지해야 할 주요 세법 사항을 Q&A 형식으로 정리하였는데,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간결하게 기술하였으므로, 구체적인 사례 적용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권장한다.

Q. 세법상 미국 거주 외국인(Us Resident Alien)이란 누구를 의미하는가?

- A. 영주권자(Green Card Holder)는 거주 기간과 상관 없이 미국 거주 외국인에 포함된다.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최근 3년 동안 미국 내 거주 일수를 가중평가해 183일 이상 거주하면 미국 거주 외국인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면 2024년 12월 31일 기준 지난 3년간 거주일수가 2024년 150일, 2023년 120일, 2022년 120일이라면, $150 + (120 \times 1/3) + (120 \times 1/6) = 210$ 일로, 2024년 세금 신고 시 미국 거주자로 간주된다.

Q. 세법상 미국 거주 외국인은 개인 소득 신고 시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뿐 아니라 한국 소득도 모두 신고해야 하나?

- A. 그렇다. 미국 시민권자 및 세법상 미국 거주 외국인은 전 세계 어디에서 발생한 소득을 IRS(미 연방국세청)에 모두 신고해야 한다. 개인 소득 신고 마감일은 매년 4월 15일이다. 세금 보고서 제출 연장 신청을 할 경우 최대 6개월(10월 15일)까지 신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세금 납부 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므로, 예상 세금은 4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연장 기간 중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 이자와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 연장은 자동으로 승인되지 않고 IRS에 별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Q. 한국에서 소득세를 이미 납부했는데 미국에도 소득세를 내면 이중과세가 아닌가?

A. 미국 세법에는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만큼 미국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Foreign Tax Credit 제도가 있다. 이 제도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 예를 압축해서 설명해 보자. 한국 소득 \$50,000에 대해 미국 소득세가 \$10,000, 한국에서 이미 \$8,000의 소득세를 냈다면 미국에 추가로 낼 세금은 \$2,000이다. 한국에서 낸 소득세가 미국 소득세보다 많으면 미국에 내는 세금은 없다. 이러한 Foreign Tax Credit 혜택을 받으려면 외국 소득 신고와 크레딧 계산 서식을 세금 보고서에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Q. 주재원 자격으로 미국에서 5년째 근무 중이고 세법상 미국 거주 외국인 자격으로 그동안 세금 보고를 했다. 미국내 주택을 매각했는데 클로징 변호사가 영주권이 없으니 매각금액 15%를 IRS에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한다. 이런 절차가 맞는가?

A. 세법상 미국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이 미국 내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매각 금액의 15%를 IRS에 원천징수하는 의무는 FIRPTA(Foreign Investment in Real Property Tax Act)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세법상 미국 비거주 외국인이라는 것이다. 세법상 미국 비 거주 외국인이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며 세법상 미국 거주 외국인도 아닌 경우를 말한다. 질문자의 경우 이미 세법상 미국 거주 외국인 자격이라고 했으므로 당연히 세법상 미국 비 거주 외국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질문에서 말한 15% 원천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영주권이 없으니 FIRPTA를 적용하겠다고 한 것은 절차상 맞지 않은 것이다. 참고로 이미 원천징수가 된 경우에는 개인 세금 신고시 공제 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Q. 미국에서 근무하며 봉급 일부를 한국의 은행 계좌로 받는데?

A. 미국 내에서 발생한 근로 소득은 전액 미국 과세 대상이므로, 봉급이 어느 국가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는지는 세법상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회사(고용주)는 직원의 전체 급여를 기준으로 매년 W-2 원천징수 보고서를 작성해 IRS에 보고하며, 직원은 개인 소득세 신고 시 이 총급여를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Q. 한국 아파트 전세금을 받았다. 전세금도 미국 세법상 임대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가?

- A. 한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전세 제도는 미국 세법에서는 매우 생소한 형태이다. 전세금은 일종의 보증금(Security Deposit) 성격으로, 계약 만료 시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전세금 자체는 임대 소득(Rental Income)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 그러나 유의할 점이 있다. 미국 세법에는 전세와 같은 제도가 없으므로, IRS에서는 임대 관련 금전 거래가 있으면 이를 임대 소득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필요 시 전세금이 단순 반환 의무가 있는 보증금임을 증명해야 한다. 그 예로 전세 계약서 원본(또는 영문 번역본), 전세금 입출금 내역(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전세 제도에 대한 간단한 설명서를 들 수 있다. 유의할 점은 전세금을 은행에 예치해 발생한 이자 소득은 미국 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예금 잔고가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해외 금융 계좌 신고 및 해외 금융 자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Q. 올해 4월 미국에 처음 입국했고 계속해서 미국에 머물 계획이다. 개인 소득세 신고 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가?

- A. 미국에 처음 입국한 외국인인 입국 전후로 세법상 신분이 달라진다. 즉 입국 전에는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이 되고 입국 후에는 세법상 거주 외국인(실질적 거주자 요건 충족 시)가 된다. 따라서 해당 연도에는 Dual-Status Taxpayer(이중 신분 납세자)가 되므로, 일반 거주자 신고와 달리 공제와 환급, 신고형태에 제약이 있으므로 세금 보고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Q. 해외 금융 계좌 신고(FBAR)란 무엇인가?

- A. 해외 금융 계좌에는 은행 예금, 개인연금, 주식 계좌, 뮤추얼 펀드 등 모든 해외 금융 계좌가 포함되며, 해외 계좌들의 잔액 합계가 1년 중 한 번이라도 \$10,000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는 다음 해 4월 15일(혹은 자동 연장 10월 15일)까지 FinCEN Form 114를 이용해 미국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에 전자 신고로 진행한다. 이 신고는 개인 소득세 신고와는 별도로 이루어지며, 세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다.

Q. 해외 금융 자산 신고(FATCA)란 무엇인가?

- A. 해외 금융 자산 신고는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에 따라 해외 금융 계좌 뿐만 아니라 해외 법인의 지분, 투자 상품 등 다양한 해외 금융 자산을 IRS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해외 금융 계좌 신고(FBAR)는 미국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에 신고하는 반면, FATCA 신고는 미국 국세청(IRS)에 제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신고 시 해외 계좌 개설 및 해지 여부, 환율 적용 정보, 해외 금융 소득 반영 여부 등을 확인하며, 세금 납부 의무는 없다.
- 미국 거주자로서 신고 대상 기준을 살펴보면,

- ▶ 독신자의 경우 연말 자산 총액이 \$50,000 초과 또는 연중 어느 시점의 최고 자산 총액이 \$75,000 초과일 경우 신고 대상이다.
- ▶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연말 자산 총액이 \$100,000 초과 또는 연중 어느 시점의 최고 자산 총액이 \$150,000 초과일 경우 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 양식은 Form 8938 (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인데 개인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며, 신고 마감일은 개인 소득세 신고 마감일인 매년 4월 15일(연장 시 최대 10월 15일 까지 연장 가능)이다.

See what's next

How can you gain a strategic advantage?
Through data-driven insights, cutting-edge digital tools
and industry-leading security designed to drive your business.

What would you like the power to do?®

Start the conversation
June Seo, June.seo@bofa.com
business.bofa.com

BANK OF AMERICA 

"Bank of America" and "BoFA Securities" are the marketing names used by the Global Banking and Global Markets divisions of Bank of America Corporation. Lending, derivatives, other commercial banking activities, and trading in certain financial instruments are performed globally by banking affiliates of Bank of America Corporation, including Bank of America, N.A., Member FDIC. Trading in securities and financial instruments, and strategic advisory, and other investment banking activities, are performed globally by investment banking affiliates of Bank of America Corporation ("Investment Banking Affiliates"), including, in the United States, BofA Securities, Inc., which is a registered broker-dealer and Member of SIPC, and, in other jurisdictions, by locally registered entities. BofA Securities, Inc. is a registered futures commission merchant with the CFTC and a member of the NFA.

Investment products offered by Investment Banking Affiliates: **Are Not FDIC Insured** **Are Not Bank Guaranteed** **May Lose Value**

©2025 Bank of America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GBGM-571-AD 8006184



Empowering Your Business Growth with Flexible Financing Solutions.

**Columbia Bank offers a
full suite of Commercial
Banking services.**

PPBI.com | Member FDIC | Equal Housing Lender 



**Joseph Suh | VP
Sr. Relationship Manager**
jsuh@ppbi.com
D: (949) 526-7356
M: (949) 372-7231



Understanding the Peer Review Process : A Pillar of Quality and Accountability in Public Accounting



Sung Bum Cho
CPA, California

sungbumhocpa@gmail.com
KASCPA 사무총장

As licensed CPAs, we are entrusted with the responsibility of upholding the highest standards of professionalism, integrity, and technical competence. One of the cornerstones of quality assurance in our profession is the **peer review process**. Administered through state societies under the oversight of the AICPA and relevant state boards of accountancy, peer review plays a critical role in ensuring that firms engaged in performing any accounting and auditing services maintain compliance with professional standards.

✓ Purpose of Peer Review

The primary purpose of a peer review is to enhance the quality of a CPA firm's accounting and auditing practice. It provides an independent evaluation of whether a firm's system of quality control is suitably designed and operating effectively. More than a compliance requirement, peer review is an opportunity for firms to gain valuable insights, promote accountability, and improve service delivery to clients and the public.

✓ Who Is Subject to Peer Review?

CPA firms that perform any accounting and auditing engagements under the Statements on Auditing Standards (SASs), Statements on Standards for Accounting and Review Services (SSARs), or Statements on Standards for Attestation Engagements (SSAEs), Government Auditing Standards, Audits of non-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issuers performed pursuant to the standards of the 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PCAOB) are required to undergo a peer review.

Key examples of engagements subject to peer review include:

- Financial statement audits
- Reviews and compilations
- Agreed-upon procedures
- Examinations of internal controls

Firms that do not perform any of these services are typically exempt but may voluntarily participate.

✓ The Peer Review Process

There are two types of peer reviews:

- ① System Review – For firms performing audits or other attest engagements that require an understanding and evaluation of the firm's system of quality control.
- ② Engagement Review – For firms that only perform SSARS or SSAE engagements without audits.

✓ Procedures typically include:

- Evaluation of firm policies and procedures
- Review of selected engagements for conformity with professional standards
- Assessment of independence and ethical considerations
- Interviews with partners and staff
-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if applicable

The review is conducted by a qualified peer reviewer or review team, typically from a firm with similar industry experience.

✓ Final Outcome and Reporting

The result of a peer review is communicated through a Peer Review Report, which includes one of the following ratings:

- Pass – No findings or deficiencies
- Pass with Deficiencies – Some issues identified, but overall system is functional
- Fail – Significant deficiencies in compliance or quality control

✓ Important Peer Review Findings: MFCS and FFCS

During the peer review, the following flags may be used:

- **MFCS (Matter for Further Consideration by the System/Engagement Reviewer) :**
A reviewer identifies a potential issue that needs additional evaluation. It may lead to a formal finding or be resolved without action.
- **FFCS (Finding for Further Consideration by the Report Acceptance Body – RAB) :**
A formal deficiency or significant deficiency identified by the peer reviewer is submitted to the administering entity's RAB. The RAB may request a corrective action plan, monitoring, or even a follow-up review.

These designations promote due diligence and transparency in the review process and ensure consistency in how findings are resolved and reported.

Peer review results are submitted to the AICPA and, where applicable, state boards of accountancy. Many states require public disclosure of peer review reports, particularly for firms issuing audit reports.

✓ Other Key Considerations

- **Frequency :** Peer reviews are required every three years.
- **Preparation :** Firms are encouraged to maintain updated quality control documentation, monitor independence rules, and conduct internal inspections between peer reviews.
- **Ethical Duty :** The peer review process underscores the CPA's duty to the public interest, reinforcing a culture of quality and eth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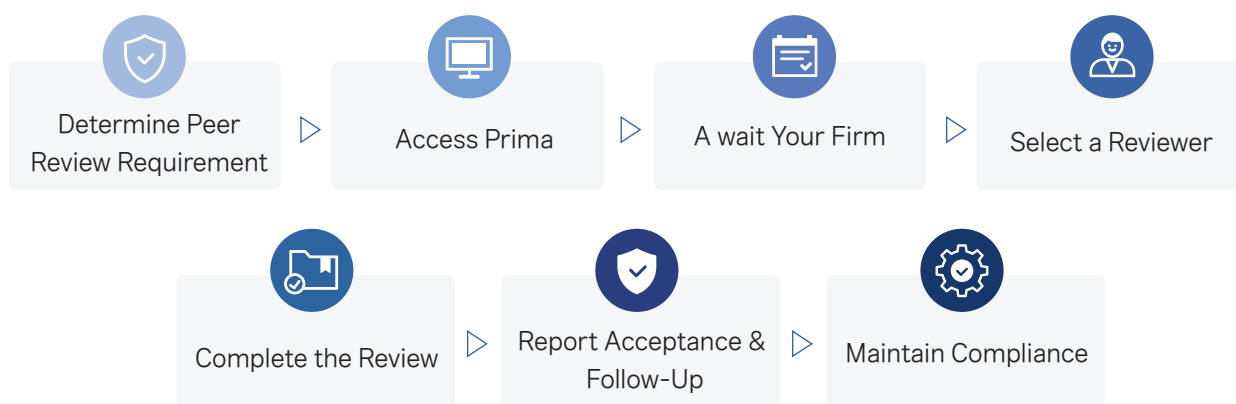
✓ Best Practices for a Successful Peer Review

- 1 Maintain a Written Quality Control Document – Even small firms benefit from a formalized system.
- 2 Stay Updated on Standards – Frequent changes in GAAS, SSARS, and SSAE standards require ongoing education.
- 3 Conduct Internal Inspections – Periodic self-reviews help identify weaknesses early.
- 4 Engage Reviewers with Experience in Small Firm Practice – This ensures both compliance and practical relevance.

✓ Initiating a Peer Review Through AICPA PRIMA

For CPA firms subject to peer review requirements, the AICPA's PRIMA (Peer Review Integrated Management Application) system is the central platform used to manage the peer review process. Below is a step-by-step outline of how to begin and navigate the peer review process through PRIMA:

Steps to Peer Review Enrollment



Step 1 : Determine Peer Review Requirement

You need a peer review if you perform any accounting and auditing services using the following professional standards:

- Statements on Auditing Standards (SASs)
- Statements on Standards for Accounting and Review Services (SSARS)*
- Statements on Standards on Attestation Engagements (SSAEs)
- Government Auditing Standards
- Audits of non-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issuers performed pursuant to the standards of the 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PCAOB)
- If required, firms must enroll in the AICPA Peer Review Program within one year of their first engagement and the peer review must be accepted within 18 months after first engagement or three years since your last peer review.

Step 2 : Access PRIMA

Visit the AICPA Peer Review homepage: www.aicpa.org/peerreview

- Search for PRIMA to access the Peer Review Program

Log in to the PRIMA system using the AICPA credentials of a designated Firm Administrator

Step 3 : Enroll Your Firm

- Select “Enroll My Firm” in PRIMA.
- Complete the Peer Review Enrollment Form, including:
 - Type of services offered
 - Highest level of service
 - Date of first attest engagement
 - Contact and firm information

Step 4 : Await Review Due Date

- After enrollment, PRIMA will assign a peer review due date, typically:
 - 1 year from the date of the first attest engagement

Step 5 : Select a Reviewer

- Use PRIMA to request and select an approved peer reviewer or team from the AICPA reviewer database
- Firms can select a peer reviewer from any state
 - https://peerreview.aicpa.org/reviewer_search.html

Step 6 : Complete the Review

- Reviewer will provide a copy of the Engagement Letter. The Firm must sign the engagement letter and the executed letter must be provided back to the Reviewer.
- Provide the reviewer with copies of both the Firm and Individual CPA license.
- Complete Appendix A 'Engagement Summary Form' with the number of engagements performed and level of service provided. Once completed, provide it to the Reviewer to make selections on which engagements to perform the Peer Review on.
- Provide the Reviewer with access to engagement documentation, quality control policies, and requested materials (e.g., Engagement Profile Form, Financial Statements, Reports, and Client Engagement Letters)
- The reviewer conducts the peer review, typically including:
 - Interviews with key personnel
 - Evaluation of selected engagements
 - Assessment of quality control systems (System Review) or engagement compliance (Engagement Review)

Step 7 : Report Acceptance and Follow-Up

- Based on the Peer Review conducted, the Reviewer will assess to provide a rating as follows: pass, pass with deficiencies, or fail.
- Reviewer will provide a Representation Letter that must be signed and returned back to the Reviewer.
- The reviewer will provide a Peer Review Report outlining the results of the Peer Review

- The administering entity's Report Acceptance Body (RAB) evaluates and issues a final determination
- If deficiencies are noted, the firm may need to:
 - Submit a Corrective Action Plan
 - Undergo monitoring or follow-up review
 - Complete additional continuing education

Step 8 : Maintain Compliance

- Firms must complete peer reviews every three years
- Any change in services (e.g., beginning to offer reviews or audits) must be updated in PRIMA
- Firms must retain documentation and maintain their system of quality control

Conclusion

Participating in peer review is not merely a regulatory obligation — it is an affirmation of a firm's commitment to professional excellence. In a landscape of increasing complexity and scrutiny, embracing the peer review process helps CPA firms remain resilient, reputable, and responsive to the needs of clients and stakeholders alike.

*Taking these steps will help ensure your firm is well-positioned for a successful peer review.



Step Into a
New Level of Possibility

PCBility

Every bold step takes me further.
Each move builds momentum.
With the strength of PCB behind me.
Where confidence meets possibility.
This is PCBility.



mypcbbank.com



BUY SELL AGREEMENT

비즈니스의 소유주는 사업의 핵심 직원 중 한 명으로서 그의 존재는 성공적인 사업운영에 절대적인 경우가 많다. 비즈니스는 이런 소유주의 예기치 못한 사망이나 장애로 인해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Family Side

대부분의 경영인에게 있어 사업은 자신과 가족에게 필요한 소득, 자본 자산, 즉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재정적 안정을 제공하는 주요 자원이다. 사회적으로는 사업의 가치가 곧 경영인 자신의 가치로 평가가 되는 경우도 있다. 사업가들은 자신의 부재로 인해 가족들에게 미칠 수 있는 경제적인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 필수적으로 준해해야 하는 것이 사업 승계 (Business Succession) 계획이다.

Business Side

비즈니스 소유주가 어린 경우 즉 주식회사 (Corporation) 혹은 동업회사 (Partnership) 형태의 업체들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다. 동업자 중 한명에게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동업자들은 어떤 준비가 필요 할까? 동업자들은 떠나간 동업자의 가족들이 요구할 수 있는 지속적인 수입과 혜택 또는 소유 지분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

BUY SELL AGREEMENT의 유용성

이렇게 사업주가 평생 애써 일궈온 사업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된 Buy Sell Agreement을 활용하는 사업 승계 전략은 필수적이다.

- 가족에게 현금 유동성이 제공된다.
- 사업체나 지분 매각이 보장된다.
- 사업을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파트너들과 직원들이 외부 간섭 없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 매입 가격과 지불 조건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 세무 목적에 맞는 사업 가치가 형성된다.
- 사업이전 (transfer) 자금 조달 방법이 명시된다.
- Credit 활용성이 개선된다.
- 이전 보다 더 좋은 은퇴 보장이 제공될 수 있다.

Inda Han
Senior Partner

lindahhan01@yahoo.com
National Life Group



BUY SELL AGREEMENT 의 주요 내용

Buy Sell Agreement 는 파트너 간의 법적 계약으로 반드시 변호사가 작성해야 하며 여기에 사업 승계 조건을 명시하고 파트너들은 약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AGREEMENT 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된다.

Triggering Event : 사망, 장애, 은퇴, 파산, 전문 면허 상실, 이혼 등, 소유권 판매를 발생시키는 사건.

Business Valuation : 사업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구축해야 한다.

The Purchaser : 사건 (Triggering Event) 발생 후 사업 지분을 매수할 파트너 (혹은 해당인)

Payment Requirements : 지불 방법 (i.e., lump sum or installment sale)

Funding : 지분 구매시 필요할 자금 조달/준비 방법

FOUR COMMON BUY SELL ARRANGEMENTS

Entity Purchase (As known as a stock redemption)

사업체가 퇴임하는 (혹은 사망한) 지분 소유자의 사업 지분을 매수한다. (법인의 경우: 주식 상환, 즉 stock redemption 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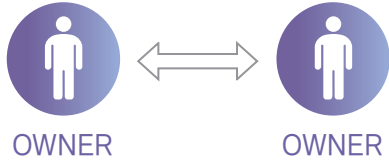
Entity

In an Entity buyout the business purchases the business interest from the selling owner.

Cross Purchase

공동 소유주 간의 계약이므로 본 사업체는 인수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 매수 발동 시점에 회사에 남아 있는 소유주는 퇴사하는 (혹은 사망한) 소유주의 사업 지분을 인수한다. 교차 매수를 위한 자금 조달 수단은 사업체 외부에 있으므로 해당 자금은 사업 채권자 (creditors) 에게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Entity Purchase 와 달리 Cross Purchase 경우엔 남은 소유주가 퇴사하는 소유주의 지분을 직접 매수했기 때문에 남은 소유주의 지분 기준, 즉 basis가 증가할 수 있다. Basis가 높으면 향후 사업 지분을 매각할 때 과세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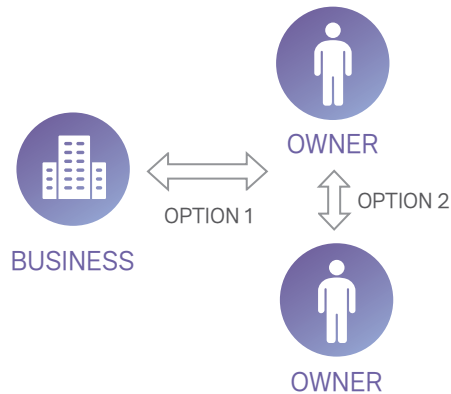


Cross Purchase

Using a Cross Purchase buyout, the co-owners purchase the business interest from the selling owner.

Wait and See Buy Sell

이것은 hybrid으로 위의 Entity Purchase (위의 1번) 과 Cross Purchase (위의 2번)을 혼합한 형태이다. 이 계약에는 일련의 매수 옵션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사업체가 퇴사하는 소유주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갖는다. 사업체가 지분 매수 옵션을 포기할 경우엔 다른 소유주들이 사업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옵션을 갖는다. 하지만 다른 소유주들이 매수를 거절할 경우엔 사업체가 매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다른 추가 옵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문서를 작성하는 변호사와 가장 실용적인 옵션 계획을 의논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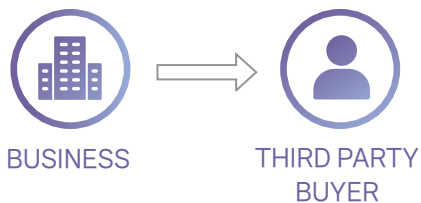
Wait and See

Wait and See combines at least two options.

The first is for the business to purchase the business interest. If the business doesn't or can't make the purchase, the co-owners will then have the purchase option.

One Way Buy Out

이 계약은 현재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제 3 자 또는 핵심 직원이 지분 매수자로 설정 될 경우 사용되는 계약이다. 이 계약에 따라 매수자는 triggering event 발생 시점에 소유주의 사업 지분을 매수할 법적 의무가 있다. 대부분 이런 일방적 계약은 한 사람이 100% 소유한 사업에 사용된다.



One-Way Agreement

A one-way agreement (also referred to as a unilateral buyout) is an agreement that is used when the buyer of the interest is a third party or key employee who doesn't currently have an existing ownership interest.

FUNDING THE AGREEMENT

Funding 에 대한 계획이 없는 계약은 오히려 재정적 압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파기 시킬 수도 있다. 다음과 같은 funding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Sinking Fund

매수자는 triggering event 전에 자금을 충분히 저축해야 한다. 이렇게 모아진 액수는 매수에 필요한 만큼 축적 이 되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매매가 사망이나 장애로 인해 발동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사건들은 예기치 않게 발생하기 때문에 저축 기금에 의존하면 자금 부족 계약으로 이어질 수 가 있다.

■ Cash/Surplus

현금 보유액이나 잉여금을 사용하여 구매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역시 자금 부족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저축된 기금과 마찬가지로, 구매자는 필요한 시점에 구매에 사용할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수 있으며 또는 보유된 현금을 사업 관련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방법 또한 자금 부족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

■ Loans

Triggering Event 가 발생하면 매수자가 은행이나 제 3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법이다. 대출은 실제 지출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 기간 동안 분할 지급되므로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필요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될지... 소유주/핵심 인물이 사망한 경우 매수자의 신용도에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이자율이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매수 가격뿐만 아니라 대출 이자까지 지불해야 하므로 매수의 전체 비용이 증가된다. 또 다른 우려 사항은 비즈니스 Balance Sheet에 새로운 부채가 추가되므로 그 부채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 Installment Sale

Loan 방식과 마찬가지로 Installment Sale 은 구매자가 일정 기간 동안 매매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Installment Sale에도 이자가 포함되어 매수 전체 비용이 증가한다. 또한, 사망하거나 떠난 소유주의 가족은 자금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생존하는 소유주가 만기일에 할부금을 지불할 수 있고, 또 지불할 의향이 있기 만을 바라야 한다.

■ Life Insurance

생명 보험은 많은 사업주들이 선호하는 funding 방법이다. 사망 보험금은 사업주 사망 시 지급되며, 보험 계약의 현금 가치는 사망 이외의 특별한 사유 (i.e., 육체적이나 지적 장애) 발생 시에 지급이 되기도 한다. 보험료는 납부해야 하지만, 금액은 안정적이고 예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생명 보험을 funding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Buy Sell Agreement에는 해당 보험 policy또는 생명 보험 전반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보험 가입이 가능한 파트너들 모두 보험에 가입하고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생명 보험을 사용하는 경우, 보험은 구매 의무가 있는 파트너나 사업체가 소유한다.

- Entity Purchase의 경우, 사업체가 보험 policy의 소유자이자 수익자 (beneficiary) 가 된다.
- Cross Purchase의 경우, 공동 소유자는 서로를 보험에 가입시키고 서로의 보험 policy의 소유자이자 수익자가 된다.
- Wait and See Buy Sell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은 공동 소유주가 소유하는 것이 권장되며, Cross Purchase계약처럼 교차 소유하는 것이 좋다.
- One Way Buy Out의 경우, 매수 당사자가 보험 계약자여야 한다.

Buy Sell Agreement 의 형태와 내용을 결정하는 준비 과정에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므로 CPA, 변호사, 재무 설계사 또는 보험 설계사와의 상담이 포함되어야 한다.

트러스트의 세금 보고,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Yujin Park
ESQ



Hayan Park
ESQ

info@hanparklaw.com
Han & Park Law Group, Inc

트러스트는 크게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 (Revocable Trust)와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 (Irrevocable Trust)로 나눌 수 있다.

취소가 가능한 트러스트는 위탁자(Trustor)가 생전에 자산에 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세법상 별도의 과세 주체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트러스트 자체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모든 소득은 위탁자의 개인 세금 신고서에 포함된다. 그러나 위탁자가 사망하면 트러스트 자산은 위탁자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 반면, 생전에 Irrevocable Trust를 통해 이전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속세 보고 방식은 위탁자의 혼인 여부, 시민권 또는 영주권 여부, 사망 당시 거주 주, 그리고 트러스트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캘리포니아와 네바다를 포함한 9개 주에서는 부부 공동재산제도(Community Property System)를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에서는 결혼 이후 취득한 모든 재산이 각 배우자의 기여 형태와 무관하게 공동 소유로 간주된다. 그 결과, 캘리포니아에서는 부부가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를 설정할 때 주로 하나의 공동 트러스트를 만들며, 두 배우자가 공동 위탁자가 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김철수·김영희 부부가 “The Kim Family Trust”를 만들었다고 가정하자. 김철수가 먼저 사망하면, 그의 몫에 대한 상속 절차가 개시된다. 이때 취소 가능한 공동 트러스트의 유형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상속세 결과가 달라진다.

1

가장 단순한 형태는 흔히 “Probate Avoidance Trust”라고 부르는 타입의 트러스트이다. 사망한 배우자의 지분이 그대로 생존 배우자에게 이전되며, 생존 배우자가 시민권자라면 무제한 부부공제 (Unlimited Marital Deduction)를 통해 상속세를 즉시 피할 수 있다. 또한 사망 배우자의 상속세 면제액(Estate Tax Exemption)은 DSUE(Deceased Spouse Unused Exemption)를 통해 생존 배우자 사망 시까지 이월할 수 있다. 다만, 생존 배우자 사망 시 전체 자산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액 자산가에게는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철수가 2025년에 사망했다면 당시 적용되는 상속세 면제액은 \$1,399만 달러(USD 13.99 Million)이다. 김철수의 상속세 신고 시 DSUE(Deceased Spouse Unused Exemption)를 신청하면, 김영희가 사망할 때 김영희 본인의 상속세 면제액에 더해, 김철수 사망 시 사용하지 않고 ‘이월’해 둔 면제액까지 함께 적용할 수 있다.

가정상, 김영희 사망 시점의 총 재산이 \$5,000만 달러이고 당시 상속세 면제액이 \$1,500만 달러, 최고 상속세율이 40%라고 하자. 이 경우 상속세 과세 대상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총재산	\$50,000,000
- 김영희의 상속세 면제액	\$15,000,000
- DSUE를 통해 이월한 김철수의 면제액	\$13,990,000
= 과세 대상 금액	\$21,010,000

따라서 김영희의 상속인은 \$21,010,000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한다.

2

상속세 절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주 활용되는 트러스트 타입은 AB Trust다. 사망 시 공동 트러스트를 생존 배우자 몫(A Trust, “Survivor’s Trust”)과 사망 배우자 몫(B Trust, “Decedent’s Trust”, “Exemption Trust” 혹은 “Bypass Trust”)으로 나누어, B Trust에 사망 배우자의 면제액만큼 자산을 배치하고 상속세 보고를 한다. 즉, 사망한 배우자 몫의 재산 총액을 국세청(IRS)에 보고하고, 그중 어떤 재산을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면제’받을 것인지 Form 706을 통해 명확히 지정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B Trust에 있는 자산은 생존 배우자 사망 시에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김철수와 김영희가 설정한 The Kim Family Trust의 총 자산이 김철수 사망 시점에 \$2,600만 달러라면, 이 중 김영희의 몫 \$1,300만 달러는 “The Kim Family Trust - Survivor’s Trust”로, 김철수의 몫 \$1,300만 달러는 “The Kim Family Trust - Decedent’s Trust”로 각각 재구성된다. 김철수의 상속세 신고 시, Decedent’s Trust에 속한 \$1,300만 달러 전액이 상속세 면제를 받았다면, 해당 재산은 김영희 사망 시에도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처럼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세 면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Decedent’s Trust 또는 B Trust에 속한 재산에 대해서는 생존 배우자의 재산권 행사가 일정 부분 제한된다

Probate Avoidance Trust의 경우, 생존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몫을 그대로 상속받아 전체 재산에 대한 권리를 전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반면, AB Trust에서는 일반적으로 생존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몫에서 발생하는 “수익(income)”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원금(principal)”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예를 들어, 김영희는 The Kim Family Trust 전체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전부 활용할 수 있지만, 김철수 몫인 Decedent's Trust에 포함된 1,300만 달러 원금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앞서 설명한 동일한 가정에 적용하면, 김영희 사망 시점에 총 5,000만 달러 중 절반인 2,500만 달러만이 김영희의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는 김철수 사망 시 이미 전체 재산의 절반에 대해 상속세 면제를 받았고, 그 면제 재산이 이후 증가하더라도 여전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영희의 상속자들은 1,000만 달러(2,500만 달러 - 김영희 사망 시 상속세 면제액 1,500만 달러)에 대해 40%의 상속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처럼 AB Trust는 Probate Avoidance Trust와 달리, 구조적으로 상속세 절감 효과를 제공한다.

3

영주권자 생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ABC Trust 구조가 쓰이기도 한다. 설명을 위해, 김영희가 영주권자이고 김철수 사망 시 전체 재산이 4,000만 달러라고 가정해 보자. 김철수가 올해 사망했다면, 그 재산의 절반인 2,000만 달러가 김철수 몫으로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된다. 그러나 올해의 상속세 면제액(13.99백만 달러)을 초과하는 금액은 601만 달러로, 이 부분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

김영희는 이 601만 달러에 대해 즉시 상속세를 납부하거나, 상속세 납부를 본인 사망 이후로 “이연(연기)”할 수 있다. 이때 활용되는 방식이, 면제액을 초과한 해당 금액을 “C” Trust에 편입하는 것이다.

만약 김영희가 시민권자라면, “C” Trust에 이 금액을 넣고 부부 무제한 공제(Marital Deduction)를 기반으로 한 QTIP(Qualified Terminable Interest Property) Election을 통해 상속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반면, 영주권자라면 QDOT(Qualified Domestic Trust) Election을 해야 하며, QDOT는 미국 법인 또는 시민권자 Trustee 요건, 보증금(Bond) 요건 등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결국, Revocable Trust라고 해서 모두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비용만 보고 저렴하게 트러스트를 만들 경우, 세금 구조·배우자 신분·거주지 법률·자산 종류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생전에 의도했던 절세 효과나 상속 계획이 무너질 수 있다.

특히 미국 내 부부 공동재산제 여부, 시민권·영주권 구분, AB Trust·ABC Trust와 같은 구조의 차이, QTIP·QDOT과 같은 세법상의 특수 선정을 반영하지 않은 트러스트는 상속세 폭탄이나 불필요한 소송, 복잡한 분쟁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트러스트는 ‘형식상 존재하는 문서’가 아니라, 가족의 세금·법률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맞춤형 설계가 필수다. 경험 있는 상속·세무 전문 변호사와 함께 세밀하게 설계된 트러스트야말로, 단순한 재산 이전 수단을 넘어 세대 간 자산 보호와 절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핵심 도구가 된다.



HAN & PARK
LAW GROUP, INC.

“Han & Park Law Group은
미국 상속·증여 전문 변호사들이
상속컨설팅을 비롯하여
상속분쟁 재판에 이르기까지
고객들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변호사
(공동 대표 변호사)

Emmanuel Han 변호사
(공동 대표 변호사)

박하얀 변호사
(서울 사무소 대표 변호사)

상속·증여

- 생전신탁 (Living Trust) 설립 및 변경
- 특수 신탁 설립
(생명보험, 자선, 장애인 특별 신탁 등)
- 유언장 및 위임장 작성
- 미시민권자/영주권자의
한국 역이민시 상속·증여 플래닝
- 한국과 미국 간 자산 이전 시
맞춤 상속·증여 플래닝

상속 집행 및 상속 재판

- 트러스트 사후 관리 및 상속 자산 분배
(Trust Administration)
- 상속법원 절차 및 트러스트 관련 분쟁 해결
(Probate & Trust Litigation)
- 성년 후견인 및 미성년 후견인 설정
(Conservatorship & Guardianship)

법인 설립

- 법인, 유한법인, 지·상사, 합자회사 설립
- 비영리단체, 사단법인 설립
- 사업매매 계약서 작성

Contact Information

HEAD QUARTERS (OC Office)

6281 Beach Blvd, Ste 302, Buena Park, CA 90621
(714) 523 9010
info@hanparklaw.com

LA Office

3580 Wilshire Blvd, Ste 1750, Los Angeles, CA 90010
(213) 380 9010
info@hanparklaw.com

SEOUL Office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130, 적선현대빌딩 502호
02-733-7111
infoseoul@hanparklaw.com

www.hanparklaw.com





미국 상속세 절세 기법과 그 활용

Estate Freezing, Estate Shrinking,
Cross-Border Planning



Daniel Yoon
ESQ

daniel@summitprolaw.com
Summit Pro law, PLLC

2025년 7월 OBBBA의 통과로 연방 소득세 뿐만 아니라 이른바 Transfer Tax으로 불리는 상속, 증여세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연방정부의 Unified Tax Credit이 2026년부터 1,500만 달러(물가연동)로 상승되고, 부부의 상속증여세 공제금액을 합산(DSUE)해서 활용할 수 있는 portability 조항 또한 유지되어서 고액자산가 (HNW)들의 세금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하게 합니다.

그러나 상속 및 사망세를 부과하는 주가 10여개에 달하며, 연방 면세한도를 넘는 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한인 고액자산가가 적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면, 세금 전문가들의 문제해결 능력은 여전히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상당수의 한국인들이 세법상의 유리함과 절세전략의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국으로 이주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들 자산가들은 미국의 높은 상속증여세 면세한도와 미국에서 오랫동안 활용되어온 다양한 절세 기법을 통해 자손들에게 더 많은 자산을 물려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이유로 다양한 trust와 그 활용기법, 특수한 법인을 통한 일반적인 상속증여세 절세전략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에게 중요한 직업적 소명이라고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상속증여세의 합법적인 절세를 위해 다양한 도구와 기법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같은 절세기법 중 이른바 Estate Freezing (자산가치고정)과 Estate Shrinking(과세표준축소)로 불리는 대표적인 절세 전략 중 몇 가지를 소개하고, 최근 가장 큰 관심인 한국-미국 간의 국제 상속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I. Estate Freezing Strategies

1. GRAT (Grantor Retained Annuity Tru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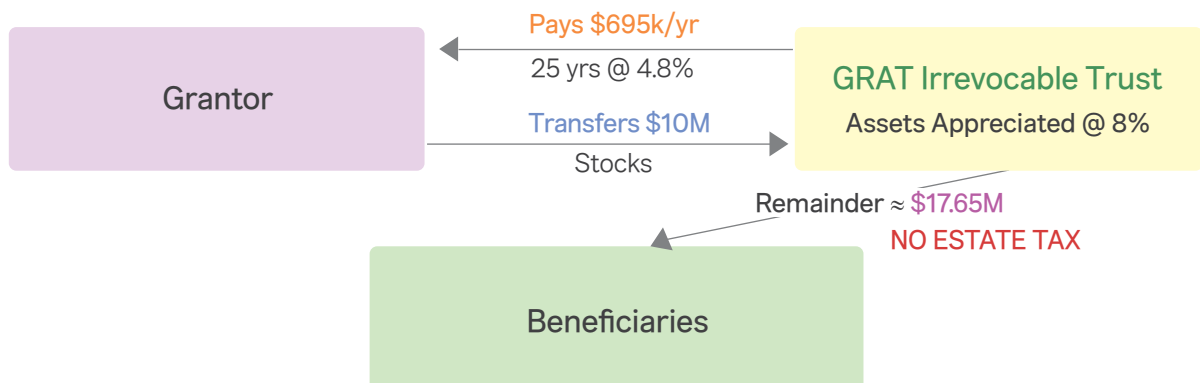
GRAT은 상속세·증여세 절세를 위해 활용되는 신탁(irrevocable trust trust)의 한 종류입니다. GRAT의 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Grantor (신탁자)가 GRAT (irrevocable trust) 를 만듭니다.
- (2) Grantor는 본인 명의의 증권 등 자산을 Trust 명의로 증여합니다.
- (3) Grantor는 Trust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매년 정해진 금액(연금, annuity)을 돌려받는 구조로 신탁을 설정합니다.
- (4) Grantor는 자산을 GRAT로 증여했지만, 이전된 자산만큼 연금으로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증여했기 때문에 증여 금액은 \$0으로 간주됩니다.
- (5) Grantor가 연금을 받는 기간이 끝난 뒤 남은 신탁 재산은 자녀 등 수익자(beneficiaries) 상속, 증여세 없이 이전됩니다.
- (6) Trust 에 남아 있는 재산은 Grantor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 증여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GRAT의 핵심 원리는 Grantor가 돌려받을 연금(annuity)의 현재 가치를, 증여한 자산의 가치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만 증여로 간주하기 때문에 증여된 자산 가치만큼 연금으로 돌려받을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금으로 돌려 받을 금액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 (IRC Section 7520 rate) 보다 신탁 자산이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면, 연금 지급 이후에도 GRAT 내부에 자산이 남게 됩니다. 이 초과분은 과세 없이 수익자에게 이전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1,000만 달러 상당 주식을 GRAT에 넣은 후 매년 일정 금액을 4.8%의 이자율 (IRS Rate) 로 25년간 수령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A씨는 매년 \$695,369를 연금으로 받게 되고, 25년 동안 지급 받은 연금의 총액은 \$17,384,226에 달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이 주식의 연 수익률이 8%였다고 가정한다면 25년이 지난 시점에 GRAT에는 여전히 약 1,765만 달러의 잔여자산이 남게 됩니다. 연금으로 지급된 이자율 보다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 금액은 irrevocable trust 소유의 자산이기 때문에 상속,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으며, 만약 상속 또는 증여가 이뤄진다면 총액 1,765만 달러에 대해 상속증여세 없이 자녀들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GRANTOR RETAINED ANNUITY TRUST



2. IDGT (Intentionally Defective Grantor Trust)

IDGT는 상속증여세 절세에 활용되는 특수한 Irrevocable Trust의 한 형태입니다.

이름 그대로 “일부러 (intentionally) 세법상 결함(defective)을 넣은” 신탁 구조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결함’이란 불리한 의미가 아니라, 증여세·상속세 측면에서는 독립된 과세 주체로 인정되면서도, 소득세 측면에서는 여전히 Grantor본인에게 귀속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했다는 뜻입니다.

IDGT의 Grantor Trust로서의 속성은 IRC Section 671-679를 근거로 합니다.

IDGT의 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Grantor가 IDGT (Irrevocable Trust) 를 설정합니다.
- (2) Grantor는 자산을 IDGT로 증여하거나, 매각(sale)하고 그 대가로 어음(promissory note)을 받습니다.
- (3) 신탁으로 이전된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여전히 Grantor에게 귀속됩니다.(Grantor Trust Rule)
- (4) 신탁이 보유한 자산은 소득세 부담 없이 계속 불어납니다.
- (5) 반대로 상속증여세 관점에서는 신탁이 독립된 과세주체로 간주되므로, Grantor가 사망하거나 신탁 만기 시점에 남은 자산은 상속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6) Grantor는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원리금만 회수하고, 신탁 내 초과 성과분은 상속세·증여세 없이 수익자(beneficiaries)에게 이전됩니다.

IDGT의 핵심 원리는 세법상 과세주체를 이원화하는 데 있습니다. 즉, 소득세는 신탁자가 부담하지만, 상속세·증여세는 신탁에서 차단되는 구조입니다. 신탁 내부 자산은 소득세 부담 없이 복리로 성장하게 되고, 신탁자가 부담한 소득세 역시 결과적으로 수익자에게 “추가 증여”와 같은 효과를 주게 됩니다. 또한 grantor trust의 자산이 소득세법상으로는 여전히 grantor의 소유인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capital gain이 큰 규모로 적립되어 있는 자산을 신탁에게 매각한다고 해도 capital gain tax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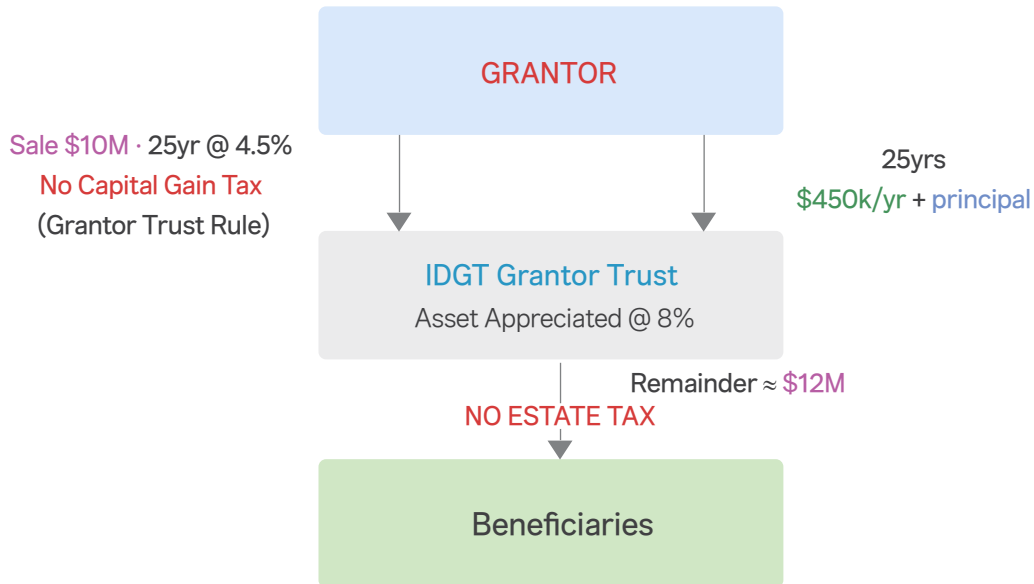
예를 들어, B씨가 \$10,000,000 상당의 부동산을 IDGT에 매각하고, Trust로부터 25년 만기 어음을 받아 매년 일정 금액을 상환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매각대금의 이자율은 IRS가 정한 이자율(Applicable Federal Rate)에 따라 연 4.5%라고 하겠습니다. B씨는 매년 약 \$450,000의 이자를 받고 원금을 점진적으로 회수합니다. 한편, IDGT 내에 있는 부동산이 주식인 실제로는 연 8%로 증식된다면, 25년 후 신탁 내부에는 여전히 약 \$12M 이상의 순자산이 남게 됩니다. 이 잔여자산은 Grantor 개인 소유가 아니므로 상속세·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며, 수익자인 자녀에게 무과세로 이전됩니다.

결과적으로 IDGT는

- ➡ 신탁으로 매각시 양도소득세 없음 → capital gain tax 피함 → 상속시 step-up 활용
- ➡ 소득세는 신탁자가 부담 → 신탁 자산은 순수익이 극대화됨
- ➡ 상속세·증여세는 차단 → 자녀는 순자산을 무세로 이전받음

이라는 이중 구조를 통해 세대 간 자산이전에서 매우 강력한 절세 효과를 발휘하는 도구라 할 수 있습니다.

SALE TO IDGT



3. SCIN (Self-Cancelling Installment Note) / 사적 연금 (Private Annuity)

SCIN과 사적 연금은 모두 Grantor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장래 일정 기간 동안 지급받는 거래형 구조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집니다. 이들은 기대여명(life expectancy)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절세 효과를 가집니다.

A. SCIN(Self-Cancelling Installment Note)의 특징

- (1) 부모가 보유한 자산을 자녀에게 분할상환 어음(installment note) 형태로 매각합니다.
- (2) 부모가 사망하면, 아직 상환되지 않은 원리금 상환 의무는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 (3) 부모가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할 경우, 미상환 금액은 더 이상 받을 수 없지만, 자산은 이미 자녀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4) SCIN은 상환 의무의 조기 소멸 위험으로 인해 부모가 불리할 수 있으므로, 거래시 이자율을 더 높게 책정하거나 매매가액에 할증(premium)을 붙이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C씨가 \$10,000,000 상당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대여명 20년 기준의 SCIN을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IRS 생명표에 따라 매년 상환액이 \$800,000으로 산정된다면, C씨는 생존하는 동안 매년 \$800,000을 회수합니다. 만약 C씨가 12년 만에 사망한다면, 남은 8년치 상환의무는 사라지고, 자녀는 이미 취득한 부동산을 상속세 과세 없이 보유하게 됩니다.



B. 사적 연금(Private Annuity)의 특징

- (1) 부모는 자산을 자녀(또는 신탁)에 완전히 양도하고, 그 대가로 자녀는 부모가 생존하는 동안 매년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합니다.
- (2) 지급 기간은 정해진 연수가 아니라, 부모의 실제 기대수명기간으로 정합니다.
- (3) 부모가 오래 살면 더 많은 총액을 회수하게 되어 증여 효과는 줄어듭니다.
- (4) 부모가 일찍 사망하면 연금 지급은 종료되고, 자산은 이미 자녀 명의이므로 상속세 과세 없이 이전됩니다.
- (5) 부모가 기대여명보다 짧게 생존할 경우, 자녀가 낮은 과세부담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장수할 경우, 연금 지급액이 커져서 절세 효과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D씨가 \$1,000만 달러의 자산을 사적 연금 구조로 양도하여 매년 \$850,000을 생존하는 동안 수령하도록 설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D씨가 기대여명보다 짧게 생존하면, 실제 지급된 총액은 낮아지고, 자산은 자녀에게 사실상 낮은 가치로 이전된 효과가 나타납니다.

II. Estate Shrinking Strategies

1. FLP/FLLC (Family Limited Partnership / Family Limited Liability Company)

Family Limited Partnership (가족 유한합자회사) 와 Family Limited Liability Company (가족 유한책임 회사)는 가족 단위로 자산(부동산, 증권, 사업체 지분 등)을 집합적으로 보유·관리하기 위해 활용되는 법인 형태입니다. 상속·증여세 절세, 자산 보호, 경영권 통제의 세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 고액 자산가들의 대표적 플래닝 도구로 활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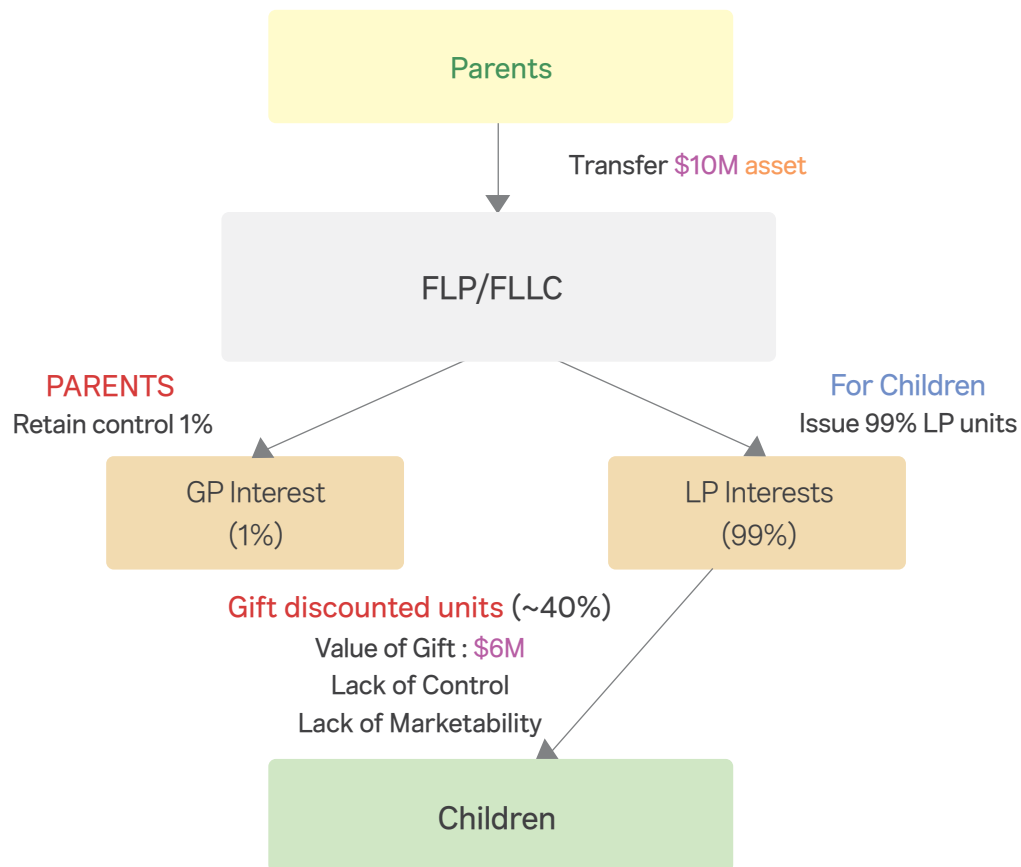
FLP/FLLC 전략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부모는 부동산, 유가증권, 사업체 지분 등 주요 자산을 FLP 또는 FLLC로 이전합니다
- (2) 부모는 일반적으로 지배지분(General Partner 또는 Managing Member) 을 보유하여 경영권·의사결정권을 유지합니다. 지배지분은 전체 지분의 1% 미만으로 정합니다.
- (3) 자녀들은 제한지분(Limited Partner 또는 Non-Managing Member) 을 보유하며, 경제적 권리는 있지만 경영참여 권한은 없습니다. 제한지분은 99% 이상이 됩니다.
- (4) 제한지분은 자유롭게 매각하기 어렵고 경영권이 없으므로, 시장에서의 평가가액이 낮게 책정됩니다. 평가할인의 근거로 소수지분할인(Minority Discount), 비유동성할인(Lack of Marketability Discount)이 활용됩니다.
- (5) 부모가 제한지분을 증여하거나 매각할 경우, 세법상 평가액은 실제 가치보다 20~40%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증여세·상속세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씨가 1,000만 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FLP에 이전하고, 자신은 일반파트너 지분 (지배지분) 1%를, 자녀들은 제한파트너 지분 99%를 보유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한파트너 지분 99%의 공정 가치는 1%의 지배지분과 같은 가치로 평가 될 수 없으므로, 소수지분·비유동성 할인 적용 후 약 600만 달러로 평가됩니다. D씨가 자녀에게 이 지분을 증여할 경우, 세법상 600만 달러만 증여한 것으로 계산 되어, 약 400만 달러 상당의 세금 과세대상 자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IRS는 평가할인 적용을 엄격히 검토하므로, 반드시 정식 감정평가(appraisal)와 실질적인 법인의 운영이 필요합니다.

Estate Shrinking

FLP/FLLC



2. SLAT (Spousal Lifetime Access Trust)

SLAT은 배우자 접근성을 유지하면서도 자산을 과세권 밖으로 이전할 수 있는 신탁 (irrevocable trust) 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SLAT을 설정하고 자산을 증여하면, 해당 자산은 원칙적으로 남편의 estate 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그러나 수익자로 아내를 지정하면, 가정 단위에서는 여전히 생활자금에 접근 할 수 있습니다. SLAT의 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Grantor가 SLAT을 설정하고 자산을 신탁에 이전합니다.
- (2) Beneficiary는 배우자와 자녀들이며, 배우자는 필요할 경우 신탁으로부터 분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부부 사이에서는 자산 접근성이 유지됩니다
- (3) 일반적으로 grantor trust로 설계되며, 따라서 소득세는 Grantor가 부담합니다.
- (4) Grantor의 estate의 크기는 소득세 부담으로 점차 줄어들고(shrinking), 신탁 내부 자산은 세금 부담 없이 순수하게 불어나게 됩니다.

SLAT을 활용할 때에는 상호신탁 금지 원칙(Reciprocal Trust Doctrine)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SLAT을 설정하면 IRS는 사실상 서로에게 접근성을 보장한 것으로 간주하여 신탁을 무효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기, 구조, 권한을 서로 다르게 설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워싱턴 등 커뮤니티 재산 주에서는 자금 출처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부부의 공동재산 (community property)에서 신탁에 출연할 경우, IRS가 전체 증여를 한쪽 배우자에게 귀속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SLAT은 단순히 자산 성장을 estate 밖으로 고정하는 estate freezing 수준을 넘어서, 실제로 과세대상 estate 자체를 줄이는 estate shrinking 효과를 갖습니다. 신탁 설정을 통해 Grantor의 estate에서 자산이 빠져나가고, Grantor가 신탁의 소득세까지 계속 부담함으로써 estate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축소됩니다. 이러한 이중적 shrinking 메커니즘 덕분에 SLAT은 부부 단위 자산 이전을 계획할 때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III. US-Korea Cross-Border Transfer Tax Planning

한-미 양국에 걸친 '국제 가족'이 보편화되면서,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고려한 상속·증여 플래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적 자산 이전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1) 자산의 위치(situs rule), (2) 거주자 여부(residency), (3) 이에 따른 상속·증여세 과세 범위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모두 세계적으로 강력한 상속·증여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세 가지 요소의 교차점에서 과세 범위가 결정됩니다.

1. Situs Rule — 과세대상 자산의 위치

미국 세법은 비거주 외국인(NRA)이라도 미국 내 자산을 보유하면 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합니다.

- (1) U.S. situs 자산 : 미국 내 부동산, 미국 법인 주식, 미국 내 사업체 지분.
- (2) 비과세 또는 예외 자산 : 미국 은행예금(일부), 미 재무부 채권, 특정 보험계약 등.

예를 들어, 한국 부모가 사망하면서 뉴욕 콘도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미국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미국 시민권자가 서울에 아파트를 보유했다면, 전 세계 과세 원칙에 따라 한국 자산 역시 미국 상속세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미국 세법상NRA 보유 자산의 Situs Rule은 자산의 형태와 성격에 따라 미국에서 과세 대상이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2. 거주자 판정 — 과세범위의 결정권

거주자 여부는 상속·증여세 적용 범위를 좌우합니다.

- (1) 미국 거주자 :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domicile 요건 충족자는 전 세계 자산이 과세 대상입니다
- (2) 비거주 외국인(NRA) : 미국 내 situs 자산만 과세합니다.
단, 상속세 면제액이 \$60,000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부담이 큼니다.
- (3) 한국 거주자 : 상속·증여세는 전 세계 자산에 과세됩니다.
- (4) 한국 비거주자 : 한국 내 소재 자산만 과세 합니다.

결과적으로 동일인이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모두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미 조세조약의 tie-breaker 규정(거주지·상시적 거소·중심적 이해관계)을 통해 최종 과세권이 조정됩니다.

3. 상속·증여세 문제와 Double Exposure

- (1) NRA 부모 → 미국 자녀 : 미국 내 부동산을 증여하면 미국에서 과세됩니다. NRA에게는 일반적인 Transfer Tax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가 요망됩니다. 또한, 한국 세법상 거주자라면 한국 증여세도 과세되어 이중과세 위험 발생합니다.
- (2) 미국 시민권자 → 한국 자산 : 한국 내 자산을 상속·증여받을 경우, 한국 세법에 따라 과세되고 동시에 미국 전 세계 과세 원칙에 따라 또다시 과세됩니다.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나 조세조약 적용이 필요합니다.
- (3) NRA 절세 전략 : NRA가 미국 situs 자산을 직접 보유하는 대신, FLP/LLC, 해외법인, 또는 신탁을 활용하여 구조화하면 미국 과세를 상당 부분 회피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한·미 간 자산 이전에서 situs rule과 거주자 판정은 과세범위를 결정하는 양대 축입니다. 동일한 자산이라도 소유자의 거주자 신분, 국적, 이민 상태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며, 양국에서 동시에 과세될 가능성도 큼니다. 따라서 자산의 물리적 위치, 거주자 판정 기준, 상속·증여세 과세 범위, 조세조약의 적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효과적인 플래닝이 가능합니다. 이를 간과할 경우 불필요한 이중과세 부담이 발생하고, 오히려 가족 자산의 순가치가 크게 잠식될 수 있습니다.



* Disclaimer

본 원고는 교육 및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PART
III

재혼해서 미국 시민권 딴 아버지, 한국 사는 딸 상속은 어떻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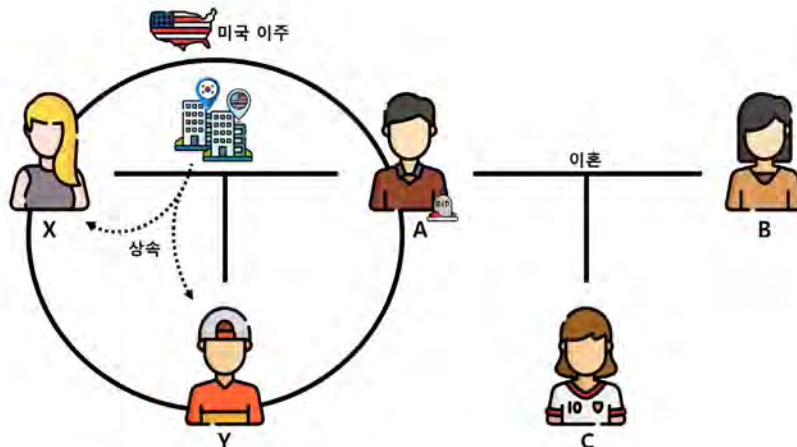


김 상 훈
대표변호사

sanghoon.kim@trinitylegal.co.kr
법무법인 트리니티



사업가 A씨는 B와 혼인하여 딸 C를 두었습니다. A씨는 무역업으로 큰 재산을 모았는데, 사업상 알게 된 이혼녀 X와 내연관계를 맺어 아들 Y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 후 A는 B와 이혼하고 X와 재혼한 후 X, Y를 데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이주하여 살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A씨는 미국에서도 큰 돈을 벌어서 LA에 상가 건물을 소유하기까지 하였습니다. A씨는 2020년 2월경 사망하였는데, 사망하기 1년 전에 자신이 소유한 모든 재산을 재혼한 아내인 X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A씨는 한국과 미국 양쪽에 상가 건물을 상속재산으로 남겼습니다. 한국에 남겨진 A씨의 딸 C는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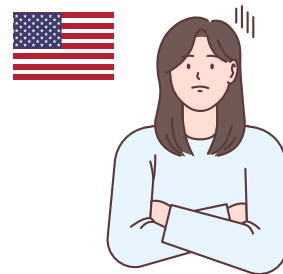


태생은 한국인이지만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한국에 부동산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미국 시민권자가 사망하면 미국법과 한국법 중 어느 나라 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질까요? 이것을 준거법(governing law)의 문제라고 합니다. 미국의 상속법과 한국의 상속법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준거법이 어디냐의 문제는 상속인들 간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예컨대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유류분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반면 한국에는 유류분제도가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일반적으로 부모를 의미합니다)의 증여나 유증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라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지분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에 인정되는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2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어떤 상속인에게 생전 증여나 유증을 하더라도 그러한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 상속분의 1/2을 반환 받을 수가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따라서 사망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자녀 중 한 사람에게 모두 유증한다는 유언을 남겼다면,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 입장에서는 한국법이 적용되어야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국제사법에 따르면 상속의 준거법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국제사법 제77조). 즉 한국 국적자가 사망하면 한국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고, 미국 시민권자가 사망하면 미국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면서도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서 이중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한국법이 본국법이 되어 한국법이 적용됩니다(국제사법 제16조). 따라서 만약 이 사건에서 A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면서도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C는 X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A씨가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A씨의 본국법인 미국법이 준거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에 그 외국의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어야 할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야 합니다(국제사법 제9조 제1항). 이것을 어려운 법률용어로 ‘반정’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국제사법의 일반원칙에 해당하는 Restatement(second) of Conflict of Laws에 따르면, 유언이 없는 부동산 상속에 관하여는 토지의 소재지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 (§236), 유언에 의한 부동산의 처분도 토지의 소재지 법이 적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239). 리스테이트먼트는 주법이 아니라 미국법률가협회가 발행하는 모델법전이라서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매우 강한 권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각 주에서도 리스테이트먼트에 기초하여 주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인 A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에 부동산을 남긴 채 사망한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해서는 부동산 소재지인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C는 한국법에 따라 X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C는 어느 나라 법원에다가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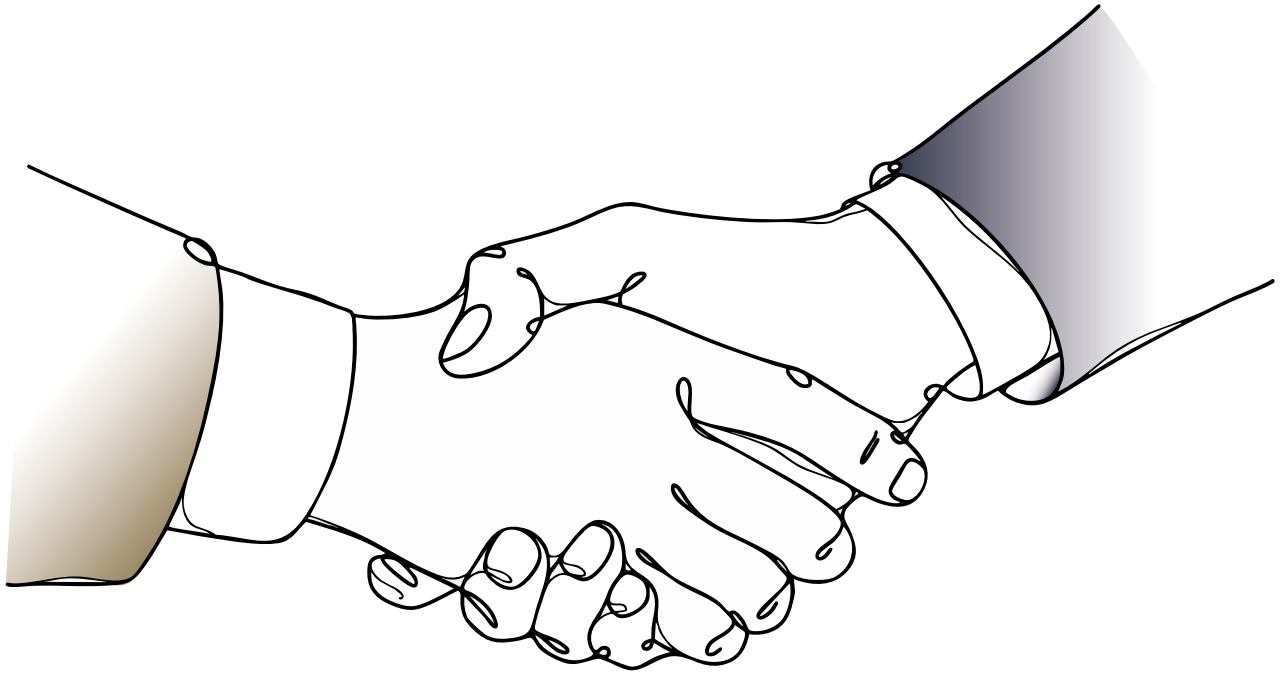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집니다(국제사법 제2조). 이 사건의 당사자 C는 한국에 살고 있고, 분쟁의 대상인 상가 건물도 한국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준거법과 구별되는 국제재판관할의 문제입니다.

준거법은 위에서 본 것처럼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 것 이냐의 문제이고, 국제재판관할은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것 이냐의 문제입니다. 국제재판관할이 한국에 있어서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하면서도 준거법은 미국법이어서 미국법에 따라 판결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금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가 사망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미국 재산까지 한국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그 사람의 미국 내 재산 뿐 아니라 전세계 재산에 대해 미국 국세청(IRS)에도 보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2024년 기준 부모 한 명당 1360만불까지 상속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A씨의 상속재산 규모가 이 범위를 넘지 않는다면 미국에서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TRINITY LEGAL



리스크에는 전략을,
인생에는 해답을 드리는
가장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트리니티는
신뢰로 시작해, 해결로 완성합니다.

TRINITY
LEGAL

법무법인 트리니티

(우) 06167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96길 19 4F (삼성동, 청림빌딩)
Tel. 02-584-7007 E-mail. info@trinitylegal.co.kr www.trinitylegal.co.kr

미국 거주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 상속절차 가이드



조 옹 규

구성원 변호사, 상속설계본부장

woongkyu.cho@barunlaw.com

법무법인 (유한) 바른



1. 대한민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상속에 관한 법률은 피상속인의 국적에 따른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가족이 사망하면, 상속재산이 국내의 어디에 있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상속절차가 진행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상속 절차를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한정된 시간 안에 법률문제를 검토하고 대응해야 한다. 아래에서는 대한민국법에 따라 상속이 진행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을 살펴본다.

2. 사망신고와 상속재산 확인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망신고 전까지는 제3자가 고인의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재산 유출 위험이 있다.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피상속인 명의의 통신, 신용카드 등이 중단되고 법적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사망신고 후에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이 보유한 금융자산, 보험,

연금, 부동산,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재외동포로서 대한민국의 공동인증서가 없으면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국내 대리인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특히 생명보험금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수령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 유언·신탁 등 상속계획 확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이나 신탁을 준비했다면, 재산은 그 계획에 따라 우선 분배되고 나머지가 있을 경우에만 상속인에게 분배된다. 따라서 유효한 유언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따른 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유언장의 종류(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등)와 유언집행자 지정 여부에 따라 절차와 소요 시간이 달라진다. 한편, 상속인이 유언장을 위조·변조·파기·은닉하면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상속권을 상실하게 된다. 대한민국에서도 Living Trust(유언대용신탁)가 설정될 수 있으므로, 신탁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와 수익권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4. 상속 승인·포기·한정승인 결정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 ▶ 단순승인 : 상속재산·상속채무 모두 승계
- ▶ 상속포기 : 상속재산·상속채무 모두 승계하지 않음
- ▶ 한정승인 :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 부담

채무가 많을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면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 기한을 넘기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한다. 다만, 3개월이 지나더라도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5. 상속재산분할 절차

상속계획이 없거나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재산은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해야 한다.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인정되고, 한 명이라도 누락되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상속인 중 행방불명자가 있으면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해 절차에 포함시켜야 하며, 사망한 상속인의 경우 그 상속인을 대신하는 대습상속인이 참여한다. 상속재산분할협약에 따라 재산을 원만히 이전하기 위해서는 단순 구두 합의만으로는 부족하고, 협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없는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영사의 인증을 받고, 주소를 증명할 서면 등을 준비해야 한다).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 법원은 남겨진 재산과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해 법정상속분을 계산하고 부족분을 상속재산에서 분할한다.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식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기여분 청구를 통해 반영할 수 있다.

6. 상속재산 수령

상속재산을 수령하려면 재산 이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서 및 검인조서로(다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검인조서가 필요하지 않다),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문으로 상속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종국적으로 이전할 수 있다. 금융자산의 경우 일부 금융기관은 유언이 있더라도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요구하므로, 신속한 인출을 위해 사전에 동의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7. 상속세 신고 및 조사 대응

피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중 비거주자가 있으면 9개월)에 상속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배우자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 각종 공제를 빠뜨리지 않아야 하며, 누락 시 추후 구제가 어렵다(다만, 위와 같은 공제 혜택은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거주자일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비거주자인 경우 공제가 축소된다). 신고 후에는 재산 규모에 따라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상속세 조사가 진행된다.

8. 상속절차의 마무리

대한민국의 상속절차는 복잡하고 기한이 엄격하여, 고인을 잃은 직후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 특히 해외 거주 상속인의 경우 절차 진행이 쉽지 않다. 이럴 때는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스톱 상속 서비스를 이용하면, 법률 검토와 절세 방안 마련, 각종 절차 진행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거리와 시간의 벽을 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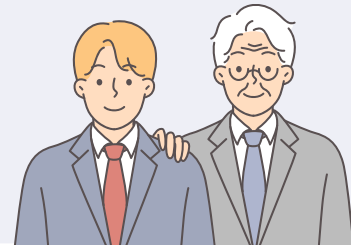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 내 재산 상속 관리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년인데, 아직 상속예금을 못 받았습니다”

상속인들이 시민권자인 이 가족은 상속인 확인서류가 없어 아직 상속이 정리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해외 거주자에게 한국의 상속이 얼마나 길고 낯선 여정이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한마디입니다.

2023년 재외동포현황에 따르면 약 708만명이며, 이중 미국 260만 명, 중국 210만 명, 일본이 80만 명입니다. 유학, 주재, 이민 2세의 정착으로 해외 거주자는 꾸준히 늘고 있고, 반대로 한국으로의 역이민을 선택하는 60~70대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의 유고로 한국에서 상속이 발생하거나, 한국의 재산을 미국 국적을 가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할 때 해외 거주자의 대응은 매우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상속의 기본 구조

한국에서는 민법상 법정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정해지고, 유언 또는 협의에 따라 상속 재산이 귀속됩니다. 해외에 오래 거주했다라도 사망 시 한국 국적이거나, 해외 시민권자라도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한국 상속법과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상속 재산은 유언이 없으면 공동 상속인 전원의 협의분할이 필요합니다.

해외거주자에게 오랫동안 떨어져 지낸 형제자매들과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협의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보다 앞서 첫번째로 부딪히게 되는 어려움은 바로 ‘상속인의 확인’에 있습니다.

상속인임을 확인해주는 서류는 상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에 따라 제적등본)입니다.

문제는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국적상실의 사유로 문서들에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어, 미국 여권과 같은 현지 신분증으로 한국 서류의 동일인 확인이 까다로워지는 부분입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문서 속의 상속인과 상속예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사람이 동일한 상속인이라는 확인, 즉 증빙서류가 필요한데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복잡하여 알 수 없고, 준비한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내 자녀라고 등록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오래 전 미국으로 건너가 아이들을 낳아 잘 살고 있던 시민권자인 김영숙님 부부는 형제자매들과 친구들이 있는 한국에서 생활하고자 한국으로의 역이민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의 만류에도 남은 생은 고향에서 형제자매들 옆에서 편안히 지내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 작은 APT를 구입하고 미국에서 가지고 온 현금으로 편안히 생활하던 중 갑자기 남편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상속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한국으로 오면서 한국국적을 취득한 남편은 한국법에 따라 상속이 발생하게 되는데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자녀들 때문에 서류상 법정상속인이 김영숙님 본인 혼자라는 사실입니다.

남편이 사망한 지금은 김영숙님 본인이 모두 상속받으면 되지만, 남편처럼 한국국적을 취득한 김영숙님이 사망하게 된다면 김영숙님의 한국 내 재산은 서류상으로는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라도 자녀들을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뒤늦게 등록하려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등록할 수 없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한국에 있는 내 재산은 당연히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김영숙님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내 뜻을 실행하는 유언대용신탁

김영숙님은 고민 끝에 유언대용신탁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변의 지인들은 유언장을 권하기도 했지만, 미국에서 상속을 준비할 때 하는 ‘트러스트’가 한국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유언장을 작성했을 때의 어려운 점도 유언대용신탁을 결정한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김영숙님의 자산의 절반은 현금인데, 자녀들이 유언장을 제시하고 상속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유언장에 의한 상속예금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언장은 가장 마지막에 작성된 유언장만 법적 효력을 갖는데, 금융기관에서는 자녀들이 가지고 온 그 유언장이 최종 유언장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는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 내 상속인이라는 증거가 어려워 작성한 유언장인데, 금융기관은 서류상의 상속인인 형제자매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내 자녀들이 상속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김영숙님 본인도 건강이 나빠졌을 때 제3자로부터의 재산의 보호는 물론이고 본인의 생활비, 간병비, 병원비등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후 케어의 기능도 매우 유용해 보였습니다.

김영숙님은 생전에는 본인이 충분히 사용하고 남은 재산은 해외에 있는 자녀들이 찾을 수 있도록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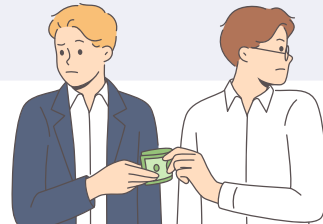
“형제 자매들이 이럴 줄은 몰랐어요..”

정민수님은 부친상으로 급히 귀국해 장례만 치르고 곧바로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한국 상속은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정민수님은 형제자매들이 전하는 대로 위임장을 쓰고 도장을 날인하였고, 뒤늦게 받아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세무사가 작성한 상속신고서류등을 확인하고서야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나와 남동생은 미국 유학 비용을 지원받고, 게다가 멀리 떨어져 지내 아버지의 봉양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상속재산의 아주 일부만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부동산 등 꽤 많은 자산이 있었던 아버지의 재산은 이미 생전에 누나와 동생에게 증여가 된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정민수님처럼 해외거주하시는 분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급히 장례만 치르고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국의 상속은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 분할을 해야 하는 상속과정이 필요하므로 한국의 형제자매들을 믿고 대신 본인의 상속 처리를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 만으로 본인만 소외된 채 이미 협의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정민수님은 결국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법률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정민수님의 아버지가 생전에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해 놓으셨다면 어땠을까요?

아파트, 현금, 주식 등 재산을 신탁하고 사후에는 자신이 정한대로 자녀들에게 상속이 집행되도록 해 놓으셨다면 형제자매들 간의 불필요한 의사소통 없이 신탁 계약에서 정한대로 상속이 집행되고, 해외 거주하고 있어 한국의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정민수님을 위해 상속신고의 처리, 부동산의 처분, 금융자산의 운용 및 해외 송금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공동 상속된 부동산 관리의 어려움

부동산을 상속받았을 때도 예외는 아닙니다.

부동산을 공평하게 지분으로 나누어 상속받은 경우, 그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있어서도 의견은 나뉘게 되고, 임대차 계약 및 관리, 임대료 산정, 부동산 관리 비용 제외한 수익의 배분 등에 있어서 해외 거주자는 소외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매각의 시기, 매각 금액 등이 적정한지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외 거주하는 공동소유자가 매각을 위한 위임장을 보내는 시간의 소요도 매각의 기회를 잃게 되는 주요 변수 중 하나입니다. 만약, 부동산을 처분할 때 신탁을 활용하거나 부동산 자문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그 처리 절차가 객관적이고 간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관리를 하는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 관리뿐 아니라 임대료 수납 후 경비를 지출하고 공동소유자들에게 남은 수익을 배분하는 시스템이 있어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정기보고를 통해 한국에 있는 부동산의 관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거리와 시간을 넘어 재산을 잇는 다리”

해외거주자에게 상속은 법률적 권리행사 하기 전에 삶과 관계를 이어가는 설계입니다.
물리적 거리는 길고, 절차는 낯설며, 시차와 언어의 벽은 사소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한국의 리빙트러스트는 먼 거리에 있는 형제들 간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줄여주고,
고향의 재산을 안전하게 그리고 원하는 방식으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외동포에게 한국의 리빙트러스트는 단순한 금융 서비스가 아닌,
세대와 세대를 잇는 든든한 다리가 될 것입니다.



하 승 희
리빙트러스트 전문 PB

seungheeha@hanafn.com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미국의 가족들과 한-미 자산관리 사례



오경령
KPW 프리미어클럽 센터장

kroh73@naver.com

재무상담을 하다 보면 미국과 관련이 있는 가족을 둔 사례를 적지 않게 보게 된다.

이민자뿐만 아니라 유학생을 둔 부모, 유학 중 자녀를 낳아 자녀가 시민권을 가진 경우, 다른 형제를 따라 부모님이 이민을 간 경우 등 매우 다양한 사례가 있다. 그들의 국적과 자산 소유 형태 또한 다양하므로, 모든 사례를 일률적으로 다루기 어렵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한국에서 재무 설계와 개인 자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미국 교포 시장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미국과 특별한 연고가 없더라도 미국에 자산을 소유하려는 한국인들이 늘어나면서, 미국 주식 시장은 물론 미국 부동산에 대한 투자 금액이 크게 증가했다. 한국예탁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미국 주식은 약 1,317억 4백만 달러(약 183조 4,5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5년 전인 2020년 초에 비해 약 18배 증가한 규모이다.

정확한 투자 규모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2022년까지 큰 관심을 받던 미국 부동산 투자는 2023년에 높은 환율과 금리로 잠시 주춤했다가 2024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재무 상담을 진행하면서, 한국부동산의 가파른 가격 상승과 다주택자 세금 중과 등으로 인해 해외(특히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재무 상담 시 미국의 투자 시장과 세금은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미국과 한국의 자산관리 케이스를 공유하고자 한다.

사례 1

유학생 자녀가 미국 교포와 결혼하고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한 사례

2013년부터 10년 이상 관리해 온 고객의 사례다.

처음 상담을 시작했을 때 아들은 유학생 신분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고객 : 의사 (한국 국적)
 배우자 : 주부 (한국 국적)
 딸, 사위, 손자녀 2명: 모두 한국내 거주 및 한국국적
 아들, 며느리, 손자녀 3명: 모두 미국에 거주 및 미국 시민권자

2014년에 유학생 신분이던 아들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서 해외 이주비 신청, 해외 부동산 매입,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증여 후 증여세 신고, 미국 거주자인 아들의 해외 금융 자산 신고 (FBAR ,FACTA)를 도왔다.

해외 이주비 지급 신청 절차를 안내했다. 외교통상부 재외국민 이주과에 해외 이주 신고를 하고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는 과정부터, 해외 이주비 지급(환전 또는 송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절차까지 모두 도왔다.

해외 이주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모님 자산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증여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절차도 함께 진행했다.

2016년에 미국 부동산 매입을 고려하실 때 우리는 직접적인 매입 절차에는 관여하지 못했지만, 중요한 세금 및 상속 관련 시뮬레이션을 제공했다. 미국 거주자인 아들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와 비거주자인 아버지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를 비교 분석하여 증여세, 상속세 등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했다. 그 결과, 미국 거주자인 아들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아들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우리는 한국에서의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절차를 도왔다.

이후에도 아들 명의로 한국에 남아있는 금융 자산에 대한 신고와 관리를 계속해서 도왔다. 최근에는 손자녀의 학군 이전 문제로 부동산 매입 관련 자금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사례 1

미국으로 자금을 이전하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자산 관리를 도왔다.

2016년 초 108억 원에 매각한 건물의 매도 과정에서 세금 납부 후 아버지 형제들에게 증여하는 절차를 도왔으며, 매도 후 현금성 자산의 투자 관리도 하고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딸에게 개포동 아파트 청약을 권유하였다. 당첨된 이후 10억 원 상당의 현금을 딸과 사위의 법인을 활용해 증여 및 대여금 형태로 이전하여 자금 출처를 마련하도록 도왔다.

현재 고객 부부는 70대에 접어들어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 미국 국적을 가진 아들과 한국에 거주하는 딸에게 자산을 어떻게 상속할지, 은퇴 후 현금 흐름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장기적인 상담을 계속하고 있다.

앞으로의 상담 과정에서는 상속세 재원 마련, 그리고 한국 내 상속 및 증여 자산 중 아들의 몫을 미국에 있는 아들 가족에게 어떻게 이전할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처분 및 다운사이징, 신탁 활용, 유언 대응 신탁 및 유언장 작성, 후견인 지정 등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고객 가정은 조부 세대에서 상속세를 납부했던 경험이 있어, 다음 세대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고객 부부가 진정으로 원하는 노후 생활과 자산 이전을 완성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한다.



사례 2

부모가 유학중에 낳은 자녀 둘은 시민권자

고객: 광고회사 법인대표 (한국 국적)
 배우자: 주부 (한국 국적)
 성인 아들1: 고객의 한국법인 직원 (미국 시민권자)
 성인 아들2: 미국 유학 중 (미국 시민권자)

이 가정의 부부는 유학 중 두 아들을 낳아, 두 아들 모두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 다행히 두 자녀 모두 한국에서 군 복무를 마쳤다. 처음 상담은 아버지 법인의 과도한 이익 잉여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법인세를 절감하는 방안에 대한 것이었다. 비용 처리가 가능한 보험과 퇴직연금 가입을 제안했고, 일부 실행 후에도 법인 자금 관련 상담을 계속하고 있다.

이후 할머니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세대 생략 증여와 손자가 아파트 지분을 매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방법을 계산해 드린 결과, 한국에 거주하는 큰아들이 지분 일부를 매입하고 추후 할머니 별세 시 아버지가 세금 없이 상속받아 자녀에게 다시 이전하는 방안을 선택했으며, 현재 실행을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 유학 중인 둘째 아들에게 소득을 만들어 주는 방안에 대한 문의도 있었다. 미국 국적자인 아들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아버지의 한국 법인에서 해외 법인을 설립하여 출자하는 방식을 상담하고 회계사의 조언을 구했다. 회계사와의 미팅에서 법인 설립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받아, 향후 활용도와 부모님의 은퇴 계획까지 고려하도록 했다. 그 결과, 미국 국적자인 아들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아버지가 특정 법인에 대여하는 형식을 제안했다. 아직 아들이 학생이라 법인 설립 시기를 고민 중이지만,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자녀가 미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에는 동의했다.

이 가정은 둘째 아들의 안정적인 미국 이주는 물론, 추후 아버지의 법인 자산 증가와 은퇴 계획에 따라 미국으로의 이민까지 고려하고 있다. 상담을 진행한 회계사는 법인을 통한 부동산 매입, 신탁을 활용한 자산 권한 유지, 법인 명의의 보험 가입을 통한 상속세 재원 마련, 그리고 법인세 절감 방안 등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주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의 전문직 종사자나 법인 대표들 중에는 어떤 식으로든 미국과 가족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고객의 필요에 따라 미국 자산과 세금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했고, 여러 차례의 상담을 통해 상당한 경험을 쌓았다. 이러한 경험이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었으며, 한-미 간 자산 관리를 원하는 많은 고객들을 만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고 오늘도 즐겁게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



E-Commerce Sales Tax Law Insights & Audit Defense

After the U.S. Supreme Court’s decision in [South Dakota v. Wayfair, Inc.](#) on June 21, 2018, state governments adopted a variety of standards to increase their sales tax revenue from remote sellers and marketplace facilitators. This was largely accomplished through the expansion of nexus definitions and reporting requirements.

As a result, sales tax audits have significantly increased in recent years due to more proactive enforcement by states implementing the Wayfair ruling. Compliance with new tax laws and preparation for audit defense have become essential for e-commerce businesses, which are among the most affected by this legal shift.

To comply with recent changes, a clear understanding of nexus is the first step. Nexus refers to the degree of connection a business has with a state or local government that obligates it to collect and remit sales and use tax. Traditionally, nexus was established only through a physical presence in the state. However, the Wayfair decision introduced the concept of economic nexus, which can apply even without a physical location.

In California,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CDTFA) determined that any retailer whose sales into the state exceed certain thresholds is considered “engaged in business” in California for the purposes of Revenue and Taxation Code (RTC) section 6203 and Regulation 1684.

Assembly Bill (AB) 147, enacted by the California Legislature, amended RTC section 6203 effective April 1, 2019. It expanded the definition of a retailer engaged in business in the state to include any retailer whose total combined sales of tangible personal property for delivery into California—by the retailer and its related parties—exceeds \$500,000 in the preceding or current calendar year.

Retailers that meet this threshold, including remote sellers located outside of California, are required to register with CDTFA, collect California use tax, and report and remit the tax. This applies to those who sell tangible goods into California through the Internet, mail-order catalogs, telephone, or any other means.

To determine whether they have a sales and use tax nexus with a particular state, e-commerce businesses must review the following criteria:

- 1 Physical presence or operations in the state (Physical Nexus)
- 2 Sales volume or number of transactions exceeding the state’s threshold (Economic Nexus)

Jenny You
CPA, California

jyoucpa@gmail.com



If either of these criteria applies, the business must register in that state and begin collecting and remitting sales and use tax. For instance, California requires registration when annual sales exceed \$500,000. However, each state has its own economic nexus threshold. For example, South Dakota requires businesses to collect sales tax if they have more than \$100,000 in annual sales OR more than 200 transactions in the state.

In addition to establishing nexus, e-commerce businesses must also consider laws such as the *Marketplace Facilitator Act*. Under this law, the e-commerce platform used for sales may determine who is responsible for collecting and remitting sales tax.

The *Marketplace Facilitator Act*—enacted by AB 147 (Stats. 2019, ch. 5) and amended by SB 92 (Stats. 2019, ch. 34) and AB 1402 (Stats. 2021, ch. 421)—provides that beginning October 1, 2019, a marketplace facilitator is generally responsible for collecting, reporting, and paying the tax on retail sales made through their marketplace for delivery to California customers.

Additionally, starting January 1, 2022, a marketplace facilitator may be required to collect, report, and pay applicable fees on retail sales of certain items. A marketplace includes a physical or online place where marketplace sellers sell or offer for sale tangible merchandise for delivery in California. A marketplace facilitator is generally the operator of the marketplace.

If a sale is made through a marketplace and the platform qualifies as a “marketplace facilitator” under the Act, then the facilitator—not the individual seller—is responsible for collecting and remitting the tax on that sale.

Platforms like Amazon and eBay are considered marketplace facilitators because they enable transactions, handle payments, and often fulfill orders. Many states now require these companies to collect and remit sales tax on behalf of their third-party sellers.

In preparation for audit defense, e-commerce businesses should pay particular attention to the following areas:

- 1 Do not delay registration and sales tax compliance.
- 2 Remain compliant with ongoing tax rate changes.
- 3 Maintain proper supporting documentation for claimed exempt sales.
- 4 Retain shipping documentation to support out-of-state sales.
- 5 Reconcile recorded sales with third-party data (e.g., 1099-K forms, IRS or state income tax returns).
- 6 Verify whether the marketplace facilitator is collecting and remitting sales tax on your behal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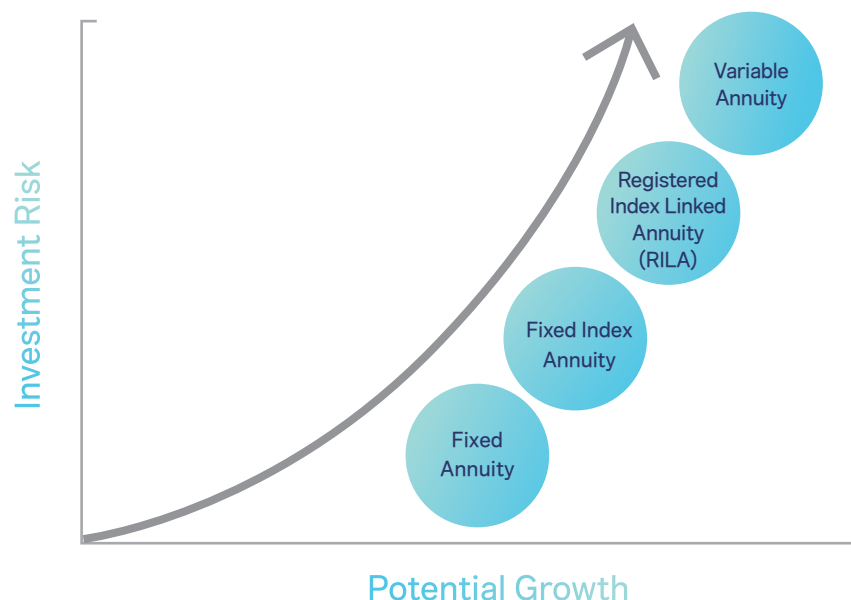
Retirement Income Solutions : Understanding Annuities

1. Introduction

The retirement landscape has fundamentally changed over the past four decades. The decline of traditional pension plans has shifted longevity risk from employers to individuals, creating a critical need for products that can replicate pension-like income streams. According to the Bureau of Labor Statistics, only 15% of private sector workers had access to defined benefit plans in 2022, compared to 35% in 1992.

This shift creates a "retirement income gap" that we must help clients address. Annuity products designed for income generation offer solutions to longevity risk - the risk of outliving one's assets. Understanding these products' mechanics, tax treatment, and strategic applications is essential for comprehensive retirement planning.

2. Types of Annuities



2-1. Accumulation Annuities

Accumulation annuities are a group of products designed for asset growth and future income generation.

2-1-1. Fixed Annuity

A fixed annuity may be a good fit for someone seeking a conservative investment. It allows you to protect and accumulate assets with a guaranteed rate of interest and provides the ability to convert those assets into guaranteed income.

			
Benefits	Growth Potential	Fees	Risk
• Guaranteed growth • Option for guaranteed lifetime income or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 Tax deferral for non-qualified assets	• A guaranteed rate of interest is credited to the contract annually based on the interest rate offered at the time of purchase • Typically, lower potential for growth than other deferred annuities over the long-term	• Typically, have surrender charges for withdrawals in excess of 10% of contract values • Optional benefits may have additional charges	• Inflation risk

2-1-2. Fixed Index Annuity (FIA)

A FIA may be a good choice for someone looking for some level of growth or income potential, with downside protection. Each index account is credited with interest, if any, based, in part, on the performance of a stock or bond market index.

			
Benefits	Growth Potential	Fees	Risk
• 100% downside protection • Tax deferral of earnings on non-qualified assets • Guaranteed lifetime income or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 Potential for higher growth than a traditional fixed annuity	• Moderate growth potential • Interest credited is in part linked to the performance of an index	• Surrender charges may apply, based on when premiums are paid, typically in excess of 10% of contract values • Optional benefits may have additional charges	• Inflation risk • Growth potential is limited • Credited interest may be lower than index performance • If performance of selected index is negative, no interest will be credited to the contract • Growth potential is reduced when optional benefits are elected for an additional fee

Note : With a FIA you are not invested directly in the index, and growth is limited based on a cap rate or participation rate.

2-1-3. Registered Index Linked Annuity (RILA)

Sometimes referred to as an Indexed Variable Annuity or a Structured Annuity, a RILA may be a good choice if you are looking for some level of growth or income potential, with limited downside protection. The rate of interest credited to the contract is linked, in part, to the returns of an index. RILAs typically have more upside potential than a fixed index annuity, with only limited downside protection.

			
Benefits	Growth Potential	Fees	Risk
• Potential growth with limited or no downside risk • Tax deferral of earnings for non-qualified assets • Guaranteed lifetime income or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 May provide some level of guaranteed death benefit; greater of contract value or premiums paid	• Moderate growth potential depending in part on index account performance	• Surrender charges may apply, based on when premiums are paid, typically in excess of 10% of contract values • Optional benefits may have additional charges	• Market Risk • Moderate inflation risk, but typically less than fixed products • Growth potential is limited based on index performance and crediting • Growth potential is reduced when optional benefits are elected for an additional fee

2-1-4. Variable Annuity (VA)

A variable annuity provides the greatest potential for growth but also the highest risk of loss, so it is a good fit for investors who are comfortable with that level of risk.

			
Benefits	Growth Potential	Fees	Risk
• Access to investments that are consistent with your risk tolerance and longterm objectives • Guaranteed lifetime income or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 Account value growth potential with the ability to outpace inflation • Tax deferral of earnings for non-qualified assets • Income tax free account value transfers among the investment options • May provide some level of guaranteed death benefit; greater of contract value or premiums paid	• The highest growth potential of any annuity, but does not contain any guarantees unless a rider (for an additional cost) is included	• Mortality and expense risk fee • Administrative fees • Fund/sub-account fees • Typically have charges on withdrawals in excess of 10% of account values • Optional benefits may have additional charges	• Greatest market risk • Growth potential is reduced when optional benefits are elected for an additional fee

2-2. Income Annuities

Income annuities are products specifically designed to provide guaranteed income payments, typically for life or a specified period.

2-2-1. Single Premium Income Annuity (SPIA)

A SPIA may be a good choice for someone looking to create an immediate pension-like stream of income. Because it is funded with a lump sum payment, which you would no longer have access to, it is important to have separate liquid assets



Benefits

- Guaranteed lifetime income or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 Typically, inflation protection option (COLA)



Income Payments

- Annuity payments are based on a guaranteed rate at time of purchase and are fixed unless a COLA option is elected



Fees

- No Fees



Risk

- Inflation risk
- Liquidity risk — there is limited to no access to principal

2-2-2. Deferred Income Annuity (DIA)

A DIA may be a good choice for someone looking to create a pension-like stream of income for some point in the future. It may be funded with a single lump sum payment or a number of payments over time. Since income is deferred, a DIA generally provides a higher guaranteed income than a SPIA. However, you will not have access to your original payment(s) or be able to take withdrawals, so it is important to have access to separate liquid assets.



Benefits

- Guaranteed future lifetime income or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 Generally, deferring income provides a greater guaranteed income amount
- Typically, you can add purchase payments to buy more guaranteed future income



Income Payments

- Income payments are based on a guaranteed rate at time of purchase
- May vary based on length of deferral



Fees

- No Fees



Risk

- Inflation risk
- Liquidity risk

3. Fees and Expenses

Annuity fees vary significantly by product type. Income annuities (SPIA/DIA) typically have no explicit fees since costs are built into the payout calculation. Accumulation annuities charge multiple fees: variable annuities include mortality & expense charges (1-1.5%), administrative fees (0.1-0.3%), and underlying fund expenses (0.5-2%), while fixed and index annuities primarily charge surrender fees for early withdrawals (typically 5-10% declining over 5-10 years). Optional riders for income guarantees or enhanced death benefits add another 0.5-1.5% annually to the total cost structure.

	ACCUMULATION ANNUITIES			
	Fixed Annuity	Fixed Index Annuity	Registered Index Linked Annuity	Variable Annuity
Mortality and expense risk charge				✓
Fund fees				✓
Surrender charge/CDSC	✓	✓	✓	✓
Fees may vary depending on optional benefits	✓	✓	✓	✓

4. Benefits of Annuities

	INCOME ANNUITIES		ACCUMULATION ANNUITIES			
	SPIA	DIA	Fixed Annuity	Fixed Index Annuity	Registered Index Linked Annuity	Variable Annuity
Guaranteed growth			✓			
Guaranteed lifetime income	✓	✓	✓	✓	✓	✓
Tax deferred growth potential ¹			✓	✓	✓	✓
Allocation Choices ²				✓	✓	✓
Market-based growth potential ²				✓	✓	✓
Market-based growth potential with downside protection ³				✓	✓	

¹ If you fund your annuity with qualified assets, then the annuity provides no additional tax deferral advantages.

² For Fixed Index Annuities and Structured Annuities, "Allocation Choices" and "Market-Based Growth Potential" mean you can choose an account with guaranteed interest and/or accounts whose interest is based, in part, on the performance of a market-based index, subject to caps and participation rates. For Variable Annuities, "Allocation Choices" and "Market-Based Growth Potential" mean you can choose a guaranteed interest account and/or investment accounts, the latter whose performance is based on the accounts' underlying fund investments.

³ RILAs have limited downside protection.

As defined benefit plans continue to decline, annuity products providing guaranteed income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tools for retirement security. Professional advisors must understand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and applications of SPIAs, DIAs, and income riders to effectively serve clients' retirement income needs.

SPIAs provide immediate, complete longevity protection with maximum transparency and efficiency. DIAs offer enhanced future income through deferral while maintaining the same risk transfer benefits. Income riders combine downside protection with upside potential and liquidity, though at higher cost.

The optimal solution often involves combining these products in a comprehensive retirement income strategy that addresses different time horizons, risk tolerances, and financial goals. As the retirement income market continues to evolve, staying current with product innovations and regulatory changes will be essential for providing effective client guidance.

The professional advisors who develop expertise in retirement income planning will be well-positioned to help clients navigate the complex transition from asset accumulation to income distribution, ultimately contributing to more secure and successful retirements.

This material does not constitute a recommendation to engage in or refrain from a particular course of action.

The information within has not been tailored for any individual.

The information provided is not written or intended as specific tax or legal advice. MassMutual and its subsidiaries, employees, and representatives are not authorized to give tax or legal advice. Individuals are encouraged to seek advice from their own tax or legal counsel.

Annuity products are issued by Massachusetts Mutual Life Insurance Company (MassMutual) and its subsidiary, C.M. Life Insurance Company (C.M. Life), Springfield, MA 01111-0001. C.M. Life is non-admitted in New York.

© 2024 Massachusetts Mutual Life Insurance Company (MassMutual®), Springfield, MA 01111-0001. All rights reserved.

www.MassMutual.com.

AN7796

Kyung Eun Kim
CFP, Managing Partner

kyungeunkim@financialguide.com
MassMutual Northern Virginia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Involvement As A Third-Party Witness In Business Litigation Through Subpoenas



Joyce J. Choi
ESQ

jchoi@kahanafeld.com

Partner and Korea Practice Group Chair, KAHANA & FELD LLP

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nd/or their business entity (collectively “CPA”) in California may get involved in a California lawsuit as a third-party witness in several ways, especially in business litigation, by way of subpoenas.

First, a CPA can be served with a Deposition Subpoena for Production of Business Records (“Subpoena”), of which a blank form is shown below. A Subpoena can be issued by an attorney, and must be served personally on the CPA or the CPA’s business entity unless agreed to otherwise. The Subpoena will have a list of document requests attached, and could include a request for relevant documents such as income tax returns, balance sheets, financial statements, bank statements, and documents relating to capital gains. The Subpoena may be accompanied by a Notice to Consumer or Employee and Objection, which applies to “any individual, partnership of five or fewer persons, association, or trust which has transacted business with, or has used the services of, the witness or for whom the witness has acted as agent or fiduciary.” Cal. Code Civ. Proc. § 1985.3(a). If the Subpoena is valid, properly served, and not objected to, the CPA is only required to produce responsive documents that were generated by the CPA or “...personnel of the business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at or near the time of the act, condition, or event,” and sign a declaration or affidavit of custodian of records to that effect. Cal. Evid. Code § 1561(a); *Cooley v. Sup.Ct.* (2006) 140 Cal. App. 4th 1039, 1045.

SUBP-010

(non-judicial use only)

TELEPHONE(S): _____ FAX: _____ ATTORNEY FOR (Name): _____ SUPERIOR COURT OF CALIFORNIA, COUNTY OF _____ STREET ADDRESS: _____ CITY AND STATE: _____ ZIP: _____ PLAINTIFF/PETITIONER: _____ DEFENDANT/RESPONDENT: _____ DEPOSITION SUBPOENA FOR PRODUCTION OF BUSINESS RECORDS THE PEOPLE OF THE STATE OF CALIFORNIA, TO (Name, address, and telephone number of deponent, if known): _____ 1. YOU ARE ORDERED TO PRODUCE THE BUSINESS RECORDS described in item 3, as follows: To (Name of deponent's attorney): _____ At (Time): _____ On (Date): _____ Location (Address): _____ Do not release the requested records to the deposition officer prior to the date and time stated above. a. ☐ by delivering a true, legible, and durable copy of the business records described in item 3, enclosed in a sealed inner envelope with the file and number of the action, name of witness, and date of subpoena clearly written on it. The inner envelope shall then be enclosed in an outer envelope or wrapper, sealed, and mailed to the deposition officer at the address in item 1. b. ☐ by delivering a true, legible, and durable copy of the business records described in item 3 to the deposition officer at the witness's address, on receipt of payment in cash or by check of the reasonable costs of preparing the copy, as determined under Evidence Code section 1562(d). c. ☐ by making the original business records described in item 3 available for inspection at your business address by the attorney's representative and permitting copying at your business address under reasonable conditions during normal business hours. 2. The records are to be produced by the deponent law officer to this court 25 days after the issuance of the deposition subpoena, or 15 days after service, whichever date is later. Reasonable costs of locating records, making them searchable or copying them, and postage, if any, are recoverable as set forth in Evidence Code section 1562(d). The records shall be accompanied by an affidavit of the custodian or other qualified witness pursuant to Evidence Code section 1562(f). 3. The records to be produced are described as follows. (I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is demanded, list item or items in which such type of information is to be produced may be specified) ☐ Continued on Attachment 3 4. IF YOU HAVE BEEN SERVED WITH THIS SUBPOENA AS A CUSTODIAN OF CONSUMER OR EMPLOYEE RECORDS UNDER CODE OF CIVIL PROCEDURE SECTION 1985.3 OR 1985.6 AND A MOTION TO QUASH OR AN OBJECTION HAS BEEN SERVED ON YOU, A COURT ORDER OR AGREEMENT OF THE PARTIES, WITNESSES, AND CONSUMER OR EMPLOYEE AFFECTED MUST BE OBTAINED BEFORE YOU ARE REQUIRED TO PRODUCE CONSUMER OR EMPLOYEE RECORDS. DISOBEDIENCE OF THIS SUBPOENA MAY BE PUNISHED AS CONTEMPT BY THIS COURT. YOU WILL ALSO BE LIABLE FOR THE SUM OF FIVE HUNDRED DOLLARS AND ALL DAMAGES RESULTING FROM YOUR FAILURE TO OBEY. Date issued: _____ _____ (Type or Print Name) _____ (Signature of Person Serving Subpoena) _____ (Print of person on return) DEPOSITION SUBPOENA FOR PRODUCTION OF BUSINESS RECORDS Form Subpoena for Production of Business Records Revised January 2010 Subpoena Form 001-010-010 (Sealed Civil Procedure) (S. 1985.3, 1985.6) Copyright 2010 by the State of California	CASE NUMBER: _____
---	---------------------------

Objections are due within five days of the deadline to produce documents. The CPA, a party to the litigation, or a third-party may serve objections or file a Motion to Quash the Subpoena. As stated in section 4 of the Subpoena, "If you have been served with this subpoena as a custodian of consumer or employee records under Code of Civil Procedure Section 1985.3 or 1985.6 and a motion to quash or an objection has been served on you, a court order or agreement of the parties, witnesses, and consumer or employee affected must be obtained before you are required to produce consumer or employee records." (Formatting changed.) If a Notice to Consumer or Employee is not served on the CPA but a Motion to Quash is filed by any party or third-party, the CPA should not produce documents unless and until they receive a court order or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and consumer for the CPA's production.

Second, a CPA may receive a Deposition Subpoena for Personal Appearance, or a Deposition Subpoena for Personal Appearance and Production of Documents and Things. These are subpoenas that require appearance at an oral deposition, with or without documents. At a deposition, the witness is asked questions by attorneys under oath. Like Deposition Subpoenas for Production of Business Records, these subpoenas can be issued by an attorney, must be served personally unless agreed to otherwise, and can call for objections to be served or a Motion to Quash to be filed.

Third, a CPA may receive a Civil Subpoena for Personal Appearance at Trial or Hearing, or a Civil Subpoena (Duces Tecum) for Personal Appearance and Production of Documents,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and Things at Trial or Hearing and Declaration. At a trial or hearing, the witness is asked to take the stand at court and answer questions under oath. These subpoenas require appearance at a trial or hearing, with or without documents. Like the subpoenas mentioned above, these subpoenas can also be issued by an attorney, must be served personally unless agreed to otherwise, and can call for objections to be served or a Motion to Quash to be filed.

In conclusion, a CPA who is served with a subpoena may serve or receive objections or a Motion to Quash the subpoena, and may be required to appear at a deposition, trial, or hearing, and/or produce relevant business records. It is always prudent to seek legal advice when a CPA receives a subpoena.

Private Investors in Professional Entities and Your Exit



Byoung Jo Kang
ESQ

bjkang@bjkanglaw.com
B.J. Kang Law, PC

1 Industrialization of Professional Entities and Corporatization

The term “professionals” originates from the Middle English term “profes” which originally referred to individuals who had taken either religious or public vows for certain purposes.¹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the highly educated occupation was historically viewed as a calling to serve the public interest, professionals have traditionally been prohibited from either limiting their liability or hiding behind a separately identifiable entity. Along those same lines, they were not allowed to partner with non professionals for profit sharing.

Therefore, most states have statutes governing professional entities that require that professionals be held personally liable for their own actions and restricting or prohibiting non professionals, i.e. investors, from owning interest or equity in professional entities.² Despite these restrictions, it has become a harsh reality that significant parts of professional entities and industries are dominated by private investors. However, such an occurrence has been somewhat expected, as the recession-proof and growing industries of accounting, healthcare, dentistry, etc.,³ would consistently attract a bandwagon of private investors.

1 Claude Balthazard, What Does it Mean to be a Professional, Hum. Res. Pro. Ass’n. (August 2015), <https://hrpa.s3.amazonaws.com/uploads/2020/10/What-it-means-to-be-a-professional.pdf>.

2 See e.g., Cal. Bus. & Prof. Code § 5079 (requiring accounting firms to be majority owned by licensed professionals and requiring non-licensed owners to be material participants in the business).

3 For example, see CMS’s NHE Fact Sheet pointing out that the National Health Expenditure accounts for 18% of GDP. Ctr. for Medicare & Medicaid Serv., NHE Fact Sheet, Ctr. for Medicare & Medicaid Serv., <https://www.cms.gov/data-research/statistics-trends-and-reports/national-health-expenditure-data/nhe-fact-sheet#:~:text=Projected%20NHE%2C%202024%2D2033%2C,insured%20share%20of%20the%20population>.



2 Corporatization and Private Investors

The so-called corporatization⁴ of the professional industries is often perceived as not being well aligned, or even as a risk to, the autonomy of professional judgement.⁵ Such autonomy has been viewed as a key reason for the recognition and existence of the professions and a large number of federal and state laws

⁴ The terms corporation, company, or entity were often used interchangeably in the business world. The word “corporation” originated from the Latin, *Corpus*, and it means an assumption of one body, which can be separate and distinct from the associated members, but the word “company,” is believed to be from the late Latin, “*Companio*,” which refers to a group of members sharing bread. The word, “entity” is, on the contrary, from the Medieval Latin, “*entitas*” which means distinctively separate existence or being. If we oversimplify the nuances between these terms, they respectively signify separate and limited liabilities, profit sharing, and distinctively identifiable form of business. To keep up the quality of professional services, however, the statutory and common laws focus on the accountability of the professionals and certain standards of services.

⁵ For example, in July 2025, the International Ethics Standard Board for Accountants (IESBA) published a staff alert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ethical practices and independence in the face of growing interest from private investors. Int. Ethics Standard Bd. for Acct., IESBA Staff Alert – Private Equity Investment in Accounting Firms, Int. Ethics Standard Bd. for Acct. (Jul. 31, 2015), <https://www.ethicsboard.org/publications/iesba-staff-alert-private-equity-investment-accounting-firms>.

directly, or indirectly, touch on these issues.⁶ In response to such legal restrictions, few transactional structures were devised by private investors.

As an example, when a private investor wants to take over a healthcare business, the professional business is divided into two separate businesses. The first one is a traditional healthcare entity that is deprived of the general management and administrative service functions. It plainly complies with laws and regulations imposed on its ownership or operation matters, as it is owned by healthcare professional(s). In order to prevent a loss of control, the private investor will appoint an individual professional, who is friendly to them, to serve as the owner of the traditional healthcare entity through a prearranged agreement(s) (“PC” or “Friendly PC”). When said individual professional ceases to play its roles, he will give his ownership to another professional(s) designated by the private investors to continue to serve their interests. The second one is another organization, often called the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MSO”), that is set up to assume general management and administrative service functions and is owned by the private investors. The MSO ultimately channels the profit out of the highly regulated professional business entity to the private investor. This type of acquisition or reorganization structure is usually called the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friendly professional corporation model (“MSO/PC” model).⁷



⁶ The healthcare industry, for example, has laws regarding the corporate practice of medicine, employment laws, antitrust, and other medicare laws relating to false claims or anti stark laws. Additionally, accountants and lawyers have codes of professional conduct that address the need for them to act independently and in accordance with ethical standards.

⁷ Ladd, Morgan, Baker & Co., MSO-PC Model in Medical Practices: Financial and Operational Services, Ladd, Morgan, Baker & Co. (Jul. 23, 2024), <https://www.lbmc.com/blog/mso-pc-model-medical-practices/>.

Private investors can use similar methods to actively invest in other types of professional entities.⁸ By separating the not restricted management function from the actual practice, private investors allegedly allow the professionals to focus on their professional work while the investors take over the money aspects of the business. By doing so in a series of transactions,⁹ private investors can also scale up the money generating business, while remaining shielded from the relevant professional practice related regulations. In cases where ownership and operational restrictions are more lenient, such as for veterinary clinics, private investors are able to focus on building a sizable network of clinics by first purchasing a large clinic and then adding on smaller, local clinics.¹⁰

3 Private Investors in Accounting and Your Exit

More recently, private investors have turned their attention to backdoor financing or acquisition of accounting practices owned by CPAs. A total of 53 significant private equity (“PE”) related transactions were reported in the CPA and accounting sector from 2020 to halfway through 2025, with 24 of the deals occurring in 2024 alone.¹¹ Private investors have taken significant interest in 10 of the 30 largest U.S. accounting firms, and the projections suggest that over half of the top 30 firms will have private, non-professional ownership by the end of 2025.¹² If you are planning to retire from your accounting/auditing practice soon, wouldn’t this be good news for you? If so, what should you do to prepare for an exit from your accounting practice?

⁸ For example, when private equity firm TowerBrook Capital Partners acquired the accounting firm EisnerAmper in 2021, EisnerAmper was split into two entities in order to comply with ownership requirements of audit firms. EisnerAmper LLP was majority owned by CPAs and took care of the audit business while the tax and consulting business was covered by Eisner Advisory Group LLC which remained in the control of TowerBrook. See Craig Jourdan et. al, Unpacking Private Capital’s Growing Interest in Professional Services, Ropes & Gray (June 13, 2024), <https://www.ropesgray.com/en/insights/viewpoints/102j851/unpacking-private-capitals-growing-interest-in-professional-services-the-opport>.

⁹ In 2022, the FTC blocked JAB Consumer Partners, a private equity firm, from purchasing additional veterinary clinics. Prior to this action, JAB had purchased a large veterinary clinic and then proceeded to purchase a variety of additional smaller clinics to build a significant network with significant market power. Fed. Trade Comm’n, FTC File No. 2110140, Statement of Chair Lina M. Khan, In the Matter of JAB Consumer Fund/SAGE Veterinary Partners (2022). This method, commonly referred to as “buy-and-build” or “roll-up” strategies is currently being targeted by the FTC as potential violations of antitrust law and the Hart-Scott-Rodino Antitrust Improvement Act. Fed. Trade Comm’n, FTC File No. P110014, Statement of Commissioner Rohit Chopra, Regarding Private Equity Roll-ups and the Hart-Scott Rodino Annual Report to Congress (2020).

¹⁰ Private investments in the pet care, food and supplies sector surged 659% year over year in 2023, roughly \$2.89 billion, the highest annual value since 2019, according to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 data. Maira Imtiaz & Annie Sabater, Private Equity Investment in Pet Sector Climbs 659% in 2023, S&P Glob. (Jul. 5, 2024), <https://www.spglobal.com/market-intelligence/en/news-insights/articles/2024/7/private-equity-investment-in-pet-sector-climbs-659-in-2023-82299213>.

¹¹ See Cornerstone Trendlines Rsch., Private Equity Update: 53 Deals, \$98 Billion Valuations [Updated], CPA Trendlines (Aug. 29, 2025), <https://cpatrendlines.com/2025/07/01/cornerstone-dealflow-timeline-private-equity-investments-in-cpa-and-accounting-firms-2020-2025/>.

¹² Id.

Mr. Paul Munter, the former SEC's chief accountant expressly stated his concerns that the independence of auditors, with regards to the volatile and/or short term ownership by private investors, would be jeopardized.¹³ In fact, the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ICPA") Code of Conduct Appendix B, section A specifically requires that a majority of the ownership of a firm engaged in public practice of any audit or review of financial statements must belong to CPAs.¹⁴ Therefore, if you are interested in a private investor funded exit, the first step would be sorting and segregating your audit or attest business from your other practice areas. By splitting up your practice into the audit practicing entity and non audit practicing or service entity, you can safely invite the private investors to purchase the non-audit practicing company.

This division is a well tested and established strategy for CPAs who are considering the exit from its practice. In fact, the AICPA has a valid set of rules regarding this alternative practicing structure (the "APS") and it expressly sets out various components of this division. More specifically, it illustrates the arrangement between the entities such as the lease of employees, office space, and equipment; performance of back-office functions, such as billing and collections; and advertising and negotiated payment terms for these services.¹⁵ However, the rule is to reiterate independence of the auditors where the accounting practice is owned by a public company. To recognize and address private investors, more specifically private equity related transactions in the APS, the AICPA recently released potential revisions to the AICPA Code of Professional Conduct and guidance related to independence of APS, and invited the public to comment on March 10, 2025.¹⁶



¹³ Paul Munter, Auditor Independence and Ethical Responsibilities: Critical Points to Consider When Contemplating an Audit Firm Restructuring, Sec. Exch. Comm'n (Aug. 29, 2022), <https://www.sec.gov/newsroom/speeches-statements/munter-statement-auditor-independence-ethical-responsibilities-082922>.

¹⁴ Am. Inst. Certified Pub. Acct., Code of Professional Conduct, Code Pro. Conduct Am. 1, 290 (2014), <https://pub.aicpa.org/codeofconductethicsresources/et-cod.pdf>.

¹⁵ See Id. at 83.

¹⁶ See Am. Inst. Certified Pub. Acct. & Chartered Inst. Mgmt. Acct., AICPA Professional Ethics Division Seeks Input on Independence in Alternative Practice Structures, Am. Inst. Certified Pub. Acct. & Chartered Inst. Mgmt. Acct. (Mar. 10, 2025), <https://www.aicpa-cima.com/resources/download/ethics-discussion-memo-APS>.

Under the circumstances, should you rush to have employment agreements, service agreements or lease agreements drafted for your future exit transactions? Before taking any further actions beyond the division of your professional entities, however, you may want to refer to the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Boards of Accountancy(“NASBA”)’s last minute comment letter.¹⁷ While agreeing with most of the points in the revisions, NASBA expressed the two major concerns. First, NASBA expressed their concerns over the possible deterioration of audit service quality with private investor involvement.¹⁸ Second, NASBA pointed out the possibility of undue administrative or operational pressure on audit service with the various inter or intra company agreements including employment, service or lease agreement.¹⁹

While the AICPA is pushing towards accepting or even welcoming the private investors’ involvement, it would be reasonable to expect that follow up due rules and or guidance will be created to reduce or tame the side effects. Under the circumstances, yes, the private investor in the scene is good news for your potential exit, but it may not be prudent for you to take any hasty actions, beyond dividing your accounting practice into two entities, based on other aggressive planning tactics borrowed from other corporatized professional industries.

17 See Nat’l Ass’n State Bd. Acct., Re: Discussion Memorandum: Potential Revisions to the AICPA Code of Professional Conduct and Guidance Related to Independence in Alternative Practice Structure, Nat’l Ass’n State Bd. Acct. (Jun. 13, 2025), <https://nasba.org/wp-content/uploads/2025/06/June-13-2025-NASBA-Response-Letter-PEEC-APS-DM-FINAL.pdf>.

18 Id.

19 Id.



SUMMIT
PRO LAW, PLLC

WWW.SUMMITPROLAW.COM

Estate Planning & Advanced Tax Planning

Estate Planning

- Wills & Trust
- Probate & Probate Litigation
- Medicaid Planning

US 상속 계획

- 유언장 & 트러스트
- 상속 재판 & 상속 소송
- 메디케이드 플래닝

Advanced Tax Planning

- Gift & Estate Tax Strategies
- Irrevocable Trusts & FLLC/FLP
- Cross-border Tax Planning

고급 상속세 절세 전략

- 증여 & 상속세 절세 전략
- Irrevocable Trusts & FLLC/FLP
- 한-미 국제 상속 및 절세 전략

Pre-Immigratoin Planning

- International Asset Transfer Planning
- US Wealth Management
- Non-Resident Alien (NRA) Planning

이민 전 자산 관리 및 세금 계획

- 한-미 자산 이전 플래닝
- 미국 내 자산 관리 전략
- 미국 비 거주 외국인 절세 계획



Seattle Office
3400 188th St SW, Ste 695
Lynnwood, WA 98037

Los Angeles Office
1714 S Vermont Ave, Ste 202
Los Angeles, CA 90006

(425) 510-1671~3 ■ info@summitprolaw.com

대표변호사 DANIEL YOON, Esq.

-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 The Catholic Univ. of America, JD
- (전) 중앙일보 서울 본사 기자
- (전) 대한민국 국회 정책 보좌관
- (전) New York Life, Corporate Vice President
- (현) Summit Pro Law 대표 변호사
- (현) 미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이사장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

SEOUL



Hanjin Park

대표

hpark@altosbusiness.com

AltosBiz

지난 몇 년간 전세계적으로 한국은 여러 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고 문화적으로도 세계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인 혼란이 있었지만 이를 수습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여준 시민의식 또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K’로 시작되는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는 여러 분야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K-Beauty로 알려진 한국의 미용 및 화장품 제품들을 비롯하여 K-Food, K-Fashion까지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는 세계인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K-Culture 로 대변되는 문화산업에서의 약진은 절정에 이르고 있다. 최근 토니상에서 작품상을 수상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화제가 되었고 음악은 물론 영화, 드라마, 뮤지컬 등 전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다.

‘K’ 브랜드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여러 면에서 이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과거의 한국의 브랜드 하면 대기업을 위주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식으로 시작되었다. 삼성의 스마트폰, 현대기아의 자동차, LG의 가전제품이 높은 품질과 디자인으로 각인되기 시작하였고 여기에 일등공신 K-pop이 한 몫을 하게 된다. 한국의 노래와 춤을 세계인이 따라하고 아이돌의 공연에 현지인들이 열광하면서 한국의 음악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은 물론 Korea 라는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K-Beauty의 성공 또한 눈부시다. 중요한 것은 K-Beauty의 성공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주인공이라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화장품 수출액의 69%가 중소기업 브랜드라는 것이 놀랍다. 그만큼 중소기업 화장품업체들은 한때 중국시장공략에 주력을 했지만 이제는 눈을 돌려서 북미지역에서도 신화를 써 내려가고 있다. 독특한 효능과 디자인, 그리고 효과 높은 마케팅 전략을 토대로 세계의 젊은 고객을 매료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 산업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산 제품 (Made in Korea) 제품에 대한 인식은 지난 10년간 눈부시게 좋아졌다. 이제는 한국에서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품성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국가 브랜드가 이렇게 경제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적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제 미국시장을 겨냥한 여러 제품은 'Made in Korea'를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다. 한국산은 믿을 수 있다는 인식이 이제 소비자들의 마인드에 각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브랜드의 약진은 한국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한국경제는 저성장 시대로 접어 들었고 글로벌 시장 진출은 언제나 한국경제의 솔루션 이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브랜드는 역사상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기조는 자연스럽게 여러 산업군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최근 해외의 VC와 투자자들이 한국의 스타트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는 콘텐츠 부문에 집중되어 있는데 다른 분야로 확산될 전망이다. 대기업 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기술과 사업성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K-healthcare, K-Robot, K-Technology 로 대한민국의 브랜드는 확산되어 나가야 한다.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가 산업과 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사실 브랜드는 띄우기 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욱 힘들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브랜드이고 그 이면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작동한다.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는 일반 기업이나 제품의 브랜드와는 다르다. 잠재된 가치 또한 엄청나다. 소비자들의 국가에 대한 이미지는 브랜드로서의 인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이는 제품의 브랜드와도 연결될 수밖에 없다.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 역시 그 위상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관리와 전략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새로운 산업군으로 확산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헬스케어, AI, 기반 기술 등 첨단 분야로 확장되어야 한다.

우수한 국가 브랜드는 여러면에서 힘을 발휘할 것이다. 소비자의 우호적인 시각은 현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의 관세 압력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국가 브랜드와 이미지는 무언의 힘이 될 수 밖에 없다.



생성형 AI 시대!

저작권 이슈와 쟁점

바야흐로 지금은 생성형 AI의 시대입니다. 생성형 AI란 ‘대규모 데이터셋(data set)에 기반한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가 요구하는 새로운 데이터, 콘텐츠 등의 산출물을 제시하는 AI’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생성형 AI를 둘러싼 저작권 이슈가 매우 많은데,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학습’ 과정에서의 이슈입니다.

생성형 AI가 양질의 산출물을 생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방대한 자료를 학습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AI 개발업체가 생성형 AI에게 학습시키는 자료 중에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포함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그것이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저작권 침해 행위, 즉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습’ 과정(생성형 AI 개발 과정)에서의 가장 큰 이슈는 AI 개발업체의 학습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첨예한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AI 개발업체가 학습에 사용될 저작물마다 그 저작권자에게 일일이 이용허락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AI 학습의 경우 공정이용을 폭넓게 인정해 주자는 견해와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를 막아야 함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는 견해가 현재 팽팽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산출(AI 산출물 생성) 과정’에서의 이슈입니다.

위에서 저작권 침해 행위의 성립요건을 간략히 살펴보았는데, 보다 구체적으로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 저작물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길동이 AI 개발업체가 만든 생성형 AI 툴을 이용하여 “추운 겨울의 스산함이 느껴지는 어두운 톤의 노래를 만들어라”고 명령하기만 하여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노래의 작사와 작곡이 우연히 작사가 A, 작곡가 B의 그것과 극히 유사한 경우, 홍길동은 A, B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가요? 그렇게 보기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AI 개발업체’가 A, B에 대해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까요? 생성형 AI가 그러한 산출물이 당연히 도출되도록 제작된 것이 아니라면, AI 개발업체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렵습니다.

정영훈

파트너 변호사, 변리사

younghun.jung@barunlaw.com

법무법인 (유한) 바른



세 번째 이슈는 ‘산출물’에 관한 이슈입니다.

위 예시에서 홍길동이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만든 노래의 저작권이 홍길동에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든 아니면 미국에서든, 저작권은 ‘아이디어(idea)’를 보호하지 않고 ‘표현’을 보호합니다. 노래의 세세한 ‘표현’을 만든 사람은 홍길동이 아니므로, 홍길동은 저작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AI 개발업체가 저작권을 가질까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AI 개발업체가 생성형 AI가 AI 산출물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논리 구조와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노래의 구체적인 표현 자체의 창작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생성형 AI가 위 노래의 저작권을 가질까요? 한국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이나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인간이 아닌 AI는 저작권자가 되지 못하고, 이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생성형 AI로 만든 산출물은 언제나 ‘저작물’이 될 수 없고, 그 산출물을 만든 이용자는 언제나 산출물의 ‘저작권자’가 될 수 없다고 오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인간’이 생성형 AI에게 프롬프트로 명령을 할 때 매우 상세한 지시를 하고, 생성형 AI의 결과물에 대해 여러 차례 세세한 명령을 통해 수정을 지시하는 등 생성형 AI의 산출물이 탄생하는데 인간의 노력을 투입한다면, 이는 ‘저작물’이 될 수 있고 이 경우에 이용자는 AI 산출물의 ‘저작권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 번째 저작권 이슈는 회계적인 이슈와도 연결됩니다. 어느 기업이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수만 개의 이미지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기업이 위 라이브러리를 다른 회사에 판매하거나 라이선스를 주어 수익을 얻고 있다면, 위 라이브러리는 분명 기업에 경제적 이익을 안겨주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렇다면 위 라이브러리는 그 기업의 자산(저작물), 즉 그 기업이 배타적으로 통제하는 자산으로 재무제표에 기재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위 라이브러리가 ‘그 기업’의 저작물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생성형 AI는 다양한 법적 이슈를 낳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변호사와 회계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야 할 이슈도 많습니다. AI 개발업체, AI 이용자 등 일반 대중 모두 AI가 지닌 순기능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법률가, 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ACCOUNTANT에서 AICCOUNTANT로: 시와의 공존을 말하다!



Martin C. Park
CPA, California

mcparkcpa@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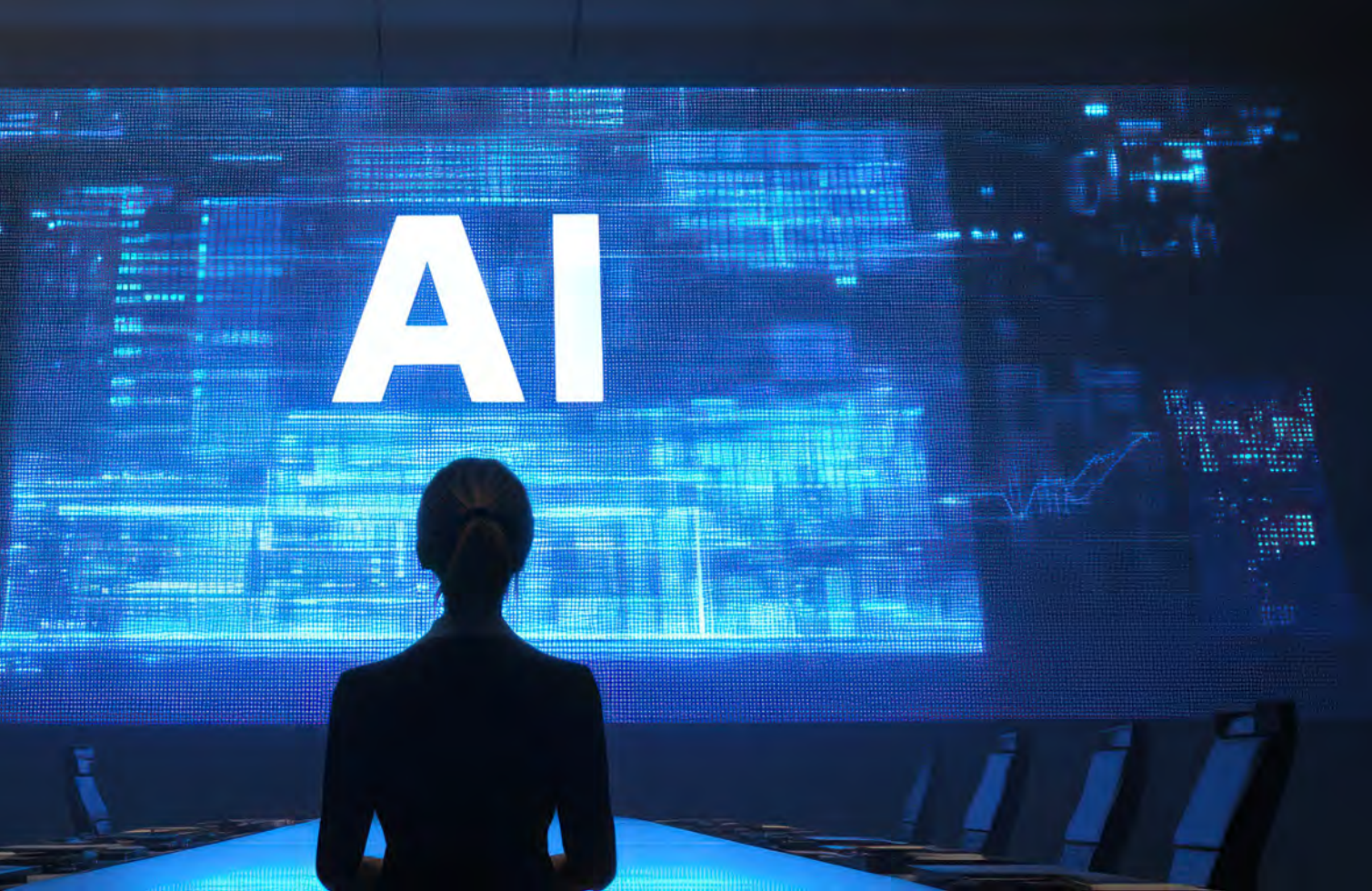
Accountant에게 AI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등장한 자동차는 마차를 점차 대체하기 시작했다. 자동차는 훨씬 빠르고, 더 멀리 운행할 수 있고, 비용도 저렴했다. 이런 자동차의 등장은 기존의 교통과 물류 수단인 마차 산업에 큰 위협이 되었다. 그러자 영국 같은 경우 마차 사업을 지키기 위해 자동차 속도를 제한하고, 깃발을 든 신호수가 자동차 앞에서 걸어야 하는 등 지금 생각하면 이해되지 않는 많은 규제를 도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는 대량 생산 기술이 도입되고, 성능이 개선되면서 마차는 사라지고 자동차가 주요 교통수단이 되었다.

백과사전이 서재의 책장을 채우던 시절이 있었다. 인터넷이 발전되면서 집단지성에 기반한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와 인터넷상에 넘쳐나는 지식들이 빠르게 종이 백과사전을 대체했다. 지금은 위키피디아가 없어질 위험에 처해있다.

AI는 지적 노동의 생산성 향상을 의미한다. 과거의 기술 발전은 대체적으로 공장과 같은 물질적 노동의 생산성 향상을 의미했다. 처음으로 지적 노동이 대체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AI로 인해서 무수한 직업이 종말의 위험을 받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AI가 지식인의 최고봉에 있는 회계사, 변호사, 의사 등의 직업들을 빠르게 대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요즘 대졸자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이런 현상은 경기의 영향이기보다는 AI 기술 혁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천개가 넘는 직업 중에 AI가 대체 못하는 직업은 40개 미만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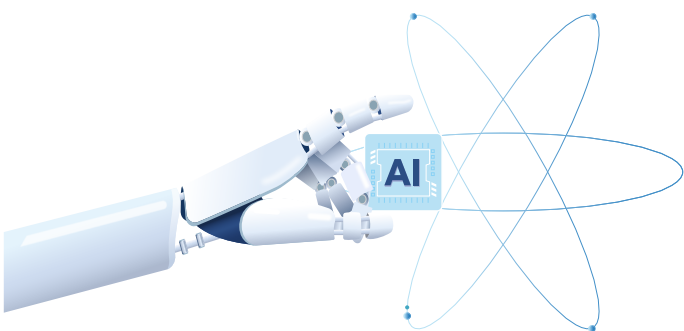
보통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 기술이 가져다 주는 편리함과 혜택 때문에 흥분하기 마련이지만, 최근의 AI기술발전은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하다.



써보면 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술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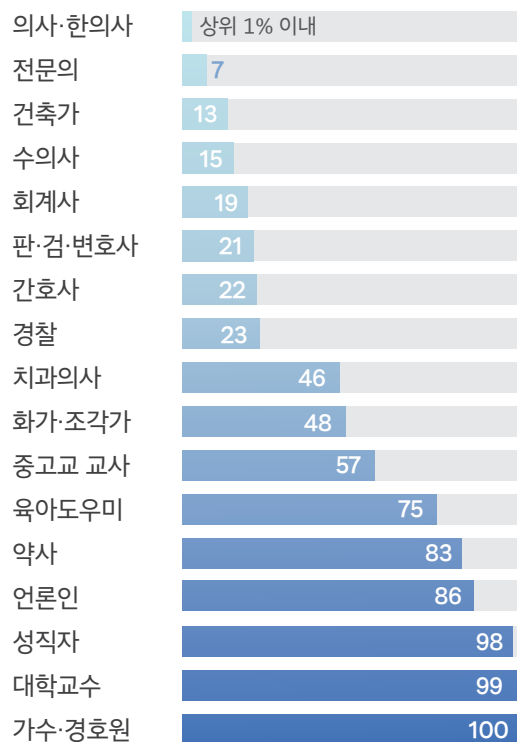
AI를 아직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쓴 사람은 없을 거다. 아직도 초기라고 하지만 AI가 이미 보여주는 능력과 잠재력은 어마어마 하다. AI는 이제 더 이상 사용을 해야 하는가 가 아니라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지를 고민해야 한다.

아 이러니 하지만 AI를 활용할 수록 직업이 대체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AI로 인해 효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수익이 높아지게 된다. 이제 AI는 꼭 필요한 기본기가 되어버렸다.



AI 대체 가능성 높은 직업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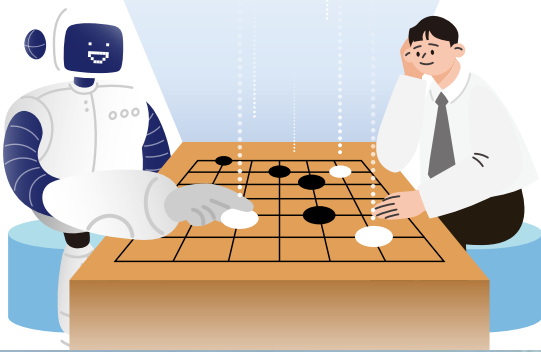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AI 발전과정

1996년에는 세계 체스 챔피언인 가리 카스파로프와 IBM의 슈퍼컴퓨터 딥블루의 체스 대결이 있었다. 이 대결에서 카스파로프가 승리한다. 하지만 그 다음 해에는 IBM의 슈퍼컴퓨터가 카스파로프에게 승리하게 된다.

20년후인 2016년에는 구글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알파고를 앞세워 이세돌 9단에게 도전한다. 그리고 이세돌 9단을 상대로 4승1패의 성적을 거둔다.



대중적인 AI service는 2022년 11월 30일 처음 출시된다. 이제 고작 3년밖에 되지 않았다. 물론 AI에 대한 이론과 연구는 훨씬 이전부터 있었다. 현재 우리가 흔히 말하는 AI는 ChatGPT와 그 이후에 나타난 AI 서비스를 말한다. 출발은 전혀 요란하지 않았다. 사실 ChatGPT의 시작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 그럼에도 요즘은 매일 AI 관련 뉴스를 접한다. AI는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이렇게 이미 눈앞에 와있다. 도무지 피할 수 없는 변화의 길목에 서있는 것이다. 이걸 위험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하다. 발전 방향은 준구 난방이고, 발전 속도가 더딘 것 같아서 먼 훗날 언젠가는 AI시대가 오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런 예상이 무색하게 AI는 빠른 속도로 이미 다가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서 기술변동의 폭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이런 큰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다.



AI가 바꾸는 Accountant의 업무 과정

영화 올드보이에서 주인공 오대수는 15년간 누군가에 의해 작은 공간에 가둬지게 된다. 그리고 어느 날 영문도 모른 채 풀려난다. 풀려날 때 왜 자신을 가뒀는지 물어본다. 그를 가뒀던 이우진은 이렇게 대답한다. “당신의 진짜 실수는 대답을 못 찾은 게 아냐. 자꾸 틀린 질문만 하니까 맞는 대답이 나올 리가 없잖아! 왜 이우진은 오대수를 가뒀을까, 가 아니라, 왜 풀어줬을까? 란 말이야!”

AI agent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을 나를 대신해서 해준다. AI와 Google같은 search engine은 비행기 스케줄을 찾아달라고 하면 자료를 찾아주고 정리해 준다. AI agent는 한발 더 나아가 필요한 일을 대신 실행해 준다. AI의 활용도를 엄청나게 높이게 된다.

AI를 잘 활용할 수 있으려면 사용자의 질문 능력이 중요하다. 좋은 질문은 많은 지식 그리고 풍부한 경험에서 비롯된다. AI로부터 좋은 답을 이끌어 내려면 질문은 정확해야 하고, 창의적이어 하고, 주제를 좁게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때로는 AI에게 어떤 질문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2025년 6월16일 AICPA Townhall Meeting에서 회계업계의 AI도입 상황과 관련해서 다루었다. Bookkeeping은 이미 상당부분 AI를 이용하고 있고, AI agent 기술이 도입되면 완전 자동화가 될 거로 예상했다. Tax분야와 관련해서는 AI로 인해 자동화가 상당히 진척되는 분야이며, 세금보고 준비과정은 거의 완전 자동화가 되어가고 있으며, AI를 활용한 세금보고에 대한 리뷰가 증가하고 있다. 회계감사와 리스크 분석 관련해서는 회계규정준수(compliance)와 책임 (liability) 문제 때문에 조심스럽게 도입이 되고 있다고 한다.

Advisory service분야는 AI가 제공하는 통찰력이 힘을 발휘하면 많은 성장을 제공한다고 한다. 업무 과정에는 AI가 전문야 어디든지 사용될 것이라고 한다.

AI는 많은 데이터를 학습해서 패턴을 찾아낸다. 기존의 회계감사에서는 모든 거래 내용을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sampling을 해서 제한된 숫자의 내용을 테스트 한다. 하지만 AI를 활용한다면, 많은 데이터라도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어쩌면 더 이상 audit sampling이 필요하지 않거나 조금 더 효과적인 sampling이 가능할 것 같다. AI를 활용해서 financial statements를 분석하거나, 다양한 industry data와 비교하게 되면 기존에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했던 통찰과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다.

최근 MIT 대학의 Chloe Xie교수와 Stanford 대학의 최정호 교수팀이 79개의 중소기업들의 회계기록을 분석해서 AI가 회계업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AI를 사용함에 따라 회계사가 업무에 사용하는 시간의 8.5%를 단순반복 작업에서 좀 더 가치가 높은 업무로 전환할 수 있었다. 회계품질도 높아졌으며 좀더 디테일한 회계장부를 만들 수 있었다. 매달 회계결산에 투입하는 시간도 7.5일이나 절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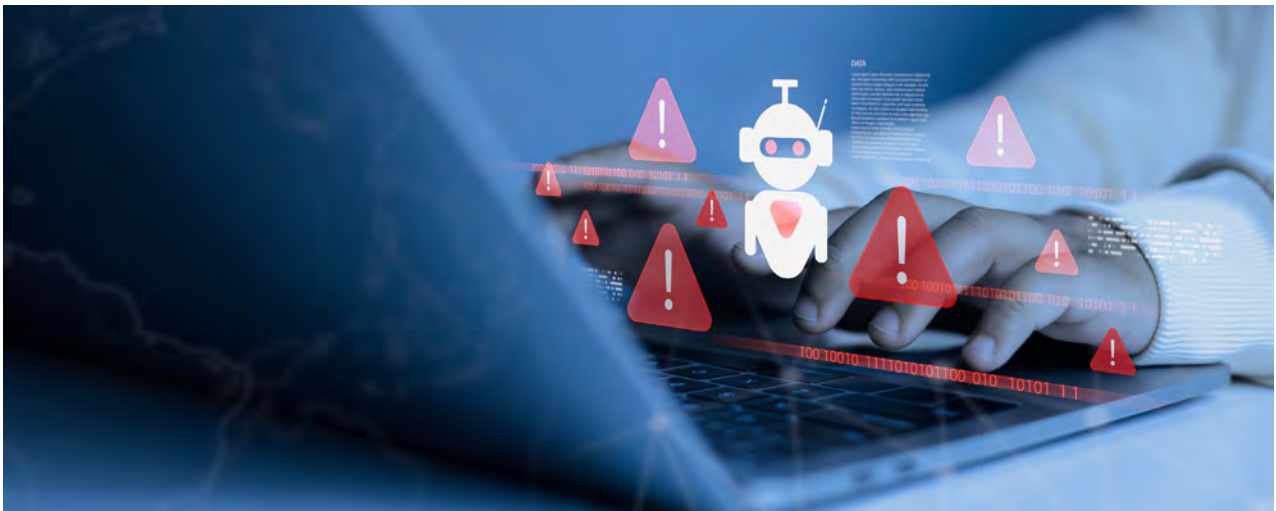
Thomson Reuters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재정 전문가들은 tax research가 AI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분야라고 한다. 또한 회계사들에게 답을 찾는 과정에 “숫컷”을 제공하게 된다고 한다. 그럼에도 사람만이 판단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은 바뀌어도, 회계사를 대체하는 것은 어렵다고 한다.

AI를 활용한 생산성은 team-mate처럼 대할 때 극대화된다. 그래서 사용한다기 보다는 협업이라고 표현해야 한다. 즉, spreadsheet 프로그램 Excel은 사용을 하지만, ChatGPT와는 한사람의 동료처럼 협업을 하는 거다.

AI 활용에 따른 리스크도 존재한다. 아직 도입을 망설이는 기본적인 이유는 결과의 질적인 문제와 프라이버시 및 보안 문제 때문이다. 질적인 문제는 오답의 가능성을 말한다. AI를 사용하다 보면 종종 오답을 받게 되는데, 이때 AI가 답변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속기 쉬울 수 있다. 이것을 ‘hallucinations’라고 한다. 또한 답변의 출처가 primary source가 아닌 경우 정답으로 인정받기 힘들 수 있다. 이점은 회계와 세법 분야처럼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라면 특히 중요한 사항이다. 최근에는 뉴욕과 유타 등에서 변호사들이 재판에 제출한 판례가 AI가 만들어낸 가짜 케이스여서 문제가 된 적이 있다. 프라이버시 및 보안 문제는 외부 AI에게 회사내부정보나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이다. 회계사들의 고객 정보가 외부의 AI를 통해 유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2023년에 삼성의 한 엔지니어가 회사의 중요한 내부 정보를 실수로 ChatGPT에 업로딩 하게 된다. 이렇게 누출된 정보는 사실 상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마존에서는 내부정부가 유출된 것을 의심하고 AI 사용을 금지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는 보안등의 문제로 AI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AI를 team-mate처럼 대하다 보면 기능적인 관계를 넘어 정서적이 관계가 가능해진다. 이것은 상당한 장점이 될 수 있지만, 개인주의를 넘어 각 개개인이 고립될 수도 있다. 또한 사회적 격차를 더 크게 벌여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 생산성 향상이 5%, 20% 정도가 아닌 5배 20배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생산성 향상의 수준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 업무 프로세스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일수록 활용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상당한 이익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어, 경제적인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 많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AI를 잘 활용하게 되면, 전반적인 업무과정을 개선할 수 있고,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그리고 결과적으로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Accountant의 미래 ‘Alccountant’

빌 게이트는 얼마전 인터뷰에서 인간은 일을 하려고 태어나지 않았다고 했다. 지금과 반대로 주말은 5일로 늘어나고, 단지 2일만 일하게 된다고 한다. 그가 전망하기를 2개 직종은 AI로 빠르게 대체된다고 했는데, 그 2개 직종은 의사와 교사이다. 그리고 3개 직종은 앞으로도 살아남을 거라고 전망했다. 그 3개 직종은 생물학자, 에너지 전문가, 프로그래머이다.

기술의 발전이 특히 AI처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충격이 큰 경우 개인이 미리 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제도적인 보완이 되어서 그 충격을 흡수하려면 많은 시간이 지나야 한다. 특히 윤리와 관련되어서도 여러 계층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현재 도입을 망설이더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서비스하는 회계, 세무, 컨설팅의 영역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AI가 반드시 사용될 것이다. 이것은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결국 단순 업무 등은 모두 자동화될 것이고, 우리는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매일 어제 보다 나은 AI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통찰력과 창의력이다. 빌 게이트가 살아남을 거라고 한 3개 직업의 공통점은 모두 경험에 바탕한 통찰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통찰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내고 성장하는 것은 오로지 인간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Accountant에서 Alccountant로 변신해야 한다. 아무도 정확히 미래를 알려줄 수는 없다. AI 발전은 AI가 아니라 인간의 창의력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누군가의 전망은 아래 사진에 나온 기사처럼 먼 훗날 돌아보면 “매우” 정확할 수도 있겠다.

아래는 (사진 참조) 72년 전인 1953년 4월 한 전화 회사의 CEO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래의 전화에 대해서 전망한 AP통신 기사의 일부이다.

“In its final development, the telephone will be carried about by the individual, perhaps as we carry a watch today. It probably will require no dial or equivalent, and I think the users will be able to see each other, if they want, as they talk. Who knows but what it may actually translate from one language to another?”

There'll Be No Escape in Future From Telephones (1953)



변화의 기차 안에 탄 회계사에게



Byung Chan Ahn
CPA, California

abc@abccpas.com
KASCPA 회장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다. 나만 변하지 않는다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

한 초로 회계사의 고루한 고백처럼 들릴 수 있는 이 말은, 수십 년 동안 수도 없이 들어온 흔한 푸념 같지만, 여전히 유효한 현실의 직시다.

이 회계사는 한때 스마트폰도 꺼리던 사람이었다. 전화와 문자만 가능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스마트폰도 억지로 바꾸고, 꼭 필요한 전화와 문자 이외에는 되도록 피하고 살았다. 주변 사람들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고, 사진을 주고받고, 유튜브도 보고, 인스타그램, 틱톡, 그리고 페이스북으로 멀리 있는 친구들 소식도 실시간으로 알고 있다. 이 회계사는 그런 걸 보며 ‘개가 빠다귀 값는 소리’쯤으로 여겼다. 도대체 저건 왜 해야 하지?

하지만 결국 그도 최신 스마트폰을 손에 들게 되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리고 마지못해 몇 가지 기능을 배우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니, 이런 게 있었어? 그동안 나는 뭐하고 있었던 거지?”

이건 시골 할아버지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바로 60대 초반, 수십 년간 회계업에 몸담은 한 회계사의 이야기다. 그는 지금도 많은 업무를 수기로 처리하고 있다. 회계 시스템도 여전히 과거의 매뉴얼 방식 그대로다. 새롭게 변하는 기술에는 별 관심도 없었고, 그렇게 담을 쌓고 지낸 삶이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회계사는 고객을 위한 직업이다.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 보다 중요한 건, 고객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 가를 파악하고 그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이다. 그들의 사업 방식이 변하고 있고, 그들은 점점 더 빠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 회계사도 변해야 한다.

내가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땐, 종이에 인쇄된 instruction을 보며 10-key 계산기로 숫자를 입력하고, 소득세 신고서를 연필로 작성한 뒤 복사해서 IRS에 우편으로 제출했다.

선배 회계사들은 택스 시즌이면 사무실에 간이침대를 두고 밤을 새우며 일했다고 자랑처럼 얘기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다.

모든 고객 데이터는 로컬 하드디스크가 아닌 클라우드에 저장된다. 이는 단순한 저장 방식의 변화가 아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 접속하고, 더 강력한 보안으로 데이터를 보호하며, 업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뜻이다.

참고로 필자는 본 회계법인의 시스템을 2023년도에 AWS Cloud 기반으로 전면 전환하였다.

덕분에 전 직원이 리모트로 근무하는 환경에서도, 마치 한 사무실에 있는 것처럼 자료를 함께 열람하고, 저장하고, 실시간으로 작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직원들은 따로 사무실 서버나 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할 필요 없이, Google 계정에 로그인하듯 간단히 클라우드 환경에 접속해 모든 회계 및 세무 시스템을 이용한다. QuickBooks는 물론 소득세신고 프로그램인 Proseries 도 Cloud 기반에서 연동이 원활 해서 마치 내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잘 작동된다. 따라서 사무실에는 별도의 서버가 없고, 고객 상담용 공용 컴퓨터만 몇 대 비치되어 있을 뿐이다. 직원들이 출근할 경우에도 본인의 노트북만 들고 오면 된다. 이러한 방식은 공간과 장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업무 유연성과 보안을 강화하는 큰 전환점이 되었다.

AI도 이미 회계업무 깊숙이 들어와 있다.

영수증 자동 인식, 비용의 자동 계정 분류, 세금 보고서 자동 생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도입됐다.

고객 질문에 대한 응답조차, 이제는 챗봇이나 플랫폼을 통해 대부분 해결이 가능하다.

예전엔 Excel과 Word를 잘 다루는 능력, 10-key를 빠르게 치는 능력이 실무 능력의 기준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클라우드, 자동화 플랫폼, 연동 API*, 디지털 보안 이해도가 실무 역량의 기준이 되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요즘은 조금 버겁다.

나는 비교적 신기술에 빨리 적응해온 편이지만, 이제는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새로운 도구와 시스템들 앞에서 ‘아, 나도 늙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중요한 건, 늙는 게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도 나는 그대로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다.

나는 지금 달리는 기차 안에 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상은 빠른 속도로 나를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이런 기술 따라잡기가 어떨 땐 귀찮지만, 한 발 내딛고 보면 새로운 기회가 보였다.

우리는 ‘변해야 산다’는 말을 몇 십 년째 듣고 있다. 그런데 그 말,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회계사처럼 시대의 흐름과 고객의 현실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해야 하는 직업군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변화는 거스를 수 없다. 하지만 방향을 잡고 탈 수는 있다.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나는 오늘도 다시 한 번 기술을 배운다.

그리고 그렇게, 나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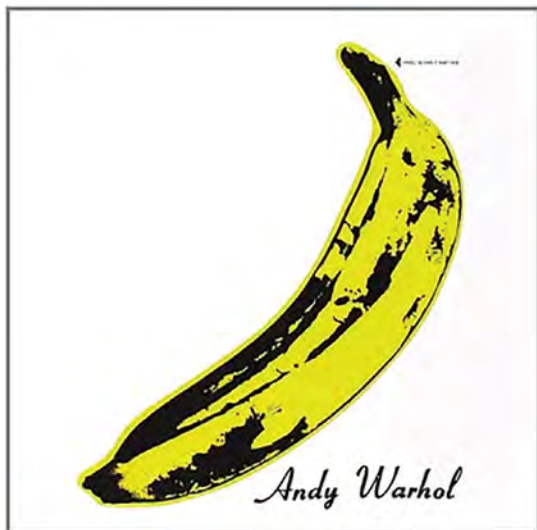
*API: Application programing interface는 응용프로그램과 시스템 간의 통신을 위한 인터페이스

Kanye and Geor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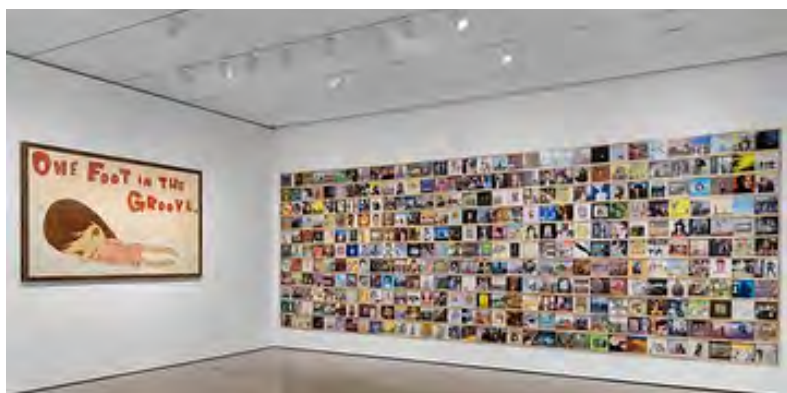


Music and art have always had a connection. In modern times, musicians often engage artists to create album cover art. An example was Andy Warhol's print of a banana serving as the cover for *The Velvet Underground & Nico* in 1967.

The Japanese artist Yoshitomo Nara is known for his love of music, especially rock, punk and folk. When his exhibition came to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in the spring of 2021, a playlist was made available so visitors could stream it while viewing his work of art.



The first room looked like this, with actual covers from his album collection serving as an art piece in its own right:



Nara himself has been responsible for creating album covers and videos for many bands, inclu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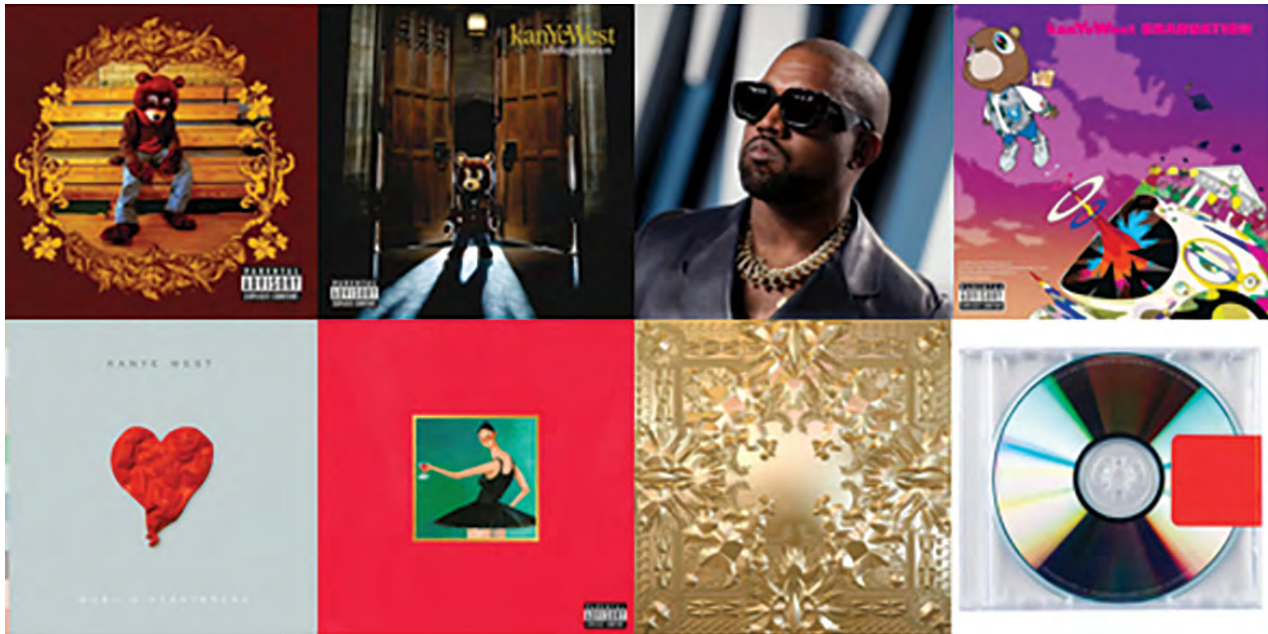
1. Shonen Knife, an all-girl pop-punk band from Osaka, Japan, gained international fame when Kurt Cobain, a longtime fan, personally invited them to open for Nirvana.
2. Bloodthirsty Butchers, an indie/punk band from Sapporo, Japan, broke up when their front man died in 2013.
3. R.E.M., the iconic alternative rock band from Athens, Georgia, collaborated with Nara to release an animated music video for the song "I'll Take the Rain" from their 12th studio album *Reveal*.



He even did one for a Ramones tribute album.

A more recent partnership was with the rapper/producer Kanye West and George Condo, a visual artist who works in painting, drawing, sculpture, and printmaking.

As with many influential and important music artists, Kanye had a “classic period” that encompasses his first seven albums, including an extended collaboration with Jay-Z. He has often been identified by the press and fellow musicians 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hip-hop music and an inspiration for other rappers to take more creative risks with productions.



In particular, *My Beautiful Dark Twisted Fantasy*, released in 2010, stands out, not only for Kanye, but as one of the best and most influential albums across all of popular music at the time. It received universal acclaim from fans and critics alike, but also generated comments like “nobody halfway sane could have made this album.”¹

The album was recorded after a particularly controversial period for Kanye. During the 2009 MTV Video Music Awards, he went on stage as Taylor Swift was giving her acceptance speech for winning the best female video award for “You Belong with Me”. He grabbed her mike and declared, not once but twice, that “Beyonce had one of the best videos of all time!”² He was loudly booed and was promptly removed from the show. Condemnations came fast and furious, including no less than two U.S. Presidents, Barack Obama and Jimmy Carter.

¹ Rob Sheffield of the Rolling Stone

² CNN



In response, Kanye retreated to a self-imposed exile in Hawaii. There, he recorded his masterpiece with input from many prominent artists and producers, including Jay-Z, John Legend, Rihanna, Chris Rock, Nicki Minaj (who stole the show with her verse on “Monster”), Bon Iver, Elton John, RZA, Mike Dean, Rick Ross and No I.D.

Leaning heavily on maximalist aesthetics, Kanye incorporated various elements and influences from his previous work, including progressive rock (“Power” has a killer sample of King Crimson’s “21st Century Schizoid Man”), soul, electro-funk, baroque instrumentation, heavy metal (“Hell of a Life” was clearly inspired by Black Sabbath’s “Iron Man” and the riff is used heavily), as well as classical mus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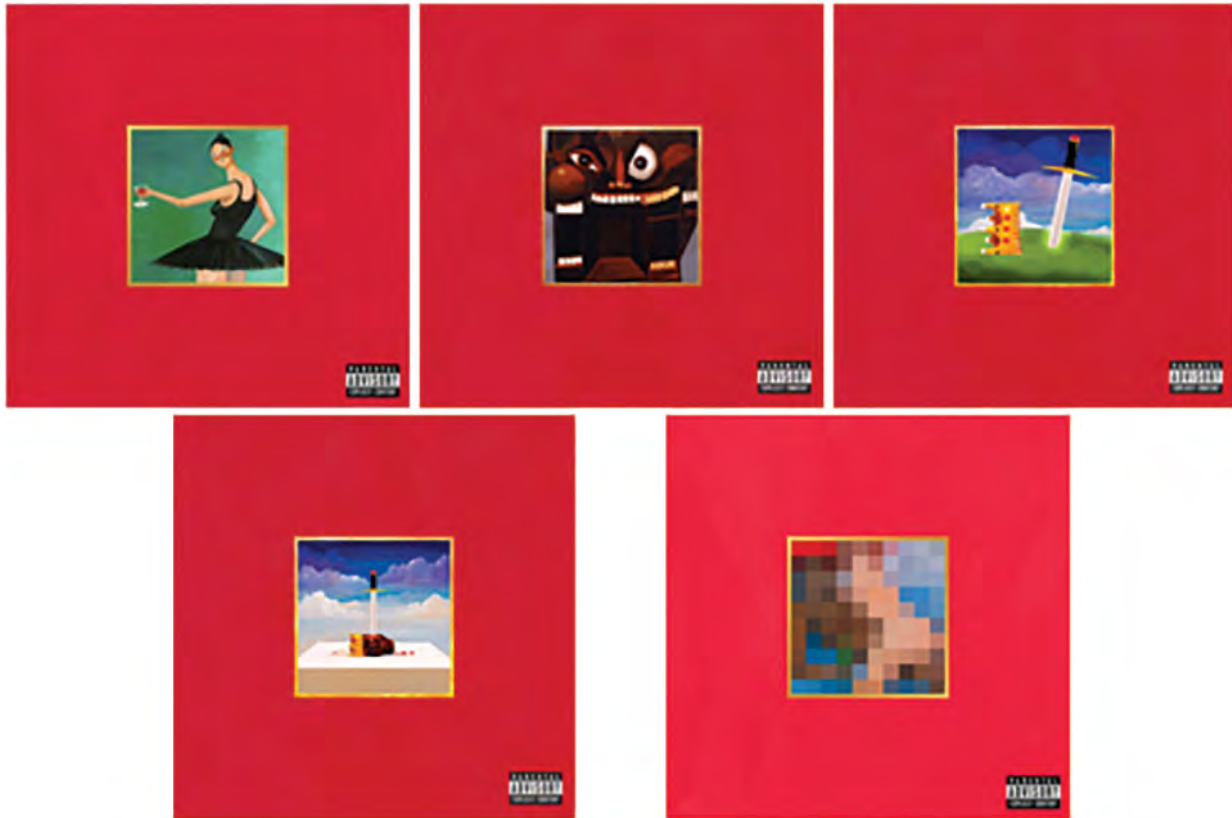
Such an important album requires an important artist to create a worthy cover art. Kanye’s choice was George Condo, who has a musical background. Condo studied various instruments when young and majored in musical theory in college. As an art student in Boston during the late-70s, he played bass and electric viola in a punk band, the Girls. While playing a gig in New York, he met Jean-Michel Basquiat, who was also playing that night with a band called Gray. The two artists/musicians developed a bond and “became good friends.”³ Condo then moved to New York and became a full-time artist. During the early-80s, he worked at Andy Warhol’s Factory.

Here's Condo describing his experience working with Kanye:

It's great to have Kanye West to collaborate with. He works off my paintings and my paintings work off his music. He does in music a lot of the stuff I do in painting sampling, appropriating, presencing. He doesn't think of himself as a hip-hop artist but as an artist. Even his public persona is part of that art it's another instrument he plays. (theguardian.com)

Kanye and Condo met several times during the process. During the visits, the two listened to Kanye’s music and brainstormed ideas for Condo to create. Their collaboration resulted in eight to nine paintings. Five of them were selected to function as interchangeable album covers that are included with each album.

³ George Condo The New Yorker



NOTE: Due to the explicit nature, the fifth cover has been pixelized.

According to the New Yorker, Condo stated that Kanye was looking for “something that will be banned.”⁴ Anyone who has followed Kanye would not be surprised by such comments. He certainly took advantage when Apple, Target and Walmart (though denied by Walmart) banned the album covers and tweeted: “Yoooo they banned my album cover!!!! Banned in the USA!!! They don't want me chilling on the couch with my Phoenix!”⁵ Condo also benefited as the noise swept through the internet and exposed his art to Kanye’s 2¼ million followers.

As with many aspects of Kanye’s life, *My Beautiful Dark Twisted Fantasy*, arguably him at the peak of his power, has also been tumultuous, but the result has been highly creative and entertaining. As a companion piece to Kanye’s music, Condo’s artwork has also been controversial, engaging and amusing and just like *Fantasy*, a true original.

⁴ The New Yorker

⁵ The Guardian

Bibliography

- <https://www.artnet.com/artists/george-condo/biography>
- <https://www.avclub.com/kanye-west-my-beautiful-dark-twisted-fantasy-1798166605>
- <https://blue-vagabond.com/2021/06/12/yoshitomo-nara-kawaii-with-a-dark-twist/>
- <https://www.theguardian.com/artanddesign/2014/feb/10/george-condo>
- <https://www.theguardian.com/music/2011/jan/11/kanye-west-album-cover#:~:text=Kanye%20West%27s%20provocative%20album%20cover,publicity%20stunt%20by%20Kanye%20West.>
- <https://www.hauserwirth.com/artists/26942-george-condo/>
- <https://hypebeast.com/2010/11/new-york-magazine-george-condo-explains-his-five-covers-for-kanye-wests-twisted-fantasy>
- <https://www.mtv.com/news/a4m0ba/kanye-west-my-beautiful-dark-twisted-fantasy-hell-of-a-life>
- <https://www.newyorker.com/magazine/2011/01/17/portraits-of-imaginary-people>
- <https://pitchfork.com/news/40616-kanye-west-reveals-multiple-album-covers/>
- <https://ohnotheydidnt.livejournal.com/55547132.html>
- <https://pitchfork.com/reviews/albums/14880-my-beautiful-dark-twisted-fantasy/>
- <https://www.sartle.com/blog/post/the-george-condo-and-kanye-west-collaboration>
- <https://www.soundoflife.com/blogs/people/the-most-expensive-artist-in-japan-talks-music-yoshitomo-nara-and-his-love-for-rock-punk-folk>
- https://www.vulture.com/2010/11/kanye_george_condo.html
- https://www.washingtonpost.com/lifestyle/style/a-dark-twisted-fantasy-revealed/2011/02/17/ABQo8aJ_story.html

William Lee
CPA, California

wxlee33@gmail.com



한국인은 너무 친절하다!?

어느 외국인 교수가 자신의 눈에 비친 한국인의 이미지에 관해 다음과 같이 평했다고 한다.
 한국인은 너무 친절하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판단하면 오해다.
 권력이 있거나 유명한 사람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친절하지만,
 자기보다 약하거나 힘없는 서민에게는 거만하기 짝이 없어서 놀랄 때가 많다.
 이와 같이 사회적 지위와 직함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 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호텔 백화점 등에서 옷차림이나 상대방의 외모에 따라 점원들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배운 사람 일수록 겸손해야 하는데 오히려 건방을 댈다. 지식은 많은데 지혜롭지가 못하다.
 말은 유식한데 행동은 무식하기 짝이 없다. 재산이 사람평가의 기준이다.
 역이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돈없이 한국에서 살면 사람 취급 제대로 못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미국에서 재산 몽땅 정리해도 한국에서는 아파트 하나 사기 힘들다. 성공의 의미가 너무 좁다.
 몇 평짜리 아파트 사느냐, 강남에 사느냐 강북에 사느냐가 사람 평가의 기준이다.
 돈 있고 잘 사는 데도 자기보다 더 잘사는 사람을 부러워 하며 항상 뭐가 불만족이다.

한국인을 가르켜 포커페이스라고 부른다. 무표정한 얼굴, 굳은 얼굴, 미소가 없는 얼굴을 말한다.
 한국인은 세계적으로 미소가 인색하기로 유명하다.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들끼리
 서로 눈이 마주칠 때 서로 웃고 인사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



엘리베이터 같은 작은 공간에서 서로 마주치면 어색한 표정을 짓거나 딴 데를 본다.
예쁜 여자에게 미소라도 지으면 아예 못 본척하거나 무슨 변태라도 만난듯이 얼굴을 찌푸리며
얼굴을 돌려버린다.

코로나등으로 연기하였던 한국여행을 6년만에 다니러 갔다.
오랫만에 접한 한국이 얼마나 변했을까? 지하철 역에서 곤란한 경험을 했다.
종로3가에서 내려 단성사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출구 번호를 알수 없었다.
지하철역에서 내리면 출구 번호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노점에 있는 아줌마에게 물었더니 귀찮다는 듯이 고개만 돌려 저쪽으로 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돌아서는 나의 등뒤에 다 대고 "물건이나 하나 팔아 주며 묻지"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길을 물으면 대수롭지 않게 통명스럽게 대했다.
지하철은 너무 잘 되어 사방 팔방 뻗어 있는데 유인 개표소도 없고 역무원 조차 보이지 않았다.
모두가 디지털로 되어 있다. 생소한 외국인에게는 여간 불편한게 아니다.
대한민국의 수준은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외국어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친절함을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는 범국가적인 친절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K-스마일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한다.
'한국이 웃으면 세계가 웃는다'를
모토로.



한국인들은 왜 골프에 열광할까요?



James Shin
대표

go@us4seasongolf.com
4 SEASONS GOLF TOUR



“공 하나 치는 건데, 왜 이렇게 열을 올려?”

골프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하죠.

“한 번 빠져보시면,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골프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그건 마치 초콜릿을 한 입 먹고 참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한 번 시작하면 끝없이 빠져드는, 중독성 강한 ‘운동 아닌 인생’ 이죠.

시작은 미미했지만, 끝은 창대하리니... 처음엔 누구나 그렇습니다.

공은 어디로 튈지 모르고, 스윙은 춤을 추듯 엉성하며, 티박스에서 허공만 휘두르다 ‘마상(마음의 상처)’을

안고 돌아오는 날도 많죠. “나는 골프랑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포기하려는 찰나,

공이 ‘ 짹~ ’ 하고 시원하게 날아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골프였구나...”

감동의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흐르고, 그날부터 진짜 골프 인생이 시작됩니다.

골프는 사람을 바꿉니다

라운드 후 클럽하우스에서 마시는 생맥주 한 잔, 왜 그렇게 꿀맛일까요?

스코어는 엉망이어도, 동료들과의 수다는 언제나 유쾌하고 따뜻합니다.

이 모든 순간이 골프를 단순한 운동이 아닌 ‘삶의 경험’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골프에 이토록 진심인 민족, 바로 우리 한국인입니다.

클럽 하나 바뀌어서 비거리 10야드 늘었다며 자랑하고, 밤새 자신의 스윙을 리플레이하며 분석하는 사람들—

네, 저도 포함입니다.

골프여행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MASTERS와 같은 골프 경기를 보다 보면, 그림 같은 골프장의 모습에 반하게 됩니다.
관리가 잘되어 있고 주변 자연 경관이 수려한 골프장을 보면 언젠가 한번 꼭 가봐 야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LPGA를 제패한 한국 여성 선수들, PGA에서 실력을 증명하는 한국 남자 선수들.
그들의 활약하는 골프대회를 보면서 저를 포함해 많은 한국인들이 영감을 받고,
어느덧 '세계 100대 유명 골프코스 정복'을 꿈꿉니다.
“죽기 전에 페블비치, 세인트 앤드루스는 꼭 쳐보아야지.” 이젠 버킷리스트에도 골프장이 등장하는 시대입니다.
저는 골프를 정말 좋아하고, 35년째 즐기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의 골프장을 다니는 여행을 즐겨 합니다.
골프 여행을 자주 다니다 보니 각 나라의 독특한 매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니뭐니 해도 미국은 정말 골프의 천국입니다. 미국에는 약 16,000개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골프 공화국이죠. 수많은 골프 장 중에서 몇 곳만 꼽아 보지요.



페블비치



샌앤드루스 호텔과 18홀

캘리포니아에서는 누가 뭐래도 페블비치가 최고입니다.
PGA 투어의 상징과 같은 곳입니다.
페블비치의 빼어난 경관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오레곤에는 골프 좀 좋아한다는 분들은 다 아는
밴던튤스가 있습니다. 모래언덕 위에 지어진 예술입니다.
그저 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TPC 소그래스를 최고로 꼽을 수 있습
니다. 아일랜드 그린, 한 번쯤 공이 빠져줘야 하지 않을
까요? 주말TV에서 투어 중계를 보다 보면 수많은 프로
선수들조차도 종종 물에 넣곤 합니다.
유타에서는 샌드 할로우가 대표입니다.
붉은 협곡 속 오아시스 같은 코스입니다.
제가 유타 샌드 할로우에서 플레이했을 땐 세찬 바람에
공이 모래먼지와 함께 사라지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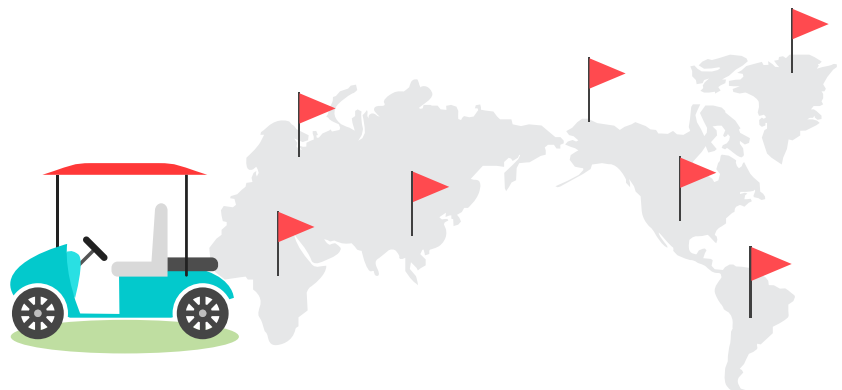
그때 동반자가 웃으며 말했죠.
“풍류지야, OB 아니야.”
이렇게 골프는 사람 사이에 추억을 남기는
스포츠입니다.



유럽에 가면 사뭇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유럽의 명문 골프 코스 중에는 공인 핸디캡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는 그만큼 골프에 대한 자부심과 전통, 실력 중심의 운영 방침이 살아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아일랜드의 로열 카운티 다운은 세계 랭킹 1위에 빛나는 링크스 코스입니다. 이곳에는 전동 카트가 없습니다. 무조건 도보 플레이만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카트를 이용하려면 의사의 공식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골프 정신과 체력, 인내심까지 모두 시험 받는 진정한 성지라 불릴 만한 곳입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코스가 바로 로열 포트러시 골프클럽입니다. '디 오픈(The Open)' 개최지로도 유명한 이곳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저는 이 코스에서 한 홀에 공을 다섯 개나 잃어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골프 인생 중 가장 난이도 높은 라운드였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골프의 발상지 스코틀랜드로 가볼까요?

세인트 앤드루스 올드코스는 말 그대로 모든 골퍼들의 버킷리스트 1순위로 꼽히며, 단 한 번의 라운드 만으로도 평생 회자될 경험이 되는 곳입니다. 비싼 비용과 14시간 넘는 긴 비행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의 골퍼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오직 하나— "한 번은 반드시 올드코스를 쳐야 한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코틀랜드의 날씨는 정말 예측불가, 그야말로 변덕 끝판왕입니다. 미국처럼 '레인 체크(우천 시 환불)' 제도도 없기 때문에, 골퍼들은 전날 밤 올드코스를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곤 하죠.

태양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속삭일 뿐입니다:

“제발… 내일은 비만 오지 않게 해주세요…”

티타임은 추첨제로 배정되며, 원하는 날짜에 라운드를 하려면 1년 전 사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숙소조차 경쟁이 치열할 정도죠.

이 모든 요소들이 바로, 세인트 앤드루스가 왜 ‘골프 성지’ 인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세인트 앤드루스 올드코스

남유럽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미식과 골프가 공존하는 나라들입니다.

스페인 은 존람, 서지오 가르시아와 같은 많은 유명 투어플레이어를 배출한 나라입니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북부 지로나는 미쉐린 레스토랑, 와이너리, 그리고 스페인 랭킹 2위 카미랄 골프클럽이 있습니다. 예술과 자연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곳입니다.

포르투갈에는 오이타보스 둔스가 기억에 남습니다. 대서양 바람을 맞으며 즐겼던 라운드. 절경 속에서 치는 골프는 말 그대로 황홀경입니다. 포르투갈에서 마신 \$10짜리 와인은 미국에서 \$100 이상 받아도 손색없는 맛이었습니다. "와인보다 골프를 먼저 시작한 게 다행이야"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감성 가득한 남유럽 골프에 이탈리아도 빠질 수 없지요.

“이탈리아에서도 골프를 쳐요?”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피자과 파스타 그리고 오래된 유명 문화유산은 쉽게 떠올려도 골프를 이탈리아와 연결 짓기는 쉽지 않습니다. 라이더컵도 개최한 국가입니다. 좋은 골프장들이 많습니다. 토스카나 언덕 위 고풍스러운 리조트와 로마, 나폴리, 베네치아를 잇는 풍경이 더해지면 흔히 말하는 ‘갬성’ 그 자체가 됩니다.

프랑스에는 그 유명한 에비앙 리조트가 있습니다. 에비앙은 만년설에서 나오는 최고의 생수로도 유명합니다. 제네바 호수를 끼고 있는 LPGA 메이저 대회 개최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전엔 라운드, 오후엔 와인 한잔, 저녁엔 에펠탑 아래 디너가 모두 가능한 곳입니다.

불가리아는 유럽의 숨은 보석 같은 곳입니다. 흑해 절벽 위에 자리한 트라시안 클리프는 게리 플레이어의 설계했습니다. 이 코스는 한 홀만 봐도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여기서 OB 나도 좋아.”

그 정도로 압도적인 풍경과 감동이 있는 코스죠. 요구르트와 장미 오일의 나라 불가리아에서 이토록 감성적인 라운드를 즐길 줄 누가 알았을까요?



트라시안 골프코스 불가리아

지금까지 소개한 유럽 국가들 외에도 터키, 그리스에도 좋은 곳들이 많습니다. 특히 터키 안탈리아는 유럽 최고의 가성비 골프가 가능한 리조트입니다. '신들의 놀이터'로 불릴 만큼 자연과 호텔, 음식이 완벽한 곳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한 달 살기 골프여행지로도 인기 상승 중입니다. 그리스에서는 코스타 나바리노의 올림픽 코스, 베이 코스, 뉘스 코스, 오션 코스 등은 세계 최고급 리조트와 절경이 어우러진 골프 여행지입니다.

한국 드라마 '프라하의 연인'이 촬영되었던 체코 프라하는 "동유럽의 파리"로 불릴 만큼 로맨틱하고 예술적인 도시입니다. 중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곳입니다.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아르누보 등 다양한 건축 양식을 모두 한 도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프라하에는 전통 양조장과 펍이 많습니다. 1인당 맥주 소비는 세계 1위입니다. 이처럼 즐길 거리도 많고, 동유럽 골프의 중심지라고 해도 좋을 만큼 PGA 급 코스들이 잘 되어있어 깜짝 놀랍니다.

사파리와 골프의 색다른 만남. "동물이 공을 주워가면 무벌타인가요?"

이런 농담도 오가는, 특별한 골프 여행지가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와 모로코입니다. 남아프리카는 많은 세계적인 프로 골퍼들을 배출했습니다. 메이저 9승에 빛나는 전설적인 골퍼인 게리 플레이어, 메이저 4승과 함께 너무 스윙이 부드러워 BIG EASY로 불리는 어니엘스, 퍼팅이 정교했던 레티프 구슨 등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골프는 도전, 누군가에겐 치유,

누군가에겐 평생을 함께할 취미입니다.

세상은 넓고, 라운드할 코스는 너무도 많습니다.

골프는 결국, '나 자신과 떠나는 가장 멋진 여행'입니다.

글 | James Shin 대표 | 4 SEASONS GOLF TOUR President | GOLF TOURISM AMERICA INC

전공 | Golf Management @ San Diego Golf Academy 전공 | Golf Course Civil Engineering (PGA A Pro) 세계 100대 골프코스 투어 설계 전문가

세계 골프여행은 포시즌 골프투어와 함께



상상 그 이상의 골프여행
골프여행 전문기업, 포시즌 골프투어
당신이 꿈꿔온 그 라운드, 포시즌이 현실로 만듭니다.

페블비치 BEST 패키지

The Links at Spanish Bay
Spyglass Hill
Pebble Beach Golf Links
Del Monte

2박 2라운드	\$2,780 ~ PP
3박 3라운드	\$3,880 ~ PP
4박 4라운드	\$4,740 ~ PP

스코틀랜드 프리미엄 골프여행

ST ANDREWS 패키지 7박 5라운드
\$9,900 ~ \$15,000 PP + 항공
월드 코스 및 디오운 국가 코스 방문
트윙프 린베리 패키지 5박 4라운드
\$6,900 ~ PP + 항공
트윙프 에버딘 패키지 5박 4라운드
\$6,900 ~ PP + 항공

불가리아 무제한 골프여행

7박 5라운드
불가리아 랭킹 1, 2, 3위 코스
유럽의 보석 흑해의 골프 여행
\$2,875 ~ PP + 항공

로스카보스 하이엔드 골프투어

올 인클루시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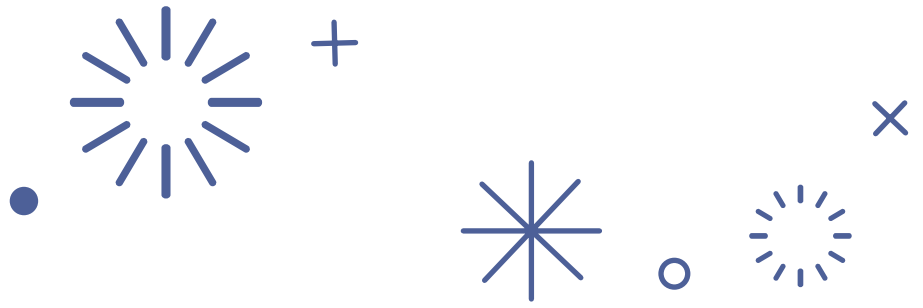
3박4일 골프 2회 + 보트투어	\$2,490 / 인
4박5일 골프 3회 + 보트투어	\$2,990 / 인
5박6일 골프 4회 + 보트투어	\$3,490 / 인
신혼여행(골프) 6박7일 패키지	\$6,900 ~ / 커플
남자골프 4박5일 남사선물보트 2회 골프 2회	\$2,880 / 인

☎ 본사 714.485.5463 / 전문가 상담 562.509.7813 / 714.877.5998

📧 4seasongolftour 📧 go@us4seasongolf.com 🌐 www.us4seasongolf.com

FLASH BACK LAST 3 CONFERENCES





2024 Annual Conference (Dallas)





2023 Annual Conference (Costa R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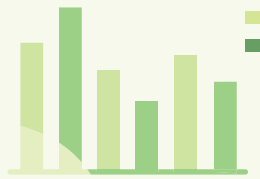
2022 Annual Conference(Seattle)



PART
IV

FLASH BACK 2014

Bellevue, Washington





29대 회장단이 이번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제29대 회장단은 즐거운 마음으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늘 변함없는 관심으로 참여해주시는 미국 각 지부 회원들과 매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시는 후원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 철저하고 세심하게 준비했음에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임원들의 의욕과 시간적, 물리적 제약이 겹쳐,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상당히 빡빡한 일정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면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공인회계사들이기에 이 정도 일정은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결실의 계절인 고국의 가을, 맑고 높은 하늘 아래에서 미국 전역에서 모인 동료들과 한국 공인회계사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10월에 모두 건강하고 반갑게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29대 회장단 드림







미주한인공인회계사 총연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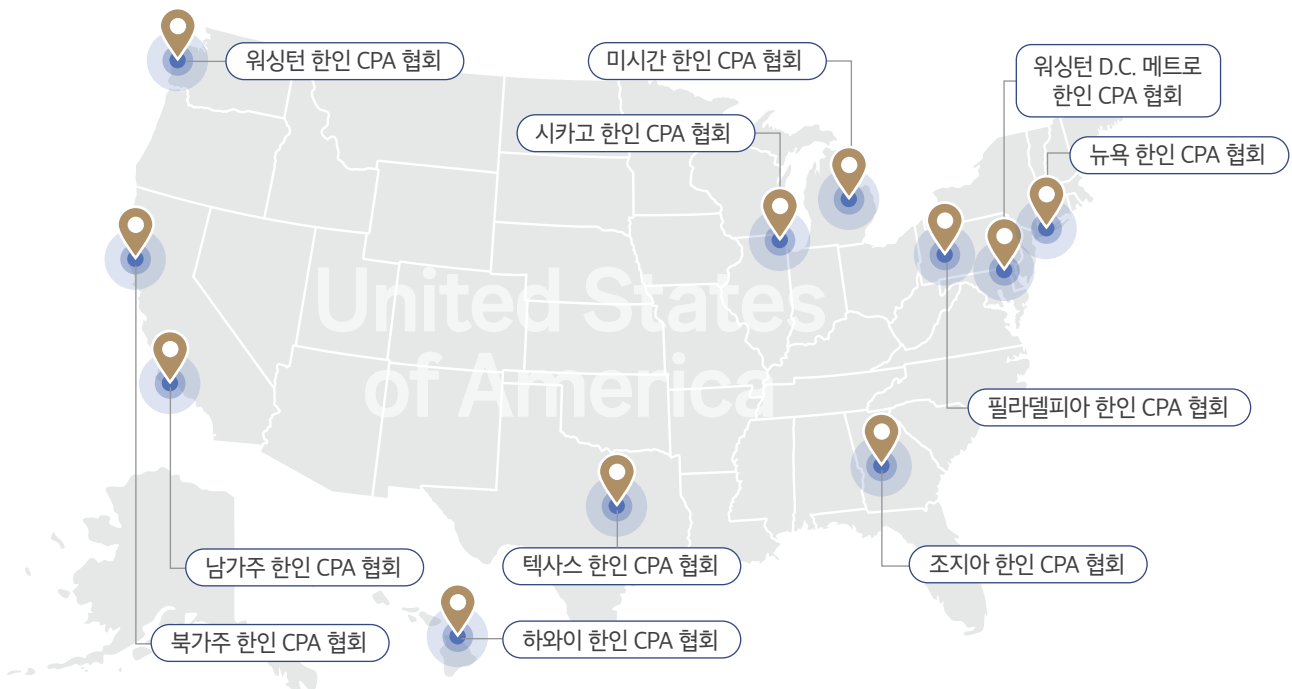
KOREAN AMERICAN SOCIETY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이사회

1st	오영균	1대 회장	14th	안병찬	현 회장
2nd	서원부	6대 회장	15th	Steven Kang	현 수석부회장
3rd	이상민	8대 회장	16th	조성범	현 사무총장
4th	송재선	9대 회장	17th	이영숙(당연직)	현 텍사스 회장
5th	김윤중	10대 회장	18th	김영돈(당연직)	현 뉴욕 회장
6th	최찬희	11대 회장	19th	송준재(당연직)	현 Washington D.C.Metro 회장
7th	최병렬	12대 회장	20th	안현수(당연직)	현 북가주 (SF) 회장
8th	김윤희	13대회장	21st	Phillip Son (당연직)	현 남가주 회장
9th	김용배	14대회장	22nd	박형춘(당연직)	현 시카고 회장
10th	손성훈	15대회장	23rd	정세계(당연직)	현 워싱턴 회장
11th	나은숙	16대회장	24th	장우균(당연직)	현 필라델피아회장
12th	김원철	17대회장			
13th	최만섭	18대 회장			



KASCPA 지역협회





미주한인공인회계사 총연합회 역사 및 연혁

2020 - 2025

- 2020 - 2021 ○ 팬데믹으로 인해 계획된 세미나 연기
- 2022 ○ 8월 제20회 학술 대회 개최 Seattle, WA
- 2023 ○ 1월 김원철 17대 회장 취임
9월 제21회 학술 대회 개최 San Jose, Costa Rica
- 2024 ○ 1월 최만섭 18대 회장 취임
9월 제22회 학술 대회 개최 Dallas, Texas
- 2025 ○ 1월 안병찬 19대 회장 취임
10월 제23회 학술 대회 개최 Incheon, South Korea

2011 - 2020

- 2011 ○ 1월 이상민 8대 회장 취임
9월 제11회 학술대회 개최 Englewood, NJ
- 2012 ○ 1월 송재선 9대 회장 취임
11월 제12회 학술대회 개최 Las Vegas, NV
- 2013 ○ 9월 제13회 학술대회 개최
Pacific Palms, City of Industry
- 2014 ○ 1월 김유죽 10대 회장 취임
8월 제14회 학술대회 개최 Bellevue, WA
- 2015 ○ 1월 최찬희 11대 회장 취임
9월 제15회 학술대회 개최 Plainview, New York
- 2016 ○ 1월 최병렬 12대 회장 취임
9월 제 16회 학술대회 개최 Washington, DC
- 2017 ○ 1월 김윤환 13대 회장 취임
10월 제17회 학술대회 개최 Jeju Island, South Korea
- 2018 ○ 1월 김용배 14대 회장 취임
11월 제18회 학술대회 개최 Cancun, Mexico
- 2019 ○ 1월 손성훈 15대 회장 취임
9월 제19회 학술 대회 개최 Chicago, IL
- 2020 ○ 1월 나은숙 16대 회장 취임

2001 - 2010

- 2001 ○ 911 사태로 계획된 세미나 중단
- 2002 ○ 11월 제2회 학술대회 개최 LA-CCCGolf Club
- 2003 ○ 조용직 3대 회장 취임
11월 제3회 학술대회 개최 Las Vegas, MGM Hotel
- 2004 ○ 11월 제4회 학술대회 개최
Hawaii, Radisson Prince Hotel
- 2005 ○ 1월 호민선 4대 회장 취임
9월 제5회 학술대회 개최 New York, NY
- 2006 ○ 9월 제6회 학술대회 개최 Atlantic City, NJ
- 2007 ○ 1월 장봉섭 5대 회장 취임
9월 제7회 학술대회 개최 Los Angeles, CA
AICPA, 한국공인회계사회
서태식 회장, 문택근 부회장 초청
- 2008 ○ 10월 제8회 학술대회 개최
(한국공인회계사협회 초청, Seoul, Korea)
- 2009 ○ 1월 서원부 6대 회장 취임
9월 제 9회 학술대회 개최 Chicago, IL
- 2010 ○ 1월 김영대 7대 회장 취임
9월 제10회 학술대회 개최 San Francisco, CA

1996 - 2000

- 1996 ○ 12월 뜻있는 남가주 CPA들이 모여 미주
한인공인회계사 총연합회 KASCPA 창립
- 1997 ○ 1월 오영균 1대 회장 취임
- 1998 - 1999 ○ Las Vegas Seminar 및 Golf 대회 거행
- 2000 ○ 1월 이병항 2대 회장 취임
11월 제1회 국제학술대회개최
(서울의 한국회계원장 김일섭 CPA 초청)
(LA-JJ Grand Hotel) 전미주한인
CPA 주소록 발간



회계사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껏 경험해 보시지 못한 특별한 상품과 절세전략을 놓치지 마세요!

National Life Group은 회계사님들의 고객에게
보다 경쟁력 있는 상품을 제공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Worthington
Financial Partners

Los Angeles Office

3731 Wilshire Blvd., Suite 920
Los Angeles, CA 90010

Orange County Office

6281 Beach Blvd., Suite 303
Buena Park, CA 90621

San Francisco Office

11501 Dublin Blvd., Suite 106
Dublin, CA 94568



Linda Han
Senior Partner

916-508-1787 (Voice Only)

Han_Linda@nlgroupmail.com

CA Insurance Agent Lic. #0H56630

Worthington Financial Partners doing business as Worthington Financial and Insurance Services in California.

National Life Group® is a trade name of National Life Insurance Company, Montpelier, VT, Life Insurance Company of the Southwest, Addison, TX and their affiliates. Each company of the National Life Group is solely responsible for its own financial condition and contractual obligations. Life Insurance Company of the Southwest is not an authorized insurer in NY and does not conduct insurance business in NY. The companies of National Life Group® (NLG) and their representatives do not offer tax or legal advice. Please encourage your clients to seek tax or legal advice from their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sor. **Policies and contracts are only available in English. Due to linguistic differences, statements contained in this advertisement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e contents of the English language policy.**

Through NLG's CPA Advantage Program, National Life has a rich history of connecting financial professionals and CPAs in order to build a trusting relationship and provide value added services and solutions to CPAs for their clients. The CPA Advantage Program is designed to help financial professionals market themselves to CPAs and to cultivate partnerships that will uncover opportunities for referrals and sales over time.

For CPA/Financial Professional Use Only - Not For Use With The Public. TC7190583(1024)3